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 | | | | | | | | | |
|---|---|---|---|---|---|---|---|---|---|
| ■ | 일 | 반 | 회 | 계 | | | | | |
| ■ | 등 | 기 | 특 | 별 | 회 | 계 | | | |
| ■ | 사 | 법 | 서 | 비 | 스 | 진 | 흥 | 기 | 금 |

2026.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결산 개요	1
1. 세입세출결산	1
(1) 세입결산	1
(가) 총 괄	1
(나) 일반회계	2
(다) 등기특별회계	3
(2) 세출결산	4
(가) 총 괄	4
(나) 일반회계	5
(다) 등기특별회계	6
(라) 프로그램별 명세	7
(3) 예비금(일반회계) 사용명세	10
(4) 예비비(등기특별회계) 사용명세	10
2. 수입지출결산	11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
(가) 수입결산	11
(나) 지출결산	12
(2) 국유재산관리기금	13
3. 재무제표	15

II. 검토의견 17

1. 총괄 17

(1) 성과관리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대법원 성과관리 체계 개편 및 프로그램 세분화 필요 17

(2) 이·전용 등 예산 변경 최소화 및 적정 소요 반영 필요 32

(3)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및 기금 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41

2. 일반회계 52

《총괄》 52

(1) 본부기본경비 및 본부운영지원의 특정업무경비, 기타운영비, 포상금 등 예산을 연수원, 교육원, 도서관에서 내역변경 없이 집행 52

(2) 정보화사업 총괄 6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60

(나)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 및 사고이월 최소화 필요 61

《세입》 70

(3) 기타경상이전수입 7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0

(나) 등기 전산장비 구매사업 입찰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국가채권 관리법」 미준수 70

《세출》 76

(4)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7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6

(나) 「국가재정법」 반하여 ‘2025년 세종 국제 콘퍼런스’ 전용절차 없이 집행 부적절 76

(5) 재판일반경비지원	8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2
(나) 세목 착오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평가 이월 문제	82
(다) 세목변경 수요 예측 잘못함에 따라 다시 세목변경 및 불용 부적정 ..	84
(6) 사법정책연구개선	8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7
(나)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예산을 타 세목에서 변경하여 집행 부적정 ..	88
(7) 법원시설관리 등	9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90
(나) 민원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사업관리 및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미흡 ..	90
(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파방지 공사 감리비 소요 추계 미흡에 따른 집행 부진	94
(라) 자산취득비 편성 필요성 검토 미흡 및 연례적 이·전용 재원 활용 부적정 ..	96
(마) 대법원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의 일반수용비 집행 개선 필요 ..	101
(8) 사법업무 전산화	1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05
(나) 영상재판 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고이월 발생	105
(다) 신규 보안장비 도입 사업 추진 지연 및 전액 불용 문제	109
(라)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기준 명확화 필요 ...	112
(마)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관련 절차 이행 철저 필요	115
(9)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11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19

(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이월 후 불용 문제 ...	119
(10) 본부 기본경비	12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25
(나) 「국가재정법」에 반하여 국제최고행정법원협회(IASAJ) 분담금 부족분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125
(다) 전국 수석부장 간담회 숙소를 임차료로 집행한 문제	127
(11) 교육원 기본경비	13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30
(나) 세목 구분 없이 문화탐방 사업을 전액 일반수용비로 집행 및 직접수행 사업을 민간업체에 용역계약 없이 대행 부적정 ...	130
(12) 본부 운영지원	13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35
(나) 연례적인 이·전용 등 예산 변경 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135
(다) 제628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 일반수용비로 집행 부적정 ...	139
(13) 연수원 운영지원	14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44
(나) 국제사법연수기구(IOJT) 회비 공공요금및제세 집행 부적정 ...	144
(14) 교육원 운영지원	14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47
(나) 관리용역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유지관리용역 집행 부적정 ...	147
3. 동기특별회계	150
《총괄》	150
(1) 토지매각대 세입과목 편성 오류	156

(2) 세입 여건과 실제 집행수요를 반영한 세출예산 편성 필요	158
(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규모 산정 및 상환계획 관리 강화 필요	160
《세 입》	168
(4) 세입 기반 확충 필요	168
(가) 세입 결산 개요	168
(나)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 기반 확충 필요 ...	168
《세 출》	176
(5) 등기소 신증축	17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76
(나) 임차료 및 자산취득비 이·전용 등 개선 필요	176
(6) 등기업무 전산화	18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85
(나) 보안컨설팅 통합발주의 회계별 과업·비용·성과 구분 명확화 필요 ...	185
(7) 일반회계 전출	19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90
(나) 세입 부족 구조 하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190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94
《총 관》	194
(1) 사업 목적 명확화 및 분리편성 필요	194
《수 입》	198
(2) 세입예산과목 적용의 적정성 확보 필요	198
(3)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필요	201

《지 출》	203
(4) 소년보호 등 지원	2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03
(나)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 지연에 따른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04
(5) 민원서비스 개선	20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08
(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형사소송기록 전자사본화 사업 물량 산정 및 예산 편성 필요	208
(6) 사법서비스 향상	21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12
(나) 전용상담실, 협의이혼실, 아이사랑방 설치 및 개선 관련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213
(다) 일반회계를 통한 법원의 날 사업 실시 및 적정 예산과목 집행 필요	215
(라) 정책연구용역의 적기 추진 및 사업관리 개선 필요	220

【참고자료】

1. 법원 조직도	225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226
3. 전국 법원 사건 통계	228
4. 성과지표 현황	229
5.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결과	230

I. 결산 개요

1.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총 괄

- 대법원의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7,813억 4,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818억 200만원이며, 수납액은 7,583억 9,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은 97.1%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9%인 231억 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7.0%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B/A)
2024년	993,640	775,985	753,648	11	22,325	75.8
2025년	781,344	781,802	758,397	300	23,105	97.1
증 감 률	△21.4	0.7	0.6	2,627.3	3.5	28.1

(나)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027억 7,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19억 2,400만원으로 그 차액은 8억 4,600만원이며, 수납액은 4,953억 2,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은 98.5%임. 미수납액 63억 100만원은 주로 징계부과금 및 변상금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자력, 납기미도래 등에 기인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 대 비 수납비율 (B/A)
합 계	502,770	501,924	495,323	300	6,301	98.5%
관유물대여료	4,164	3,087	3,087	—	—	74.1%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0	63	62	—	—	124.0%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5	1,109	63	300	746	60.0%
변상금및위약금	247	5,000	93	—	4,906	37.7%
가산금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22,307	120,263	119,615	—	648	97.8%
면허료및수수료	344,804	371,975	371,975	—	—	107.9%
잡수입	497	427	427	—	—	85.9%
고정자산매각대	—	—	—	—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	—	—	—	—
전입금	30,596	—	—	—	—	—

(다) 등기특별회계

-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785억 7,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98억 7,8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3억 400만원이며, 수납액은 2,630억 7,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은 94.4%임. 미수납액 168억 400만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은평등기소 토지매각대금 중 분납잔금에 기인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B/A)
합 계	278,574	279,878	263,074	—	16,804	94.4%
관유물대여료	324	258	258	—	—	79.6%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59	511	1	—	510	0.2%
변상금및위약금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0	101	101	—	—	505.0%
면허료및수수료	243,976	217,696	217,696	—	—	89.2%
잡수입	7	16,299	4	—	16,294	57.1%
고정자산매각대	1,406	—	—	—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1,330	—	—	—	—	—
세계잉여금이입액	20,852	15,013	15,013	—	—	—
예수금	—	30,000	30,000	—	—	—

(2) 세출결산

(가) 총 괄

- 대법원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조 2,734억 7,700만원 중 96.6%인 2조 1,96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인 269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인 500억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 액 (C/B)	이월액	불용액
2024년	2,247,758	2,267,455	2,108,634	93.8	93.0	17,264	141,556
2025년	2,256,213	2,273,477	2,196,540	97.4	96.6	26,913	50,025
증 감 률	0.4	0.3	4.2	—	—	55.9	△64.7

(나)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9,924억 7,900만원 중 98.3%인 1조 9,580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인 268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75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 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 액 (C/B)	이월액	불용액
2024년	1,864,618	1,881,816	1,858,601	99.7	98.8	14,840	8,375
2025년	1,977,639	1,992,479	1,958,086	99.0	98.3	26,874	7,519
증 감 률	6.1	5.9	5.4	—	—	81.1	△10.2

- 2025년도 대법원 일반회계의 지출률(98.3%)은 다음 표와 같이 국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98.5%)보다 낮게 나타남.

<2025년도 전체 일반회계와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결산 결과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 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 액 (C/B)	이월액	불용액
전체 일반회계	496,965,837	498,441,961	491,009,698	98.8	98.5	2,086,544	5,345,719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1,977,639	1,992,479	1,958,086	99.0	98.3	26,874	7,519

(다) 등기특별회계

- 등기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09억 9,800만원 중 84.9%인 2,384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0.01%인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1%인 425억 600만원을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예산액 대비 지출 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 액 (C/B)	이월액	불용액
2024년	383,140	385,639	250,033	65.3	64.8	2,424	133,181
2025년	278,574	280,998	238,454	85.6	84.9	38	42,506
증 감 률	△27.3	△27.1	△4.6	—	—	△98.4	△68.1

- 2025년도 대법원 등기특별회계의 지출률(85.6%)은 다음 표와 같이 국가 전체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평균인 94.1%보다 낮은 수준임.

〈2025년도 전체 특별회계와 등기특별회계 결산 결과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예산액 대비 지출 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 액 (C/B)	이월액	불용액
전체 특별회계	103,050,316	106,294,680	100,032,533	97.1	94.1	1,635,716	4,626,431
등기 특별회계	278,574	280,998	238,454	85.6	84.9	38	42,506

(라) 프로그램별 명세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977,639	1,992,479	1,958,086	99.0	98.3	26,874	7,519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11,479	11,479	11,450	99.7	99.7	—	29
법관 등 전문화 및 국제화	7,693	7,693	7,639	99.3	99.3	—	54
사법행정효율성증진	12,684	12,550	12,523	98.7	99.8	—	27
재판청구권 실현	139,803	143,953	142,834	102.2	99.2	763	354
재판절차비용지원	38,300	41,680	41,610	108.6	99.8	—	70
재판일반경비지원	46,158	46,516	45,768	99.2	98.4	525	222
사법정책연구개선	1,945	2,357	2,084	107.1	88.4	238	34
국선변호료지원	53,400	53,400	53,372	99.9	99.9	—	28
전문재판운영	2,296	2,210	2,195	95.6	99.3	—	15
법원예비금	140	140	140	100.0	100.0	—	—
법원시설관리 등	64,162	60,372	56,817	88.6	94.1	3,338	217
사법업무 전산화	102,938	114,192	88,190	85.7	77.2	20,379	5,623
사법업무 전산화	72,740	71,448	53,957	74.2	75.5	14,750	2,741
채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23,000	28,848	24,151	105.0	83.7	1,916	2,781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7,198	13,896	10,082	140.1	72.6	3,713	101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7,456	17,219	17,124	98.1	99.4	65	30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6,453	6,640	4,325	67.0	65.1	2,297	18
일반 인건비	1,370,174	1,376,499	1,376,328	100.4	100.0	—	172
소속기관 인건비	23,357	23,087	23,087	98.8	100.0	—	—
도서관 인건비	6,901	7,171	7,171	103.9	100.0	—	—
연수원 인건비	9,441	9,194	9,194	97.4	100.0	—	—

	교육원 인건비	7,015	6,722	6,722	95.8	100.0	—	—
	본부 기본경비	84,964	85,166	84,639	99.6	99.4	23	505
	소속기관 기본경비	5,204	5,335	5,298	101.8	99.3	—	38
	도서관 기본경비	832	840	822	98.8	97.9	—	19
	연수원 기본경비	2,717	2,697	2,679	98.6	99.3	—	18
	교육원 기본경비	1,655	1,798	1,797	108.6	99.9	—	1
	사법운영지원	128,836	125,941	125,496	97.4	99.6	8	438
	본부운영지원	116,548	113,061	112,688	96.7	99.7	8	365
	도서관운영지원	2,668	2,658	2,658	99.6	100.0	—	—
	연수원운영지원	6,179	6,418	6,348	102.7	98.9	—	70
	교육원운영지원	3,441	3,804	3,802	110.5	99.9	—	3

<등기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응액
합 계	278,574	280,998	238,454	85.6	84.9	38	42,506
등기소 신증축	8,518	10,530	9,669	113.5	91.8	—	861
등기업무전산화	55,716	55,716	52,792	94.8	94.8	35	2,888
등기업무전산화	33,388	33,388	31,157	93.3	93.3	35	2,195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1,286	1,286	1,209	94.0	94.0	—	77
미래등기시스템구축	21,042	21,042	20,426	97.1	97.1	—	616
등특 인건비	133,234	133,234	126,093	94.6	94.6	—	7,141
등특 기본경비	4,273	4,271	4,066	95.2	95.2	—	204
등기업무 운영지원	28,246	28,660	27,942	98.9	97.5	3	715
등기업무 운영지원	24,086	24,500	23,977	99.5	97.9	3	520
법원행정처 건강보험부담금	4,160	4,160	3,965	95.3	95.3	—	195
예비비	100	100	—	—	—	—	100
일반회계 전출	30,596	30,596	—	—	—	—	30,596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17,891	17,891	17,891	100.0	100.0	—	—

(3) 예비금(일반회계) 사용명세

- 대법원은 2025회계연도에도 일반회계 예비금 1억 4,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 월 액	불 용 액
2024년	280	280	280	100.0	100.0	—	—
2025년	140	140	140	100.0	100.0	—	—
증 감 률	△50	△50	△50	—	—	—	—

(4) 예비비(등기특별회계) 사용명세

- 대법원은 2025회계연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등기특별회계 예비비를 전액 불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예산액 대비 지출액 (C/A)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불용액
2024년	200	200	—	—	—	—	200
2025년	100	100	—	—	—	—	100
증 감 률	△50	△50	—	—	—	—	△50

2. 수입지출결산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가) 수입결산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계획액은 3,902억 6,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81억 4,800만원이며, 수납액은 2,861억 5,3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획액대비 수납비율 (B/A)
합 계	390,266	288,148	286,153	8	1,987	73.3%
기타재산수입	—	24	24	—	—	—
징계부과금	—	4	4	—	—	—
변상금	300	2,261	268	8	1,985	89.3%
위약금	—	1	—	—	1	—
가산금	—	1	—	—	1	—
민간출연금	229,942	251,868	251,868	—	—	109.5%
기타경상이전	537	578	578	—	—	107.6%
면허료 및 수수료	—	—	—	—	—	—
여유자금회수	128,470	2,551	2,551	—	—	2.0%
예탁원금회수	30,000	30,000	30,000	—	—	100.0%
예탁이자수입	1,017	861	861	—	—	84.7%

(나) 지출결산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 계획현액은 3,928억 3,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61억 5,2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현액 (A)	지출액 (B)	계획액 대비 지출액 (B/A)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92,833	286,152	72.8	506	7,012
소송구조지원	6,857	6,682	97.4	—	175
조정제도지원	11,997	11,835	98.6	—	163
법률구조단체사업지원	3,879	3,879	100.0	—	—
소년보호 등 지원	9,630	6,386	66.3	449	2,795
민원서비스 개선	32,324	29,437	91.1	—	2,887
사법서비스향상	13,526	12,879	95.2	37	610
국선변호료지원	24,598	24,295	98.8	—	303
기금관리비	51	48	94.1	—	3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1,860	1,860	100.0	—	—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2,416	2,319	96.0	20	77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30,000	30,000	100.0	—	—
여유자금운용	255,695	156,532	61.2	—	—

(2) 국유재산관리기금

○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2011. 4. 1. 시행)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1년도까지 대법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행되었던 법원시설 확충사업이 2012년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재정경제부장관 총괄)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음.

- 대법원 관련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25년도 계획현액 1,247억 5,800만원 중 88.7%인 1,107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음.

○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함. 다만,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대법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공용재산취득사업(대법원)’에 대한 의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¹⁾.

1) 「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①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대법원 관련 주요사업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계획현액 대비 지출액 (B/A)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1300 공용재산취득 (대법원)	91,338	108,607	16,151	124,758	110,714	88.7	13,750	294
청사시설 취득	20,989	28,003	10,801	38,804	34,811	89.7	3,714	279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3,815	—	—	—	—	—	—	—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축	1	—	—	—	—	—	—	—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33,180	33,180	19	33,199	31,435	94.7	1,764	—
수원법원 위탁개발	12,800	35,599	—	35,599	35,599	100.0	—	—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1,000	825	15	840	402	47.9	423	15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19,009	10,456	5,316	15,772	8,321	52.8	7,451	—
창원가정법원 신축	154	154	—	154	96	62.3	58	—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생활관 신축	390	390	—	390	50	12.8	340	—

3. 재무제표

- 재무제표는 「국가재정법」 제58조와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하나로서 국회에 제출됨.

2025회계연도 말 대법원의 자산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9조 1,581억 6,700만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61.3% 증가한 1,186억 1,900만원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9조 395억 4,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대법원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 5,579억 3,200만원임.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 2조 225억 8,600만원과 비배분비용 20억 2,800만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6,057억 1,5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조 9,768억 3,100만원임. 따라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2,523억 2,5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조 7,245억 6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대법원의 기초순자산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8조 8,568억 4,1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1조 7,245억 6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1조 9,100억 7,600만원, 조정항목은 전년 대비 91.0% 증가한 -28억 6,300만원임. 기초순자산,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의 합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한 기말순자산은 9조 395억 4,800만원임.

〈대법원 소관 회계 재무제표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감현황	
				(A-B)	증감률(%)
재정상태표	자 산	9,158,167	8,930,393	227,774	2.6 %
	부 채	118,619	73,552	45,067	61.3 %
	순자산	9,039,548	8,856,841	182,707	2.1 %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57,932	559,842	(1,910)	(0.3 %)
	재정운영순원가	1,976,831	1,842,096	134,735	7.3 %
	재정운영결과	1,724,506	1,699,963	24,543	1.4 %
순자산변동표	기초순자산	8,856,841	8,760,839	96,002	1.1 %
	재정운영결과	1,724,506	1,699,963	24,543	1.4 %
	재원 조달 및 이전	1,910,076	1,827,917	82,159	4.5 %
	조정항목	(2,863)	(31,953)	29,090	91.0 %
	기말순자산	9,039,548	8,856,841	182,707	2.1 %

※각 항목은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 및 기금의 합계액임.

II. 검토의견

1. 총 괄

(1) 성과관리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대법원 성과관리 체계 개편 및 프로그램 세분화 필요

○ 정부가 「국가재정법」²⁾에 따라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³⁾의 첨부서류 중 대법원의 2025년도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대법원 소관 세부사업 중 ‘재정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관리를 받아야 할 세부사업이 ‘기본경비성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성과관리를 받지 않는 등, 성과관리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 소관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관별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2개⁴⁾로만 나뉘어 있어 이질적인 세부사업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과지표와 세부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각 프로그램의 성과가 우수한지 또는 미흡한지 여부가 환류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대법원 소관 프로

2)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3) 의안번호 제3519호. 2024. 9. 2. 제출.

4) 정부, 「2025년도 대법원 성과계획서」, p. 3.

그램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분화하여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첫째, 대법원 성과관리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 1999년 시범 시행된 이후 2006년 전 부처로 확대되었음. 이후 2009년부터는 성과계획서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예산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등이 일치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제8조제9항)되었음.

2021년 12월 21일 「국가재정법」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12까지 ‘성과관리(제4장의2)’라는 새로운 장이 신설⁵⁾되면서 성과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됨. 정부의 성과계획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7⁶⁾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첨부서류인데, 각 부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달성하려는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설정하게 됨.

5) 「국가재정법」 제4장의2 성과관리 <신설 2021. 12. 21.>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6) 「국가재정법」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과계획서는 사전에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설정·관리함으로써 집행단계에서는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사후적으로는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⁷⁾

- 2025년도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⁸⁾를 살펴보면, 성과관리대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인건비, 기본경비성 사업뿐 아니라 일반 재정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이하 <표>에서 음영 색으로 표기)되어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적용받은 사유는 기관이나 부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인 경직성 비용(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등)으로 구분되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입장임.

7) 「2025년도 성과계획서: 총괄편」, 대한민국 정부, p. 1.

8) 상계서, p. 11.

〈2025년 대법원 소관 성과계획서상 일반회계 성과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4 예산	'25 예산안	비고
재판활동지원 (1100)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가족관계등록사무	14,448	11,479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	7,586	7,693	
	사법행정효율성 증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0,736	12,684	
	재판청구권 실현	재판절차비용지원	39,063	38,300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재판일반경비지원	41,610	46,158	
		사법정책연구개선	2,549	1,945	
		국선변호료지원	69,884	53,400	
	사실심총실화 법원예비금	전문재판운영 법원예비금	3,309 280	2,296 140	예비비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1200)	법원시설관리 등	법원시설관리 등	50,479	64,162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사법정보화 운영 (1300)	사법업무 전산화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57,770	72,740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13,278	23,000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12,585	7,198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18,519	17,456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2,482	6,453	
사법행정 운영지원 (7000)	본부 인건비	일반 인건비	1,288,541	1,370,174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소속기관 인건비	도서관 인건비	6,712	6,901	
		연수원 인건비	9,019	9,441	
		교육원 인건비	6,971	7,015	
	사법운영기본경비	본부 기본경비	80,254	84,964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도서관 기본경비	795	832	
		연수원 기본경비	2,170	2,717	
		교육원 기본경비	1,615	1,655	
	사법운영지원	본부운영지원	109,178	116,911	
		도서관운영지원	2,825	2,668	
		연수원운영지원	8,003	6,179	
		교육원운영지원	3,957	3,441	

주 1: 음영(회색)으로 표시된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임.

주 2:

총 세부사업수	27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6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21
---------	----	---------------	---	----------------	----

자료: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법원」, 대한민국 정부, pp. 58~66.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대법원 소관 성과계획서상 특별회계 성과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4 예산	'25 예산안	비고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1200)	등기소 확충	등기소 신증축	10,035	8,518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사법정보화운영 (1300)	등기업무전산화	등기업무전산화	41,532	33,388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1,752	1,286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1,535	21,042	
사법행정운영지원 (7000)	본부 인건비	등특 인건비	128,022	133,234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본부 기본경비	등특 기본경비	4,273	4,273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등기업무지원	등기업무 운영지원	24,561	24,086	
		법원행정처 건강보험부담금	4,393	4,160	
	예비비	예비비	200	100	예비비
회계간거래(8000)	회계간전출	일반회계 전출	123,965	30,596	정부내부거래
내부거래지출 (8400)	회계자금간거래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22,872	17,891	정부내부거래

주 1: 음영(회색)으로 표시된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임.

주 2:	총 세부사업수	11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3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8
------	---------	----	---------------	---	----------------	---

자료: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법원」, 대한민국 정부, pp. 58~66.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대법원 소관 성과계획서상 기금 성과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4 예산	'25 예산안	비고
재판활동지원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소송구조 지원	6,857	6,857	
		조정제도 지원	12,708	11,432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3,879	3,879	
		소년보호 등 지원	6,450	9,207	
		민원서비스 개선	24,670	32,237	
		사법서비스 향상	13,469	13,894	
		국선변호료지원	0	24,598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61	51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사법정보화운영	공탁업무전산화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정보화)	2,440	2,416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30,000	30,000	정부내부거래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128,470	255,695	보전지출

주 1: 음영(회색)으로 표시된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임.

주 2:	총 세부사업수	11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7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4
------	---------	----	---------------	---	----------------	---

자료: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법원」, 대한민국 정부, pp. 58~66.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1136-351) 사업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이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보조금 등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사업이고,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에 따라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법정언행컨설팅 교육을 수행하며,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사업이며,
-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사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고 증인지원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사업임에도, 단순히 ‘기본경비 또는 기본경비성 비용’이라는 이유로 「국가재정법」 상 성과관리를 받지 않고 있고,
- 국선변호료 지원(1143-409)⁹⁾ 사업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인신보호법」에 따라 국선변호 사업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9) 2025년도까지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6년도부터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일반회계뿐 아니라, 등기특별회계 사업 중 등기소 신·증축 (1252-411) 사업도 일반등기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공사 관련 재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
- 대법원 성과관리 체계 개편 필요성은 타 헌법기관 또는 부처와 비교해 볼 때 명확하게 알 수 있음.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76조 4,797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89조 5,914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6%인데,

대법원은 2025년 기준 총지출 2조 3,127억원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액수가 2,399억원에 불과해 그 비율이 10.4%인 것으로 나타남.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2025년도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각각 30.9%¹⁰⁾, 100%¹¹⁾인데, 특히 헌법재판소의 성과관리 사업을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에 속하는 ‘국선대리인보수등’, ‘재판활동운영지원’, ‘재판자료확충’ 등 사업이 성과관리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10) 총지출 7,762억원, 성과관리대상 사업 2,399억원

11) 총지출 및 성과관리대상 사업 585억원

〈2025년 헌법재판소 소관 성과계획서상 일반회계 성과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4 예산	'25 예산안
헌법재판소 운영	인건비	인건비	33,533	34,792
	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	6,991	6,957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41	426
	재판활동지원	국선대리인보수등	127	127
		재판활동운영지원	748	671
	본부운영지원	본부운영지원	4,624	4,292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1,878	1,865
	국제교류협력	해외연수	506	565
		국제교류	587	614
	정보자료운영	재판자료확충	470	386
		헌법재판정보화 (정보화)	6,443	7,499
		전자도서관운영 (정보화)	393	307
	예비금	헌법재판소예비금	25	25

주 1:

총 세부사업수	13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13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0
---------	----	---------------	----	----------------	---

자료: 「2025년도 성과계획서: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정부, pp. 32. 바탕으로 재작성

이를 보면, 대법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부사업이 기본경비성이라는 사유로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¹²⁾.

-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7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 「202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예산처)」에 맞추어 성과관리 대상 제외 사업을

12) 참고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인건비·기본경비 또는 인건비·기본경비성 비용에 해당하는 세부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음.

국회 : 위원회운영지원(1000-1032), 의회운영지원(2000-2031), 도서관운영지원(3000-3031), 예산정책처 운영지원(4000-4031), 입법조사처운영지원(5000-5031)

헌법재판소 : 인건비(1000-1001), 기본경비(1000-1011), 본부운영지원(1000-1032),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00-1033), 예비금(1000-1036)

재분류하여 기획예산처 재정성과총괄과에 제출하였다는 입장이나,

실제 대법원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재분류 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당초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중 사법서비스진흥
기금에 있는 ‘국선변호료지원’ 사업만 성과관리 대상 사업으로 전환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대법원 성과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대법원 소관 프로그램 세분화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¹³⁾제3항에서는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¹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위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우선 소관별로 구분한 후 국가
재정활동의 기능을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국방
등 16개 분야 75개 부문으로 구분¹⁵⁾하고 있음. 성질별 분류는 경비
지출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3)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4) 「국가재정법」 상 장·관·항은 품목별 예산제도 하의 구분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는 각각 분야·부문·프로그램을 의미함.

15)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25. 3. p. 233.

구분하는 방식이고,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기관(국)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중앙관서는 기관(국)별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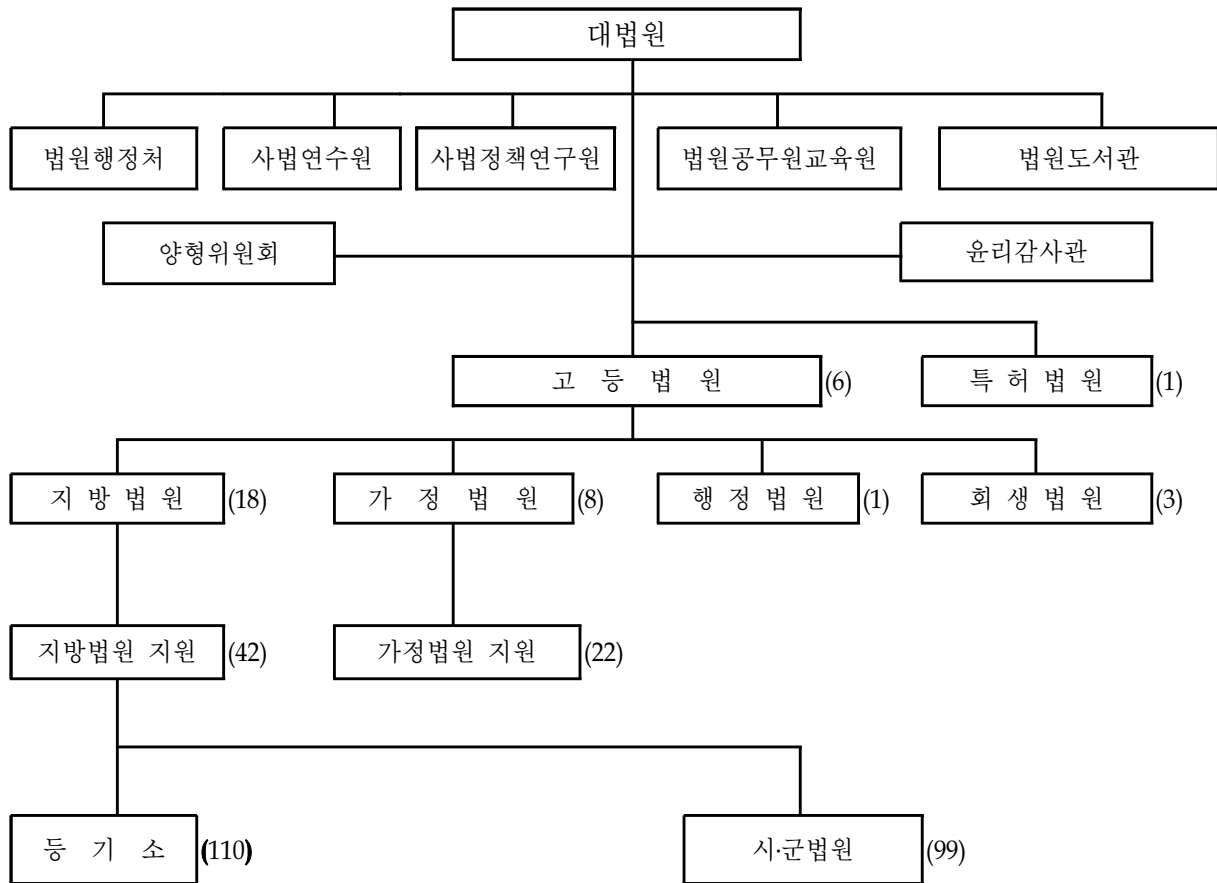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 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됨. 이때 ‘프로그램’은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 단위이며, 단일관리자에 의해 책임이 부여되고 동일한 성격의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야 함¹⁶⁾.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도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목표관리를 실시해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산과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법원조직법」은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구분하고 있고(제3조), 법원 이외에 법원행정처(제19조), 사법연수원(제20조), 사법정책연구원(제20조의 2), 법원공무원교육원(제21조), 법원도서관(제22조)을 두고 있음.

16)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 5. pp. 212-3.

〈법원조직법에 따른 조직〉

(2025. 12. 31. 현재)



※ 각급 법원 현황

1. 총 법원 수: 102 [대법원, 고등법원 6, 특허법원 1, 지방법원 18, 가정법원 8, 행정법원 1, 회생법원 3, 지방법원 지원 42, 가정법원 지원 22]
2. 기관: 7 [법원행정처1, 사법연수원1, 사법정책연구원1, 법원공무원교육원1, 법원도서관1, 양형위원회1, 윤리감사관1]
3. 시·군법원수: 99
4. 등기소: 110 [등기국 11개(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각급 법원 등기과(계) 46개 포함시 총 167개]

자료: 대법원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상기한 바와 같이 법원 및 법원사무기구의 기관 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소관 프로그램은 기관(국) 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구체적으로, 대법원 소관 프로그램¹⁷⁾ 중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재판활동지원(1100) 프로그램’ 및 ‘사법정보화운영(1300) 프로그램’ 등 총 2개에 불과함.

-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둔 취지와 달리 대법원의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이 2개에 불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우선,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체계¹⁸⁾ 하에서 이질적인 세부사업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과지표와 세부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재판활동지원(1100)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 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사법행정의 효율성증진(1142-401),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국선변호료 지원(1143-409), 전문재판운영(1144-407), 법원예비금(1148-330) 등 9개 사업인데,

17) 재판활동지원(1100),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1200), 사법정보화운영(1300), 사법행정운영지원(7000), 회계간거래(8000), 내부거래지출(8400), 기금간거래(예탁금)(9000), 여유자금운용(9700)

18) 정부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2022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지침)」을 개정하여 2022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의 작성기준이 되는 사업수준을 지금까지의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상향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체계를 1차적으로 변경했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하고 “부처의 성과관리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동 기본계획에서 「1 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부터 전 부처 성과지표를 2022년 기준 1,000여개(프로그램당 2~3개)에서 500개(프로그램당 1개) 이하로 감축함.

그 중 재판청구권실현 단위사업(1143)에 해당되는 재판절차비용지원, 재판일반경비지원, 사법정책연구개선 및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성과지표인 ‘전체 사건처리율¹⁹⁾’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특히, <2025년 대법원 소관 성과계획서상 일반회계 성과관리 현황> 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재판활동지원 프로그램(1100) 내 9개 세부사업 중 성과관리 대상사업은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사업(1140-361)’이 유일한데, 동 세부사업에서 집행되는 ‘장단기 해외연수’, ‘법원공무원·법관 단기 국외훈련’, ‘국제회의 참가’ 등 내용은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전체 사건처리율’과 관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세부사업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환류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사업은 법관 및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국외훈련·장단기 해외연수, 국제회의 참가, 연임법관 연수 등을 추진함으로써 법관등의 개인역량 강화와 사법제도의 개선 및 서비스 증진의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법관등의 전문화 및 국제화를 제고하여 프로그램 1100[재판활동지원]의 성과지표인 ‘전체 사건처리율’을 도모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 하므로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프로그램

19) (전체 처리사건 수/전체 접수사건 수+미제사건 수)*100

목표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나,

2025년도 대법원 성과계획서의 ‘전체 사건처리율’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를 살펴보면, 동 성과지표는 정량지표로서 ‘장단기 해외연수’, ‘법원공무원·법관 단기 국외훈련’, ‘국제회의 참가’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지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① 전체 사건처리율

○ 측정산식 : (전체 처리사건수/전체 접수사건수+미제건수)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 1. 1. ~ 25. 12. 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6.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대법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체 처리사건수, 전체 접수사건수, 미제건수 통계를 사법연감 및 전산자료를 통해 산출

○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5년 목표치는 23년 실적치 95.8%보다 높고, 3개년도(21년~23년) 실적치 평균 96.1% 보다 높게 설정
- 2020년 실적 95.8% = 처리 18,706,530건 / (접수 18,838,150건 + 미제사건 수 679,386건)
 - 2020년 전체 접수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8,838,150건
 - 2020년 전체 처리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8,706,530건
 - 2019. 12. 31.기준 미제사건 수 679,386건
- 2021년 실적 96.4% = 처리 17,916,358건 / (접수 17,884,639건 + 미제사건 수 705,455건)
 - 2021년 전체 접수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7,884,639건
 - 2021년 전체 처리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7,916,358건
 - 2020. 12. 31.기준 미제사건 수 705,455
- 2022년 실적 96.2% = 처리 16,048,851건 / (접수 16,021,970건 + 미제사건 수 661,373건)
 - 2022년 전체 접수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6,021,970건

- 2022년 전체 처리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6,048,851건
- 2021. 12. 31.기준 미제사건 수 661,373건
- 2023년 실적 95.8% = 처리 16,313,857건 / (접수 16,399,212건 + 미제사건 수 637,148건)
- 2023년 전체 접수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6,399,212건
- 2023년 전체 처리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6,313,857건
- 2022. 12. 31.기준 미제사건 수 637,148건
- 2024년 실적 95.8% = 처리 / (접수 16,767,349건 + 미제사건 수 657,713건)
- 2024년 전체 접수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6,767,349건
- 2024년 전체 처리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6,687,246건
- 2023. 12. 31.기준 미제사건 수 657,713건

기획재정부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이질적 사업들로 구성되어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한 프로그램에 대한 과목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대법원 소관 프로그램 역시 세분화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은 앞으로 ①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②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 소관 성과대상 프로그램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이·전용 등 예산 변경 최소화 및 적정 소요 반영 필요

-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소관별·사업별·대상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규범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국가재정법」은 예산안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²⁰⁾.
-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등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사업 간 또는 예산과목 간 상호 융통하는 방식으로서,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이고, 전용은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이며, 내역변경은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의 변경, 세목조정은 같은 목 내에서 세목 간의 변경을 의미함.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국가재정법」에 근거(이용은 제47조, 전용은 제46조)를 두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일정한 위임범위 내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으며,

내역변경과 세목조정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획예산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서 관련 규정을

20)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pp. 261~266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일부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비교〉

기능별 성질별 (목-세목)		프로그램(항) X		프로그램 Y
		단위사업(세항) A		단위사업 C
		세부사업(세세항)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4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420-01)		전용 (동일 프로그램, 단위사업 간)	이용 (프로그램, 이상 사이)
	실시 설계비 (420-02)	내역변경 (동일 단위사업, 세부사업 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430-01)		전용 (목 간)	
	저장품 매입비 (430-02)	세목조정 (동일 목, 세목 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p. 263

- 한편,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확정된 수입계획액이나 지출계획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유형은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나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고, 기금의 경우 예산과 달리 국회의 의결 없이도 부처가 자체적으로 총 규모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신축성의 범위가 더 넓게 보장됨.
- 최근 3개년 대법원의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국회 예산(기금운용계획 포함) 확정 이후 예산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311억 8,100만원, 2024회계연도 370억 7,800만원, 2025회계연도 278억 5,500만원으로 매년 300억원 내외의 규모의 예산 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4개년 이·전용 등 예산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이·전용 등(A)*	예산 세목조정(B)**	기금운용계획 변경(C)***	계 (A+B+C)
2023회계연도	27,162	3,435	584	31,181
2024회계연도	32,505	3,118	1,455	37,078
2025회계연도	21,618	5,105	1,132	27,855

주) 예산: 일반회계 및 등기특별회계, 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및 세목조정(법원행정처 본부에서 시행한 세목조정만 포함)

** 일선관서(법원행정처 본부 이외)에서 시행한 세목조정 일체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시행한 모든 계획변경(내역변경, 세목조정 포함)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대법원의 최근 3개년도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연초에 해당하는 1/4분기부터 이·전용 등의 변경 절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국가재정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용 등의 취지에 부합하게 연초부터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2023회계연도 1억 2,915만원, 2024회계연도 4억 8,515만원, 2025회계연도 2억 1,482만원을 1/4분기에 이·전용 등 하였음.

〈2023회계연도 1/4분기 예산·기금 이·전용 등 내역〉

(단위: 천원)

회계 · 기금	일시	이전 용 등	변경 감			변경 증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세목명 (세목코드)	감액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세목명 (세목코드)	증액	
일반 회계	1.18.	전용	도서관 인건비 (7002-171)	인건비 (110-01)	△20,230	도서관 인건비 (7002-171)	기타직보수 (110-02)	20,230	기타직보수 부족
	2.24.	전용	연수원 인건비 (7002-181)	인건비 (110-01)	△14,410	연수원 인건비 (7002-181)	기타직보수 (110-02)	14,410	기타직보수 부족
	2.28.	전용	도서관 인건비 (7002-171)	인건비 (110-01)	△9,540	도서관 인건비 (7002-171)	기타직보수 (110-02)	9,540	기타직보수 부족
	3.6.	전용	본부운영지원 (7031-303)	고용부담금 (320-09)	△58	본부운영지원 (7031-303)	배상금 (310-02)	58	배상금 지급
	3.21.	전용	본부운영지원 (7031-303)	자산취득비 (430-01)	△3,326	본부운영지원 (7031-303)	배상금 (310-02)	3,326	배상금 지급
사법 진흥 기금	2.15.	세목 변경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일반용역비 (210-14)	△14,740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관리용역비 (210-15)	14,740	관리용역비 부족
	2.15.	세목 변경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일반수용비 (210-01)	△59,406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관리용역비 (210-15)	59,406	관리용역비 부족
	2.24.	세목 변경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일반수용비 (210-01)	△143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임차료 (210-07)	143	임차료 부족
	2.24.	세목 변경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일반수용비 (210-01)	△166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66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2.24.	세목 변경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일반수용비 (210-01)	△7,132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임차료 (210-07)	7,132	임차료 부족
합계			△129,151			129,151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2024회계연도 1/4분기 예산·기금 이·전용 등 내역〉

(단위: 천원)

회계 · 기금	일시	이전 용 등	변경 감			변경 증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세목명 (세목코드)	감액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세목명 (세목코드)	증액	
일반 회계	1.14.	세목 변경	본부운영지원 (7031-303)	일반용역비 (210-14)	△1,200	본부운영지원 (7031-303)	일반수용비 (210-01)	1,200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용역
	2.27.	내역 변경	본부 기본경비 (7011-250)	국내여비 (220-01)	△15,000	도서관 기본경비 (7011-271)	국내여비 (220-01)	15,000	도서관여비 부족
	3.8.	전용	본부운영지원 (7031-303)	유류비 (210-08)	△333,195	본부운영지원 (7031-303)	배상금 (310-02)	333,195	고양지원 배상금 지급
	3.21.	내역 변경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용임금 (110-04)	△8,320	연수원 기본경비 (7011-281)	일용임금 (110-04)	8,320	연수원일용임금 부족
	3.21.	내역 변경	연수원기본경비 (7011-281)	일용임금 (110-04)	△8,320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용임금 (110-04)	8,320	착오 수정
등특 회계	3.17.	세목 변경	등기소신증축 (1252-411)	감리비 (420-04)	△23,273	등기소신증축 (1252-411)	공시비 (420-03)	23,273	수원통합등기소 공사비 부족
사법 진흥 기금	2. 5.	세목 변경	민원서비스개선 (1161-305)	일반수용비 (210-01)	△166	민원서비스개선 (1161-30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66	공공요금 부족
	2. 22	세목 변경	사법서비스향상 (1161-306)	일반수용비 (210-01)	△1,650	사법서비스향상 (1161-306)	일반용역비 (210-14)	1,650	일반용역비 부족
	2. 22	세목 변경	사법서비스향상 (1161-306)	일반수용비 (210-01)	△10,920	사법서비스향상 (1161-306)	일반용역비 (210-14)	10,920	일반용역비 부족
	3. 6.	세목 변경	민원서비스개선 (1161-305)	일반용역비 (210-14)	△18,874	민원서비스개선 (1161-305)	관리용역비 (210-15)	18,874	관리용역비 부족
	3. 19.	세목 변경	민원서비스개선 (1161-305)	일반수용비 (210-01)	△64,236	민원서비스개선 (1161-305)	관리용역비 (210-15)	64,236	관리용역비 부족
합계			△485,154			485,154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산·기금 이·전용 등 내역〉

(단위: 천원)

회계 · 기금	일시	이전 용 등	변경 감			변경 증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세목명 (세목코드)	감액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세목명 (세목코드)	증액	
일반 회계	1.13.	세목 변경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	△8,079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반용역비 (210-14)	8,079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용역
		세목 변경	본부 기본경비 (7011-250)	피복비 (210-03)	△8,724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반용역비 (210-14)	8,724	
	1.21.	내역 변경	본부 기본경비 (7011-250)	국내여비 (220-01)	△15,000	도서관 기본경비 (7011-271)	국내여비 (220-01)	15,000	도서관여비 부족
	2.28.	전용	본부운영지원 (7031-303)	고용부담금 (320-09)	△9,520	본부운영지원 (7031-303)	배상금 (310-02)	9,520	배상금 지급
	3.13.	전용	교육원운영지원 (7031-309)	고용부담금 (320-09)	△373	교육원운영지원 (7031-309)	배상금 (310-02)	373	배상금 지급
등특 회계	1.13.	세목 변경	등특 기본경비 (7011-271)	일반수용비 (210-01)	△1,194	등특 기본경비 (7011-271)	일반용역비 (210-14)	1,194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용역
	1.23.	세목 변경	등기소 신증축 (1252-411)	감리비 (420-04)	△74,000	등기소 신증축 (1252-411)	공사비 (420-03)	74,000	디브레인 입력착오
사법 진흥 기금	3.10	세목 변경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일반수용비 (210-01)	△12,254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일반용역비 (210-14)	12,254	법원대표전화 안내센터 운영비 부족
		세목 변경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일반수용비 (210-01)	△85,674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관리용역비 (210-15)	85,674	
합계			△214,818			214,818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3개년도 이·전용 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공공요금, 여비, 용역비, 배상금 등 특정 세목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의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인한

경우라기보다는, 대법원의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가 미흡하거나
입력에 착오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예산의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연례적으로 특정 세목의 예산이 타 사업 예산의 부족분에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으로,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의 이·전용 등
내역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110목)를 제외했을 때 자산취득비
(약 52억), 임차료(약 21억), 유류비(약 18억), 공사비(약 13억), 일반
수용비(약 12억) 등의 세목이 여유재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전용등 세목별 여유재원〉

(단위: 천원)

목	세목명	이·전용등 여유재원
110목	보수(110-01)	4,368,754
	상용임금(110-03)	2,260,050
	일용임금(110-04)	24,000
	연가보상비(110-05)	502,290
	기타직보수(110-02)	295,915
210목	일반수용비(210-01)	1,178,652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01,691
	피복비(210-03)	12,059
	급식비(210-04)	300,768
	특근매식비(210-04)	27,808
	일숙직비(210-06)	41,747
	임차료(210-07)	2,076,508

목	세목명	이·전용등 여유재원
	유류비(210-08)	1,797,382
	시설장비유지비(210-09)	1,353
	복리후생비(210-12)	348,605
	일반용역비(210-14)	225,067
	관리용역비(210-15)	706,746
	기타운영비(210-16)	33,288
220목	국내여비(220-01)	271,491
	국외업무여비(220-02)	28,992
250목	직책수행경비(250-02)	387,021
	특정업무경비(250-03)	355,116
260목	일반연구비(260-01)	15,300
310목	기타보전금(310-04)	6,760
320목	고용부담금(320-09)	455,017
	실시설계비(420-01)	48,160
420목	공사비(420-03)	1,290,267
	감리비(420-04)	411,022
	시설부대비(420-05)	1,970
430목	자산취득비(430-01)	5,193,073
	합계	23,766,872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3개년도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의 자산취득비, 임차료, 유류비, 공사비 및 일반수용비의 이·전용 등 재원 규모를 살펴보면 상기한 경향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자산취득비, 임차료, 유류비, 공사비, 일반수용비 등 세목에서 연례적으로 여유재원이 비슷한 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세목의 예산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음.

〈3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전용등 세목별 여유재원〉

(단위: 천원)

세목명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자산취득비(430-01)	4,384,663	4,740,702	5,193,073
임차료(210-07)	1,354,798	1,163,154	2,076,508
유류비(210-08)	1,711,465	1,466,095	1,797,382
공사비(420-03)	2,356,156	1,684,666	1,290,267
일반수용비(210-01)	657,778	254,407	1,178,652
합계	10,464,860	9,309,024	11,535,882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국회는 대법원의 이·전용 등의 문제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저해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대규모 이전용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주의)를,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이전용 등 예산 변경 관행 주의 필요’(주의)를 받았음에도 2025회계연도 역시 예산 이·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대법원의 지속적인 이·전용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결산 심사과정에서 ‘주의’ 수준보다 강화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및 기금 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2026년 2월 「국가재정법」²¹⁾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가 신설됨.

동 조문은 같은 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조문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함으로써 같은 법 제16조(예산의 원칙)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재정투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적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이 되는 세입 또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 추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 결산을 살펴보면,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거나 매년 일정한 수납액이 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등 세입 편성 규모와 실제 수납실적 간의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토지대여료(51-511)의 경우 2024년을 제외하고 9억 1,800만원 수준의 예산을, 몰수금 및 추징금(56-562)의 경우 매년 1억 500만원의 예산을, 변상금(57-571)의 경우 매년 2억 4,700만원을 편성하다 2026년은 단순히 2024회계연도 결산액을 2026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있고,

〈토지대여료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908	908	908	202	201	22.1	99.2	2	—
2023	918	918	918	221	219	23.9	99.1	2	—
2024	201	201	201	214	213	106.0	99.5	2	—
2025	918	918	918	366	366	39.9	100.0	—	—
2026	918	918	—	—	—	—	—	—	—

〈물수금 및 추징금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05	105	105	66	66	62.9	100.0	—	—
2023	105	105	105	66	66	62.9	100.0	—	—
2024	105	105	105	41	41	39.0	100.0	—	—
2025	105	105	105	62	62	59.0	100.0	—	—
2026	105	105	—	—	—	—	—	—	—

〈변상금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247	247	247	518	106	42.8	20.4	412	—
2023	247	247	247	477	50	20.2	10.5	428	—
2024	247	247	247	5,475	546	221.1	10.0	4,924	4
2025	247	247	247	4,994	88	35.6	1.8	4,906	—
2026	546	546	—	—	—	—	—	—	—

건물대여료(51-512)는 실제 수납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3% 증액하여 편성함에 따라 매년 수납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건물대여료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2,970	2,970	2,970	2,745	2,745	92.4	100.0	—	—
2023	3,059	3,059	3,059	2,701	2,701	88.3	100.0	—	—
2024	3,151	3,151	3,151	2,664	2,664	84.5	100.0	—	—
2025	3,246	3,246	3,246	2,721	2,721	83.8	100.0	—	—
2026	3,343	3,343	—	—	—	—	—	—	—

또한, 징계부가금(56-564)의 경우 매년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제 수납액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지 않아 세입이 과소 추계되고 있음.

〈징계부가금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	—	—	1,109	49	—	4.4	1,060	—
2023	—	—	—	1,060	—	—	—	1,060	—
2024	—	—	—	1,062	11	—	1.0	1,045	7
2025	—	—	—	1,047	2	—	0.2	746	300
2026	—	—	—	—	—	—	—	—	—

-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토지대여료(51-511), 건물대여료(51-512),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기타잡수입(69-691), 건물매각대(71-711), 기타고정자산매각대(71-713)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액수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거나 특정 연도의 결산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세입의 부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의 모습을 보였고,

토지매각대(72-721)의 경우는 구 은평등기소 매각대금을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행정상 착오로 토지매각대에 이를 계상함에 따라²²⁾ 예산과 수납액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임.

〈토지대여료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00	100	100	48	28	27.9	58.1	20	—
2023	100	100	100	116	53	53.0	45.7	63	—
2024	100	100	100	68	50	50.0	73.5	19	—
2025	100	100	100	35	35	35.0	35.0	—	—
2026	100	100	—	—	—	—	—	—	—

〈건물대여료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92	192	192	228	228	118.6	100.0	—	—
2023	192	192	192	230	224	116.7	97.4	—	—
2024	192	192	192	244	244	127.1	100.0	—	—
2025	224	224	224	223	223	99.6	100.0	—	—
2026	224	224	—	—	—	—	—	—	—

22) 이와 관련된 검토사항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규모 산정 및 상환계획 관리 강화 필요’에서 구체적으로 서술

〈기타재산이자수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55	155	155	213	213	137.2	100.0	—	—
2023	155	155	155	660	659	425.2	99.8	1	—
2024	155	155	155	681	681	439.4	100.0	—	—
2025	659	659	659	511	1	0.1	0.1	510	—
2026	681	681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20	20	20	2	2	9.7	100.0	—	—
2023	20	20	20	1	1	5.0	100.0	—	—
2024	20	20	20	7	7	35.0	100.0	—	—
2025	20	20	20	101	101	505.0	100.0	—	—
2026	20	20	—	—	—	—	—	—	—

〈기타잡수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7	7	7	10	10	137.4	100.0	—	—
2023	7	7	7	19,013	3	42.9	0.0	19,010	—
2024	7	7	7	19,014	2,720	38,857.1	14.3	16,294	—
2025	7	7	7	16,299	4	57.1	0.0	16,294	—
2026	2,472	2,472	—	—	—	—	—	—	—

〈건물매각대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389	1,389	1,389	64	64	4.6	100.0	—	—
2023	1,389	1,389	1,389	79	79	5.7	100.0	—	—
2024	937	937	937	—	—	—	—	—	—
2025	1,389	1,389	1,389	—	—	—	—	—	—
2026	1,389	1,389	—	—	—	—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7	17	17	—	—	—	—	—	—
2023	17	17	17	—	—	—	—	—	—
2024	17	17	17	—	—	—	—	—	—
2025	17	17	17	—	—	—	—	—	—
2026	17	17	—	—	—	—	—	—	—

〈토지매각대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0,261	10,261	10,261	12,352	12,352	120.4	100.0	—	—
2023	10,553	10,553	10,553	9,797	9,797	92.8	92.8	—	—
2024	10,702	10,702	10,702	518	518	4.8	100.0	—	—
2025	11,330	11,330	11,330	—	—	—	—	—	—
2026	4,504	4,504	—	—	—	—	—	—	—

특히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세입부족으로 인해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부터 300억원을 전입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징수실적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경우,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및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85-851)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수입을 기금 운용계획으로 편성하지 않았고,

〈기타재산이자수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계획〉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2	—	—	—	3	3	—	100.0	—	—
2023	—	—	—	2	2	—	100.0	—	—
2024	—	—	—	8	8	—	100.0	—	—
2025	—	—	—	24	24	—	100.0	—	—
2026	—	—	—	—	—	—	—	—	—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계획〉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2	—	—	—	26,459	26,459	—	100.0	—	—
2023	—	—	—	3,920	3,920	—	100.0	—	—
2024	—	—	—	4,815	4,815	—	100.0	—	—
2025	—	—	—	2,551	2,551	—	100.0	—	—
2026	—	—	—	—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85-852)는 구체적인 산식을 통하여 계획액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 총액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수입을 사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액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계획〉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2	49,829	49,829	49,829	—	—	0.0	0.0	—	—
2023	77,287	77,287	77,287	—	—	0.0	0.0	—	—
2024	94,281	94,281	94,281	—	—	0.0	0.0	—	—
2025	128,470	128,470	128,470	—	—	0.0	0.0	—	—
2026	255,695	255,695	—	—	—	—	—	—	—

- 참고로, 국회는 상기한 세입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보다 강한 수준의 시정조치요구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세입(수입) 추계 부정확성 관련 국회의 시정조치 내역〉

연도	예/결산	시정조치요구 유형	시정조치요구 내용
2022	결산	주의	변상금 수납률 제고를 위해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 필요
2022	결산	주의	적절한 수입예산 계상 및 공탁금 환급비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023	결산	제도개선	징계부가금 세입예산 편성 및 수납실적 제고 필요
2025	예산안	부대의견	대법원은 토지대여료/변상금/건물매각대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규정된 개별 수입 항목별 산식을 참고하고, 실제 징수실적 등을 함께 감안하여 예산 및 기금을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현행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재정경제부지침)」 제7조²³⁾에서는 구체적인 산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과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7조에서는 수입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식이 규정되어 있었음.

〈구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상 수입계획액 산출방식〉

1. 토지대여료 산출식 = [전 3개년 결산평균액 × (1+전 3개년 공시지가 평균상승률) × (1+당해연도 공시지가 상승률)]
2. 건물대여료 산출식 = [전 3개년 결산평균액 × (1+전 3개년 공동주택공시가격 평균상승률) × (1+당해연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
3. 기타재산수입 산출식 = [{전 3개년 결산평균액 × (1+전 3개년 공시지가 평균상승률과

23)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재정경제부지침)」 제7조(수입계획의 작성) ① 기금청은 기금의 재원 중 법 제26조의3제4호의 수입금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결산액, 공시지가 변동률, 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계획을 작성한다.

1. 토지대여료 :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재산 중 토지를 대부한 대가로 징수하는 수입
2. 건물대여료 :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재산 중 건물을 대부한 대가로 징수하는 수입
3. 기타재산수입 :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의 분납에 따른 이자수입과 수탁기관의 위탁관리 수입금(매각대금 등) 및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4. 변상금 :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없이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입
5. 위약금 :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재산의 임대·매각계약 등과 관련한 위약금 수입
6. 기타경상이전수입 :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의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 징수하는 수입
7. 건물매각대 :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재산 중 건물 매각에 따른 수입
8. 토지매각대 :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재산 중 토지 매각에 따른 수입

② 새로운 수입항목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입계획을 수립한다.

- 공동주택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의 평균) × (1+당해연도 공시지가 상승률과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의 평균)} × (당해연도 고시이자율/전년도 고시이자율)]
4. 변상금 산출식 = [전 3개년 결산평균액 × (1+전 3개년 공시지가 평균상승률) ×
(1+당해연도 공시지가 상승률)]
 5. 위약금 산출식 = 전 3개년 결산평균액
 6. 기타경상이전수입 산출식 = [전 3개년 결산평균액 × (1+전 3개년 공시지가 평균상승률)
× (1+당해연도 공시지가 상승률)]
 7. 건물매각대 산출식 = [전 3개년 결산평균액 × (1+전 3개년 공동주택공시가격 평균상승률)
× (1+당해연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
 8. 토지매각대 산출식 = [전 3개년 결산평균액 × (1+전 3개년 공시지가 평균상승률) ×
(1+당해연도 공시지가 상승률)] ± 조정액
 9. 기타고정자산매각대 및 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산출식 = 전 3개년 결산평균액 또는
과목존치금

이에 대해 대법원도 해당 규정 등을 참고하여 세입예산안 및 수입
계획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함.

- 따라서 대법원은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재산수입 등의 세입
(수입) 추계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

《총괄》

(1) 본부기본경비 및 본부운영지원의 특정업무경비, 기타운영비, 포상금 등 예산을 연수원, 교육원, 도서관에서 내역변경 없이 집행

- 본부 기본경비(7011-250) 사업은 사법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851억 6,700만원이며, 이 중 846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고, 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본부 기본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부 기본경비	84,964	92	110	85,167	84,639	23	505

- 본부 운영지원(7031-303) 사업은 대법원 및 각급법원, 신·증축 청사의 공공요금, 시설관리 용역비 등 청사관리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1,130억 6,100만원이며, 이 중 1,126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본부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부 운영지원	116,548	1	△3,487	113,061	112,687	8	367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내역변경’을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내역변경은 세부사업간 증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다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체전용은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²⁴⁾에 규정된 절차로,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승인하되,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4)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동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상기한 규정에 비추어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자체전용 또는 내역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됨.

- 그러나, 대법원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본부기본경비 및 본부운영지원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역변경 없이 법원 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사법연수원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법원조직법」 제9조²⁵⁾에서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이나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²⁶⁾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각 기관별로 세부사업을 달리하여 기본경비

25) 「법원조직법」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6) 「법원조직법」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사법연수원) 관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동 사업인 본부 기본경비(7011-250)를 비롯하여 도서관 기본경비(7011-271), 연수원 기본경비(7011-281), 교육원 기본경비(7011-291) 등 각 기관의 기본경비가 명확히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별도의 내역변경 절차 없이 본부 기본경비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 임차료(210-07), 복리후생비(210-12), 기타운영비(210-16), 국내여비(220-01), 관서업무추진비(240-02), 특정업무경비(250-03) 및 포상금(310-03) 등 예산과, 본부 운영지원 사업의 상용임금(110-03), 피복비(210-03), 급식비(210-04), 기타운영비(210-16), 국내여비(220-01), 고용부담금(320-09) 예산을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에 별도의 내역변경 절차 없이 집행함.

구체적으로, 동 본부 기본경비 사업의 예산으로 법원도서관에서 1억 2,058만원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1억 2,567만원을, 사법연수원에서 2억 8,202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5억 2,828만원을 별도의 내역변경 절차 없이 집행하였고,

〈내역변경 절차 없이 본부 기본경비 예산을 타 기관에서 집행한 내역〉

(단위: 원)

기관명	세목	집행내용	집행액
법원도서관	일반수용비(210-01)	출산용품지원	296,420
		능력개발비	8,659,990
	임차료(210-07)	신규직원 생활안정자금	11,581,000
	복리후생비(210-12)	건강검진비	7,727,040
		동호회 활동지원금	2,970,000
	기타운영비(210-16)	과운영비 추가지급(12개월)	7,200,000
		출산 축하 지원금	600,000
	국내여비(220-01)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	1,715,600
	특정업무경비(250-03)	사법행정활동비(12개월)	16,440,000
		연수활동지원비 관련 식비	56,693,010
	포상금(310-03)	지식관리 포상금	300,000
		지식관리포상 상품권 구입	6,400,000
	소계		120,583,060
법원공무원 교육원	일반수용비(210-01)	능력개발비	300,000
	임차료(210-07)	신규직원 생활안정자금	1,988,000
	복리후생비(210-12)	건강검진비	6,650,060
		동호회 활동지원금	1,901,600
	기타운영비(210-16)	과운영비 추가지급(12개월)	3,600,000
	국내여비(220-01)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	12,318,900
	특정업무경비(250-03)	교육자료조사수집비(12개월)	62,634,890
		교육자료수집 관련 식비	30,798,850
	관서업무추진비(240-02)	자료수집 관련 식비	4,488,000
	포상금(310-03)	우수공무원 · 공무원직 포상금	993,400
	소계		125,673,700
사법연수원	일반수용비(210-01)	출산용품지원	265,238
		능력개발비	2,038,100
	임차료(210-07)	신규직원 생활안정자금	1,200,000
	복리후생비(210-12)	건강검진비	12,721,250
		동호회 활동지원금	2,760,000
	기타운영비(210-16)	대법원장 격려금	1,000,000
		출산 축하 지원금	600,000
		과운영비 추가지급(12개월)	3,600,000
		홈페이지 우수법원 격려금	1,000,000
	국내여비(220-01)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	3,356,000
	관서업무추진비(240-02)	가인 경연대회 관련 식비 집행	10,000,000
	특정업무경비(250-03)	사법행정활동비(12개월)	72,254,000

기관명	세목	집행내용	집행액
		연수조사활동비 관련 식비	170,729,994
	포상금(310-03)	표창대상자 포상금	500,000
	소계		282,024,582
	합계		528,281,342

자료 : 각 기관의 2025회계연도 지급대장 및 지출대장 바탕으로 재작성

본부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법원도서관에서 1억 9,993만원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7,623만원을, 사법연수원에서 9,115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3억 6,731만원을 별도의 내역변경 절차 없이 집행함.

〈내역변경 절차 없이 본부 운영지원 예산을 타 기관에서 집행한 내역〉

(단위: 원)

기관명	세목	집행내용	집행액
법원도서관	상용임금(110-03)	기간제 근로자 보수	58,023,380
		사회복무요원 보수	109,260,470
	급식비(210-04)	기간제 근로자 명절 휴가비	2,750,000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10,675,000
	기타운영비(210-16)	재판지원시설운영비(12개월)	4,200,000
		비서실 운영비 추가분(6월)	500,000
	국내여비(220-01)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4,647,600
법원공무원 교육원	고용부담금(320-09)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 등	9,876,550
	소계		199,933,000
	상용임금(110-03)	사회복무요원 보수	62,095,170
	피복비(210-03)	사회복무요원 피복	305,470
	급식비(210-04)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6,377,000
	기타운영비(210-16)	교육지원시설운영비(12개월)	4,700,000
	국내여비(220-01)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2,748,000
사법연수원	소계		76,225,640
	상용임금(110-03)	사회복무요원 보수	74,830,200
	피복비(210-03)	사회복무요원 피복 등	606,000
	급식비(210-04)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7,742,000
	기타운영비(210-16)	연수지원시설운영비(12개월)	4,200,000
		2025 상반기 사무국장 격려금	500,000
	국내여비(220-01)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3,268,300
소계			91,146,500
합계			367,305,140

자료 : 각 기관의 2025회계연도 지급대장 및 지출대장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예산집행 관행은 2025회계연도 단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예산 집행 건전성 확보 및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존중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재정당국과 다각도로 협의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각 기관마다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국가재정법」²⁷⁾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에 이·전용 등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회계 처리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럼에도 대법원은 「국가재정법」과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내역변경 등의 절차 없이 타 기관의 예산을

27)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집행하였는바,

대법원은 앞으로 소속기관별 실제 소요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 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각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화사업 총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법원의 2025년도 일반회계 사법정보화운영[1300] 프로그램의 예산액은 1,268억 4,7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380억 4,900만원이며, 이 중 1,096억 3,900만원이 집행되고, 227억 4,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6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사법정보화운영[1300]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으로는 사법업무 전산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등이 있음.

〈사법정보화운영(일반회계)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 현 액(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사법정보화운영 (일반회계)	126,847	13,698	△2,495	138,049	109,639	22,741	5,670	79.4
사법업무 전산화	72,740	937	△2,229	71,448	53,957	14,750	2,741	75.5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23,000	5,848	—	28,848	24,151	1,916	2,781	83.7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구축	7,198	6,697	—	13,895	10,083	3,713	100	72.6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17,456	—	△236	17,219	17,124	65	30	99.4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6,453	216	△30	6,639	4,324	2,297	18	65.1

자료: 대법원

(나)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 및 사고이월 최소화 필요

- 대법원의 2025회계연도 정보화사업 분기별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약 229건 중 95건이 4분기에 체결되어 전체 계약 건수의 약 41.5%에 달함.

〈2025년 대법원 정보화사업 분기별 체결 현황〉

(단위: 건수)

세부사업	1/4분기 체결	2/4분기 체결	3/4분기 체결	4/4분기 체결	총계
사법업무 전산화	14	20	43	<u>74</u>	151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구축	8	4	—	<u>5</u>	17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구축	8	2	13	<u>13</u>	36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5	1	1	<u>1</u>	8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10	2	3	<u>2</u>	17
합 계	45	29	60	<u>95</u>	229

자료: 대법원

- 정보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과업심의, 보안성 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조달 및 사업자 선정 등 계약 체결 전에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절차별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2025회계연도 정보화사업 계약 건수의 약 41.5%인 95건의 계약 체결이 4분기에 집중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행,

조달 협의 및 사업자 선정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이 다수 있었음을 보여줌. 계약이 연말에 체결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 시험·검증, 장비 납품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의 과업이 다음 연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실제로 2025년 대법원 정보화사업 계약 229건 중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 계약은 64건으로, 전체 계약의 27.9%에 이르렀음.

- 이월이 발생한 계약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된 사업 64건에는 전산장비 구매사업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여러 연도에 걸쳐 추진되는 다년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2025년 대법원 정보화사업 계약 중 이월 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명	계약 체결일	사업 기간	계약금액	이월금액
1	사법업무 전산화	2025년 재판사무시스템 기능개선(사법부인증관리센터 개발) 사업	25.10.17	25.10. ~26.02.	100	50
2		2025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고도화 사업(개인정보보호조치 등)	25.12.22	25.12. ~26.07.	394	315
3		2025년 사법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인사관리시스템 액티브-제거 및 고도화 1차)	25.05.07	25.05. ~26.01.	1,196	598
4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본사업)	25.09.16	25.09. ~26.09.	392	277
5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사업(인프라)	25.12.26	25.12. ~26.12.	96	96

연번	세부사업	사업명	계약 체결일	사업 기간	계약금액	이월금액
6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25.12.15	25.12. ~26.12.	304	304
7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25.07.18	25.07. ~26.02	1,155	578
8		재판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감리용역	25.12.01	25.12~ 26.02.	225	225
9		2025년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사업	25.10.21.	25.10. ~26.02.	253	143
10		2025년 사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감리용역	25.07.30.	25.07. ~26.02.	156	78
11		재판연구원 필기시험용 CBT 솔루션 도입(인사총괄)	25.10.15.	25.10 ~26.03.	50	50
12		2025년 하반기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 사업(레이저프린터(흑백))	25.09.18.	25.09. ~26.01.	131	131
13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본사업)	25.09.16	25.09. ~26.09.	3,227	3,227
14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사업(인프라)	25.12.26	25.12. ~26.12.	828	828
15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WAS Server)	25.11.26	25.11. ~26.04.	129	129
16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PKI 인증 솔루션)	25.12.11	25.12. ~26.04.	147	147
17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SSO 솔루션)	25.12.11	25.12. ~26.04.	111	111
18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LADP)	25.12.11	25.12. ~26.04.	33	33
19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영상스트리밍 솔루션)	25.12.11	25.12. ~26.04.	90	90
20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API 운영관리플랫폼)	25.12.11	25.12. ~26.04.	88	88
21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DB암호화)	25.12.11	25.12. ~26.04.	194	194
22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DB접근제어)	25.12.11	25.12. ~26.04.	364	364

연번	세부사업	사업명	계약 체결일	사업 기간	계약금액	이월금액
23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서버보안)	25.12.13	25.12. ~26.04.	4	4
24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상용SW)(감사로 그)	25.12.11	25.12. ~26.04.	44	44
25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상용SW)(DBMS, DBMS 이중화)	25.12.19	25.12. ~26.04.	2,039	2,039
26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상용SW)(DBMS 성능 모니터링)	25.12.18	25.12. ~26.04.	322	322
27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상용SW)(계정관 리)_시스템접근제어	25.12.18	25.12. ~26.04.	11	11
28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상용SW)(인프라 취약점진단)	25.12.18	25.12. ~26.04.	76	76
29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25.07.18	25.07. ~26.02	2,694	2,694
30		재판업무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MGMT스위치)	25.09.26	25.11. ~26.01.	20	20
31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DBMS SW	25.10.28	25.11. ~26.01.	54	54
32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DB암호화	25.10.28	25.11. ~26.01.	40	40
33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DB접근제어	25.10.28	25.11. ~26.01.	58	58
34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IT인프라통합모니 터링	25.10.28	25.11. ~26.01.	43	43
35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데이터베이스성능 관리	25.10.28	25.11. ~26.01.	64	64
36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서버보안	25.10.28	25.11. ~26.01.	35	35

연번	세부사업	사업명	계약 체결일	사업 기간	계약금액	이월금액
37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S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시스템접근제어	25.10.28	25.11. ~26.01.	7	7
38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S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웹어플리케이션 성능관리	25.10.28	25.11. ~26.01.	14	14
39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S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웹어플리케이션서 버	25.10.28	25.11. ~26.01.	28	28
40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S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인프라취약점진단	25.10.28	25.11. ~26.01.	15	15
41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S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통합로그관리	25.10.28	25.11. ~26.01.	20	20
42		25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확충 사업(통합구매)	25.09.23	25.09. ~26.03.	584	584
43		25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확충 사업(가상화솔루션)	25.08.07	25.08. ~25.09.	180	180
44		25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확충 사업(영상재판관리클라우드)	25.11.17	25.11. ~26.05.	252	252
45		서울고등법원 전자(형사 중법정) 구축공사	25.12.17.	25.12. ~26.03.	7	7
46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 및 조정실 전자법정 구축 공사	25.12.29.	25.12. ~26.01.	19	19
4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별관 증축 전자 법정 구축	25.12.18.	25.12. ~26.08.	32	32
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별관동 전산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공사	25.11.21.	25.11. ~26.02.	207	33
49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보안장비 구매사업(인프라취약점진단)	24.12.26.	25.12. ~26.03	751	755
50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보안장비 구매사업(GPKI DB서버)	25.10.20.	25.12. ~26.03	43	43
51		2025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고도화사업(개인정보보호조치 등)	25.12.22.	25.12. ~26.07.	1,398	1,118

연번	세부사업	사업명	계약 체결일	사업 기간	계약금액	이월금액
52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구축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3차년도)	25.11.12.	25.11. ~26.10	1,545	1,446
53		2025년 형사업무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한 통합 사업	26.05.28.	26.05 ~26.12	1,761	1,815
54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3차년도)	25.11.17.	25.11. ~26.10.	164	168
55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로그관리 상용SW 2차 사업	2025.12.16.	25.12. ~26.10.	24	24
56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상용SW 2차 사업	2025.12.18.	25.12. ~26.10.	62	62
57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접근 제어 상용SW 도입 2차 사업	2025.12.16.	25.12. ~26.10.	4	4
58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보안 상용SW 도입 2차 사업	2025.12.16.	25.12. ~26.10.	19	19
59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취약점진단 상용SW 도입 2차 사업	2025.12.16.	25.12. ~26.10.	8	8
60		2025년 형사업무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한 STT 상용SW 도입 사업	2025.12.18.	25.12. ~26.10.	151	151
61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관련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기기 구매 사업	2025.12.16.	25.12. ~26.02	15	15
62	가족 등록업무 전산화	2025년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사업	2025.10.21.	25.10. ~26.02.	130	65
63	법원 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2025년 법원도서관 미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연계활용성 강화	25.10.14.	25.10. ~26.8.	2,740	2,073
64		2025년 법원도서관 미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연계활용성 강화 감리	25.10.22.	25.10. ~26.10.	222	222

자료 :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먼저, ‘2025년 하반기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사업’은 흑백 레이저프린터 5,246대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약 4개월 후인 2026년 1월 납품이 완료되었음. 전산장비 구매사업은 시스템 개발사업에 비하여 납품·설치 및 검수에 필요한 기간을 비교적 예측하기 용이하므로, 예상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계약·납품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였다면 2025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사고이월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²⁸⁾.
- 다음으로 2025년도에 개시된 주요 다년도 사업인 ‘사법부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사업’, ‘법원 AI플랫폼 구축 및 법률자료 지능형 검색모델 개발사업’ 및 ‘법원전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계약 체결과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세 사업의 개시연도 예산 합계액 중 약 81%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과거 대법원이 추진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및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도 첫째 계약이 각각 9월과 7월에 체결되어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어, 대규모 다년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사업 초기의 일정 지연과 예산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8)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낙찰률 하락에 따른 예산 내 구매 물량의 대폭 증가와 이에 따른 제조 및 전국 법원 배송·검수 소요기간 증가, 2026년도 전산장비 예산 감액에 대응한 안정적 수급 물량(1.5년치)의 선제적 확보 등 불가피한 행정·재정적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계약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하여 사고이월을 추진한 것으로 설명함.

〈주요 다년도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사업 개시연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개시연도 계약체결일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률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u>2020. 09.</u>	7,247	2,827	4,313	<u>59.5</u>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u>2023. 07.</u>	3,829	1,387	2,389	<u>62.4</u>
사법부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u>2025. 09.</u>	8,565	115	8,384	<u>97.9</u>
법원 SI플랫폼 구축 및 법률자료 지능형 검색 모델 개발 사업	<u>2025. 07.</u>	4,706	578	3,895	<u>82.8</u>
법원전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u>2025. 10.</u>	3,701	1,377	2,297	<u>62.1</u>

- 다년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개시연도에 분석·설계와 개발환경 구축 등 후속 단계의 기반이 되는 과업을 수행하고, 이후 연도에 시스템 개발, 시험·검증, 데이터 이관, 시스템 전환 및 안정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함.
- 따라서 개시연도의 계약과 사업 착수가 지연되면 후속 단계의 추진 일정도 연쇄적으로 늦어질 수 있음.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개발이나 시험·검증 기간을 단축할 경우 시스템의 완성도와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기존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당초 계획한 서비스 개시와 개선 효과도 지연될 수 있음.
- 예컨대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의 ‘2025년 형사업무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한 통합사업’도 본 사업인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계약이 2026년 5월경에야 체결되었음.

- 또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실제 추진 시기의 차이가 커지면 연도별
예산 소요와 집행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사고이월이 반복될 수 있고,
후속 연도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전체 사업비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대법원은 앞으로 정보화사업의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절차별 소요기간, 조달·계약 일정, 실제 사업기간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산장비 구매사업은
납품·설치·검수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일정을 앞당기고, 대규모
다년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개시연도의 계약 목표시점과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설정·관리함으로써 사업을 적기에 착수하고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세 입》

(3) 기타경상이전수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56-596)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 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등을 국고에 귀속하는 수입항목임. 2025년도 세입 예산 1,223억 700만원 중 1,202억 6,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196억 1,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6억 4,800만원이 미수납됨.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5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기타경상이전수입	122,307	120,263	119,615	648	—

(나) 등기 전산장비 구매사업 입찰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국가채권관리법」 미준수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2025회계연도 미수납액 6억 4,846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등기 전산장비 구매사업 입찰 시 투찰가격 협의, 입찰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6억 2,673만원이 대부분(97%)을 차지하고 있음.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내역〉

(단위: 천원)

기관	내역	금액
법원행정처	▷ 등기 전산장비 구매사업 입찰시 투찰가격 협의, 입찰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 국가채권 발생 → 징수결정 → 미수납	626,728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에 따라 보안용 카메라를 대법원에 납품한 (주)0000의 직접 생산 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사유 발생	3,866
	▷ 해외연수경비(학비) 환수 ※ 26. 1. 10. 수납처리됨	7
	소계	630,601
서울북부지법	▷ 소송등 인지 과오지급금 환수	1,189
수원지법	▷ 가족관계사무지원 보조금 반환 및 통역인 여비 환수	10,070
대전지법	▷ 가족관계보조금 교부 잔액 반납(예산군)	729
울산지방법원	▷ 가족관계등록보조금 반납(2,874,320원) ▷ 재판업무지원비착오사용에반납(375,000원)	3,249
광주지방법원	▷ 2024회계연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자치단체 보조금 잔액 반환	1,938
전주지방법원	▷ 국고대납감정료 추심결정	690
합계		648,466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제작성

- 해당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냈는데, 경쟁 업체 중 어떤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핵심 사업을 하도급받기로 공모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건으로, 관련 형사판결이 2020년 확정되었고, 동 판결을 바탕으로 국가가 이들 업체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10월 원고승소판결이 난 사건임²⁹⁾.

²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가합51606 판결 [손해배상(기)]. 참고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 그런데, 원고승소판결이 2024년 11월 19일 확정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2025년 1월부터 납부고지서를 「국가채권 관리법」 제13조³⁰⁾에 따라 발송하였음.

〈손해배상금 관련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미수납액 현황〉

(단위: 천원)

대상자	2025년					
	결의일	납기일	징수결정액	수납액 ¹⁾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주식회사 ○○	1. 9.	1. 22.	234,437	—	234,437	—
주식회사 □□	1. 9.	1. 22.	173,977	—	173,977	—
○○○	6. 11.	7. 10.	43,736	—	43,736	—
□□□	1. 9.	1. 22.	14,250	—	14,250	—
	4. 3.	5. 7.	58,210	14,829	43,381	—
◇◇◇	4. 3.	5. 7.	58,210	14,829	43,381	—
△△△	4. 3.	5. 7.	14,829	14,829	—	—
●●●	4. 3.	5. 7.	14,829	14,829	—	—
■ ■ ■	1. 9.	1. 22.	14,250	—	14,250	—
합계			626,728	59,316	567,412	—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주 1) 2025회계연도에는 전액 미수납. 5,932만원은 2026. 5. 29. 납부됨.

그러나, 납부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는 「국가채권 관리법」³¹⁾ 제14조에 따른 독촉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1606 판결 [손해배상(기)]은 2025년 5월 16일 확정되었음.

- 30) 「국가채권 관리법」 제13조(납입의 고지)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을 겸하는 경우 또는 수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납입고지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은 신고납부에 속하는 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1)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조에 따라 고지된 납입기한(납입고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은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

강제이행의 청구 등의 절차를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대부분 미수납한 것으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에서는 납입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회사 ○○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지 9개월이 경과한 이후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주식회사 □□의 경우 고지서를 1년 이상 넘도록 송달하지 못하였으며 독촉장 발급기한도 도과하였고, 기타 대상자의 경우도 법률에서 정한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의 절차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

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가 있는 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나 그 밖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집행권원(執行權原)이 있는 채권(제3호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같은 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公正證書) 작성 등 집행권원 취득 절차를 요청하는 일

〈손해배상금 미수납 관련 조치 경과〉

채무자명		송달상황	발송일	납부기한
주식회사 ○○		독촉장 송달 완료	25.01.09. 고지서(송달) 25.10.17. 독촉(반송) 26.01.19. 독촉(반송) 26.02.13. 독촉(송달)	25.01.22. 25.10.30. 26.02.03. 26.02.27.
주식회사 □□		독촉장 반송	25.01.09. 고지서(반송) 25.01.17. 고지서(반송) 26.01.19. 고지서(반송) 26.01.27. 고지서(반송) 26.02.13. 고지서(송달) 26.04.01. 독촉(반송) 26.05.19.(집행관송달 불능) 26.06.26. 납부서(청산인 ○○○ 발송)	25.01.22. 25.01.28. 26.02.03. 26.02.10. 26.02.27. 26.04.15. 26.05.29. 26.07.10.
□□□	공동 하여 납부	독촉장 송달완료	25.01.09. 고지서(반송) 25.04.03. 고지서(반송) 25.10.17. 독촉(반송) 26.01.19. 독촉(반송) 26.02.13. 독촉(송달)	25.01.22. 25.04.10. 25.10.30. 26.02.03. 26.02.27.
■ ■ ■		납부고지서 반송	25.01.09. 고지서(반송) 26.02.13. 고지서(반송) 26.05.15. 고지서(반송) 26.06.26.(집행관송달 중)	25.01.22. 26.02.27. 26.05.29. 26.07.10.
□□□	공동 하여 납부	독촉장 송달완료	25.04.03. 고지서(반송) 25.04.24. 고지서(송달) 26.01.19. 고지서(송달) 26.02.13. 독촉(송달)	25.04.10. 25.05.07. 26.02.03. 26.02.27.
◇◇◇		독촉장 송달완료	25.04.03. 고지서(송달) 25.04.24.(반송) 26.01.19. 독촉(송달) 26.02.13. 독촉(송달) 26.04.28.(송달)	25.04.10. 25.05.07. 26.02.03. 26.02.27. 26.05.12.
○○○		납부고지서 반송	25.06.11. 고지서(반송) 25.08.07.고지서(송달) 25.08.18. 독촉(반송) 25.08.29.독촉(반송) 26.01.19. 고지서(반송) 26.02.13. 고지서(반송) 26.06.12.(집행관송달 중)	25.07.10. 25.08.21. 25.08.29. 25.09.12. 26.02.03. 26.02.27. 26.06.26.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제작됨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별로 송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관할 주민센터에 주소지 확인 후 재송달 및 야간송달 등을 진행 중이며, 독촉장 기한 내에도 미납할 경우 법원행정처 국가채권 소관부서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강제집행의뢰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2025회계연도에 발생한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대법원이 「국가채권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징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소송 등을 통해 국가채권이 발생할 경우 징수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체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세 출》

(4)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사업은 선진 사법이론, 외국 판례 및 제도 연구와 이해를 통해 사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전문화·국제화를 촉진하며, 외국과의 사법 외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은 76억 9,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76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고,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7,693	-	-	7,693	7,639	-	54
- 전문법률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128	-	-	128	128	-	-

(나) 「국가재정법」 반하여 ‘2025년 세종 국제 콘퍼런스’ 전용절차 없이 집행 부적절

- 내역사업인 ‘전문법률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사업은 전문 법률 분야와 관련하여 외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 및 해외 저명 한인 법조인을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 등 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사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억 2,800만원이 모두 집행되었음.

대법원은 2024년도까지는 매년 동 내역사업의 예산으로 국제법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동 내역사업의 예산으로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함.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법치주의의 발전과 사법 접근성의 향상’을 주제로 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8개국의 대법원장·대법관 및 국제형사 재판소(ICC)의 전·현직 소장, 재판관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2025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행사임.

○ 그런데,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함에 있어 대법원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3개의 단위사업에 편성된 예산³²⁾을 전용 절차 없이 집행하였는바 시정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가재정법」 제46조³³⁾는 예산의 전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32) 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중 ‘전문법률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내역사업, 전문재판운영(1144-407) 중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내내역사업, 본부 운영지원(7031-303) 사업

33)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중앙관서의 장이 서로 다른 단위사업(세항)에 속한 예산으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용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단위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함.

- 구체적으로, 세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 세부사업 중 국제법률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예산 1억 2,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대법원은 내역변경 없이 동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를 5,300만원 추가로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집행하였고,

「국가재정법」상 전용절차를 위반하여 ‘전문재판운영(1144-407)’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사업을 위해 편성된 1억 5,700만원 및 다른 내내역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및 국외여비를 6,600만원 추가로 집행하였으며,

「국가재정법」상 전용절차를 위반하여 ‘본부운영지원(7031-303)’ 사업의 일반수용비 3,800만원을 세종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추가로 집행하는 등,

당초 편성액 1억 2,800만원 대비 약 3.5배 수준인 4억 4,200만원을 세종 컨퍼런스 행사를 위해 별도의 전용절차 없이 집행하였음.

〈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1140] 법관 등 전문화 및 국제화		[1144] 사실심총실화		[7031] 본부 운영지원	
세부사업	[1140-361]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4-407]전문재판운영		[7031-303]본부운영지원	
세목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일반수용비	55	108	86	90	—	38
임차료	34	34	39	39	—	—
일반용역비	30	30	27	27	—	—
관서업무추비	9	9	5	4	—	—
국외여비	—	—	—	63	—	—
합계	128	181	157	223	—	38
세부 내용	국제법률심포지엄 개최 위한 예산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위한 예산		기관운영 기본경비	

자료: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특히, 대법원은 세종 국제 콘퍼런스 행사를 ○○○ 업체, △△△ 업체, ☆☆☆ 업체 등 행사용역(PCO) 업체에 대행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를 때 행사용역의 경우 일반용역비(210-14) 세목으로 세목을 조정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일반용역비로의 별도 세목조정 절차 없이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관서업무추진비 및 국외업무여비를 각각의 기존 세목대로 행사대행 업체에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행사는 ‘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정하나,

2일차에 특허법원장 주최 공식 오찬이 있었고 제3세션(AI와 사법의 미래: 법이 기술을 만나다) 및 제4세션(혁신 기술의 보호와 사법의 역할)을 특허법원에서 운영하는 등 사실상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를 겸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법관 등 전문화 및 국제협력’ 사업의 ‘전문법률분야 국제심포지엄’ 예산과 ‘전문재판운영’ 사업의 ‘특허법원 국제 콘퍼런스 개최’ 예산에서 각각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당초 2025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에 따르면 2025년도에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위한 예산이 ‘전문재판 운영’ 사업에 전혀 편성된 바 없고, 특허법원 콘퍼런스 관련 행사를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포함하여 진행할 경우 ‘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에 관련 예산을 전용하여 함께 집행하는 것이 예산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설명은 설득력이 낮음.

또한, 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사업 중 ‘전문법률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내역사업에 편성된 예산 및 전문재판운영(1144-407) 사업 중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내내역사업에 편성된 예산보다도 각각 5,300만원 및 6,600만원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본부운영지원’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세종 국제 컨퍼런스 행사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임.

- 대법원은 앞으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할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 절차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고,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집행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자체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재판일반경비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사업은 재판운영에 소요되는 간접경비의 지원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원활한 실현을 도모하고, 법원 구성원이 일반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 등 내부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은 465억 1,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57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재판일반경비지원	46,158	202	155	46,515	45,768	525	221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269	-	-	269	69	195	5
-일반 재판업무지원 등	8,530	-	35	8,565	8,507	-	58

(나) 세목 착오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평가 이월 문제

- 내역사업인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평가’ 사업은 국가자격이나 공인 자격 없는 문서감정인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는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총 2억 6,900만원이 순증되었는데, 이 중 약 6,9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1억 9,50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되었음.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장비비 2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6,900만원을 전액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평가 사업 산출 근거〉

- 일반 용역비(인건비, 감정시료 제작비, 시설장비비, 평가준비비용 등) : 269백만원
- － 인건비 : 32백만원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 용역기간 5개월)
- － 감정 시료 제작비 : 26백만원(인영, 필적, 지문 제작비)
- － 시설 장비비 : 208백만원(답안입력을 위한 홈페이지 및 문서감정장비 구입)
- － 기타 평가 준비 비용 : 3백만원(인쇄, 라벨링, 사무용품 등)

자료 : 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바탕으로 재작성

- 대법원은 당초 신규 편성된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통해 도입된 장비 등을 2025년 9월부터 후보자 숙련도 평가 과정에서부터 활용할 계획이었음.

그런데, 시설 장비비 2억 800만원은 위·변조를 판별하기 위한 영상 분광분석기를 구매하는 비용으로서 그 성격상 일반용역비(210-14)가 아닌 자산취득비(430-01) 세목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세목 착오로 일반용역비로 편성함에 따라 이를 전용하는 행정절차로 인해 편성액 대비 약 94%인 1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고,

세목 착오로 영상분광분석기 구입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9월 치러진 후보자 숙련도 평가에서는 이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목 착오를 인지한 후 2025년 8월 기획재정부에 전용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25년 10월 말경에 승인되었고, 기획재정부의 전용 승인 직후 조달청을 통한 장비구입 계약절차에 착수하여 2025년 12월 24일 영상분광분석기 구입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2026년 3월 말 장비의 납품·설치를 완료하고 이월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 동 내역사업의 대규모 이월 및 후보자 숙련도 평가 과정에서의 장비미활용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당시 대법원의 세목 착오에 기인한 점이 크므로,

대법원은 앞으로 신규 사업 편성시 세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세목변경 수요 예측 잘못함에 따라 다시 세목변경 및 불용 부적정

- 내역사업인 ‘일반 재판업무지원 등’ 사업은 재판작용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용지대 및 전산소모품, 노후비품 교체 및 특근

매식비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총 8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3,500만원을 이·전용 등 받아 예산현액 85억 6,500만원 중 85억 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일반 재판업무지원 등 내역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목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 재판업무지원 등	8,530	—	35	8,565	8,507	—	58
-일반수용비	7,371	—	△122	7,249	7,237	—	12
-특근매식비	877	—	84	961	915	—	46
-복리후생비	15	—	—	15	15	—	—
-기타운영비	267	—	73	340	340	—	—

자료: 대법원, 2025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특근매식비(210-05) 세목은 2024년도와 동일한 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대법원은 특근매식비 부족을 예상하여 2025년 10월 17일 및 11월 13일에 총 9,500만원의 일반수용비(210-01)를 세목변경하였으나,

2025년 12월 29일 및 12월 30일 집행을 제고를 위하여 세목변경한 특근매식비 1,200만원을 또다시 일반수용비로 세목변경하였고 4,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2025년도 일반 재판업무지원 등 내역사업 특근매식비 세목변경 현황〉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세목변경 (2025.10.17.)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210-01	65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210-05	일반재판 업무지원 등 특근매식비 부족
자체세목변경 (2025.11.13.)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210-01	30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210-05	일반재판 업무지원 등 특근매식비 부족
자체세목변경 (2025.12.29.)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210-05	11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210-01	일반재판 업무지원 등 일반수용비 부족
자체세목변경 (2025.12.30.)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210-05	1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210-01	일반재판 업무지원 등 일반수용비 부족

- 결국, 대법원이 동 내역사업에서 세목변경한 9,500만원의 금액 중 실제 특근매식비로 집행된 금액은 28% 수준(2,700만원)에 불과하였고, 72%는 또다시 일반수용비로 세목변경하거나 불용되는 등 수요 예측에 큰 오차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향후 추계 정확도 제고 및 재배정 관리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임.

- 대법원은 앞으로 실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에서 세목변경을 수행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 각급법원 및 기관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음.

(6) 사법정책연구개선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사업은 사법제도의 객관적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양형기준개선, 사법정책연구원 운영 등을 포함한 사법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은 23억 5,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0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3,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목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정책연구개선	1,945	358	54	2,357	2,084	238	34
-양형제도개선지원	735	-	-	735	710	-	25
· 일용임금	22	-	-	22	20	-	2
· 일반수용비	361	-	2	363	361	-	2
· 복리후생비	290	-	△2	288	269	-	19
· 일반용역비	-	-	-	-	-	-	-
· 국내여비	18	-	13	31	30	-	1
· 국외업무여비	41	-	△13	28	28	-	-
· 고용부담금	3	-	-	3	2	-	1

(나)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예산을 타 세목에서 변경하여 집행 부적정

- ‘양형제도 개선 조사여비’는 ‘양형제도개선지원’ 내역사업에 포함된 내내역사업으로, 양형자료분석관의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기조자료를 위한 조사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임.

동 내내역사업은 전액 국내여비(220-01) 세목으로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동 내내역사업의 국내여비 예산은 2024년도 예산인 3,200만원 대비 1,400만 감액된 1,800만원임.

-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전년 대비 1,400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였고, 동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28일 감액된 예산(1,400만원) 수준과 유사한 1,300만원을 같은 내역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220-02) 세목에서 세목변경하여 예산현액을 실질적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는 바,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산집행임.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내역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편성된 예산 대부분 집행하였으나, 2025년은 내부 사정으로 이례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국내출장여비 부족소요를 국외업무여비 예산으로 충당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국내여비가 1,400만원 감액된 것은 2024년 편성액 3,200만원 중 81%인 2,6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승인 이용함에 따른 것으로,

실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의결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법원이 감액된 예산을 타 세목을 통해 원복시킨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집행으로 볼 수 있음.

- 대법원은 앞으로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실제 소요에 부합한 금액을 편성 협의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법원시설관리 등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은 법원시설에 대한 개선·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641억 6,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액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603억 7,200만원이며, 이 중 568억 1,700만원이 집행되고, 33억 3,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법원시설관리 등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법원시설관리 등	64,162	384	△4,174	60,372	56,817	3,338	217

자료: 대법원

(나) 민원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사업관리 및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미흡

- 내역사업인 민원환경 개선사업은 각급 법원의 노후·불편 시설을 정비하고 민원인 편의시설 및 청사 안전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33억 1,200만원 중 199억 7,100만원이 집행되고 32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13.9%로, 2024회계연도

에는 다음연도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2025년도 민원환경개선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민원환경 개선	24,502	—	△1,190	23,312	19,971	<u>3,256</u>	85
공사비(420-03)	17,399	—	△695	16,704	13,528	<u>3,115</u>	61

자료: 대법원

- 특히 민원환경 개선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5,600만원 중 약 95.7%는 공사비(420-03)에서 발생하였는데, 동 내역사업 공사비의 경우 예산액 173억 9,900만원 중 6억 9,500만원이 이·전용되어 예산 현액은 167억 400만원이었고, 이 중 31억 1,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비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약 18.6%에 이르고, 예산액 기준 집행률은 약 7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원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예산 중 38.1%에 해당하는 66억 2,400만원이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³⁴⁾³⁵⁾되었다가 같은 해 8월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각급 법원에

34)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10.

대한 예산 재배정 및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동절기 공사 제한 등으로 전년 대비 이월액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 해당 예산을 배정하면서 전체적인 집행률 등을 고려할 때 민원환경 개선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예산 배정 시기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대규모 이월 발생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실제 다음연도 이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이월 사업은 연도 말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일부 사업은 동절기 공사 제한 등으로 착공 자체가 다음연도로 예정되어 있어 계약 또는 착공 시점상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 특히 대법원 동관 1층 보행로 교체공사는 2025년 10월 22일 계약 되었으나 동계 공사 제한으로 인해 2026년 3월 1일 착공, 2026년 4월 29일 준공 되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청사 재배치 공사는 2025년 12월 19일 계약되었으나 2026년 3월 10일 착공, 2026년 9월 5일

1-2. 예산배정

가. 예산 배정 및 집행 유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계산 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업 등

- 35)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 대상 사업 지정 사유: 각급 법원 설치 기준이 부재하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통과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협의절차 및 적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

준공 예정임. 이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단계에서 공사기간, 계약 소요기간, 착공 가능 시기 및 연도 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2025년도 공사비 다음연도 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이월 사업	이월 금액	이월 사유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1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화장실 환경개선	282	공사 미준공에 따른 이월	25.09.12.	25.10.01.	26.01.26.
2	대법원 동관 1층 보행로 교체공사	386	동계 공사 제한에 따른 미준공 이월	25.10.22.	<u>26.03.01.</u>	<u>26.04.29.</u>
3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재배치공사	998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센터를 외부로 이전 후 순차적 재배치 공사 실시로 인한 미준공 이월	25.12.01.	25.12.15.	26.03.14.
4	서울법원종합청사 형사중법정 설치	745	내란재판 재판을 위한 형사중법정 추가 설치공사로, 평일 일과시간 중에는 소음·분진 등의 문제로 공사가 불가능하여 미준공 이월	25.11.25.	25.12.17.	26.03.16.
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청사 재배치 공사	705	별관 준공일이 변경되어 본관 청사 재배치 공사 미준공 이월	25.12.19.	<u>26.03.10.</u>	<u>26.09.05.</u> (예정일)

자료: 대법원

- 대법원은 앞으로 민원환경 개선사업 등 청사 시설공사 예산을 집행할 때 공사기간, 착공 가능 시기와 동절기 공사 제한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하고, 연말 계약 체결 및 다음 연도 착공으로 인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파방지 공사 감리비 소요 추계 미흡에 따른 집행 부진

- 2025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동파방지 공사 감리비로 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4억 900만원을 이·전용함에 따라 예산현액은 7,1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집행액은 3,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실행률은 약 8.1%에 불과하였음.

〈2025년도 민원환경 개선사업 내역사업 감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민원환경 개선	24,502	—	△1,190	23,312	19,971	3,256	85
감리비(420-04)	479	—	△409	71	39	32	—

자료: 대법원

-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집행 과정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 동파방지 공사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³⁶⁾에 따른 법정 공사

36)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

감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법정 공사감리를 전제로 편성한 감리비를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주 감리비로 변경·축소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 동파방지 공사의 감리비로 2,400만원만 집행하였기 때문임.

- 감리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 법정 공사감리 대상 여부, 감리 방식 및 업무 범위 등에 따라 필요성과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공사의 성격과 법정 감리 대상 여부, 안전관리·기술 지원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공사가 법정 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법정 공사감리를 전제로 감리비를 편성하였고, 이로 인해 당초 예산액의 약 8.1%만 집행되고 약 85.8%가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음. 이처럼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은 국회 예산 심사의 실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범정부 차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적기에 배분될 기회를

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약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청사 시설공사 관련 감리비를 편성할 때 해당 공사의 성격과 법정 공사감리 대상 여부, 필요한 감리 방식 및 업무 범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비 소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감리비를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라) 자산취득비 편성 필요성 검토 미흡 및 연례적 이전용 자원 활용 부적정

-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97억 3,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700만원이며, 이·전용 등으로 26억 1,8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71억 2,400만원임. 이 중 70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법원시설관리 등 자산취득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법원시설관리 등 자산취득비	9,735	7	<u>△2,618</u>	7,124	7,085	—	39
법정 등 비품 구입 및 교체 자산취득비	3,901	—	<u>△798</u>	3,103	3,081	—	22
사무환경 효율화 자산취득비	1,711	7	<u>△1,301</u>	417	412	—	5
민원환경 개선 자산취득비	202	—	<u>△93</u>	109	105	—	4
재판시설 확충 자산취득비	1,894	—	<u>△220</u>	1,674	1,674	—	—
청사보안강화 자산취득비	2,002	—	<u>△206</u>	1,796	1,789	—	7

자료: 대법원

- 그런데 자산취득비 당초 예산액의 26.9%에 해당하는 26억 1,800만원이 이용된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물품 취득 수요와 기존 자산의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자산취득비가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산취득비 소요 추계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공요금과 인건비 부족분 등 기본경비 사업에 우선 집행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비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자산취득 소요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변경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자산취득비가 경상적·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교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³⁷⁾. 따라서 자산취득비는 구체적인 물품 취득 수요와 필요성, 기존 자산의 보유 및 활용 현황, 실제 사용 여건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편성되어야 함.
- 그럼에도 집행 단계에서 기존 비품 활용 등을 이유로 자산취득

37)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82.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교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규모를 축소하고 그 집행잔액을 타 사업의 부족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신규 취득 필요성, 기존 자산 활용 가능성 및 적정 편성 규모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임.

- 내역사업별 자산취득비 집행 부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동카트 도입 사업은 청사 협소로 인한 운행상의 제약 등 실제 사용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집행이 부진하였고, 그 밖의 자산 취득 소요도 대부분 집행 단계에서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축소되었음.

〈내역사업별 자산취득비 집행 부진 사업 현황〉

내역사업명	집행부진 세부사업	집행부진 사유
법정 등 비품 구입 및 교체	각급 법원 서고환경 개선	기존 자산 활용을 통한 소요 감축
	전동카트 도입	청사 협소도에 따른 전동카트 사용 불편 등
사무환경 효율화	각급 법원 대강당 등 환경 개선	기존 자산 활용 등을 통해 자산취득 규모를 축소
민원환경 개선	집진기 설치	집진기 설치 집행 규모를 축소
재판시설 확충	법정 및 재판지원시설 확충 및 구조 개선 등	준비절차실, 수용자 대기실 등 자산취득 규모를 조정
청사보안강화	출입통제시설(스피드게이트) 등 구입 및 유지보수	X-ray 소형화물투시기를 중심으로 보안설비를 확보

자료: 대법원

- 한편, 자산취득비의 이·전용 재원 활용은 2025회계연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임.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의 연도별 자산취득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자산취득비에서 이·전용 등이 발생하였고, 그 규모는 연평균 28억 2,800만원으로 각 연도 예산액의 평균 3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자산취득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3	7,237	1	△3,149	4,088	4,076	—	12
2024	7,887	—	△2,717	5,170	4,831	7	332
2025	9,735	7	△2,618	7,124	7,085	—	39

자료: 대법원

- 예산의 이·전용 등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당시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던 사정변경에 대응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동일 비목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년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따른 조정으로만 보기 어려우며,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자산취득 수요와 다른 경비의 소요액에 대한 추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실제 취득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자산취득비를 편성한 후, 집행 단계에서 기존 비품 활용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고 이를 공공요금·인건비 등 다른 부족한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별·비목별 예산의 취지가 훼손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대법원은 앞으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할 때 현 보유 자산의 수량과 상태, 기존 자산의 활용 가능성, 설치·사용 여건, 교체 및 추가 구입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자산취득비가 연례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등 다른 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 대법원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의 일반수용비 집행 개선 필요

- 대법원은 「기계설비법」³⁸⁾에 따라 대법원청사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대법원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비 2,5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음.

<2025년도 대법원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법원시설관리 등	64,162	384	△4,174	60,372	56,817	3,338	217
대법원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25	—	—	25	25	—	—

자료: 대법원

- 예산 관련 지침을 살펴 보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청사의 유지에 필요한 수수료와 수선비를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⁹⁾.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시설장비유지비

38)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9)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82.

(210-09)의 적용 범위를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기구·비품과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규정⁴⁰⁾하는 한편, 일반수용비(210-01)는 사무용품 구입비, 안내·홍보물 등의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소규모 물품 구입비 등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⁴¹⁾.

〈 일반수용비(210-01)와 시설장비유지비(210-09) 구분 〉

목번호	목	세목(내역)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8. 광고료 및 광고료 9.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10.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11.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12.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210-09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건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이외의 연료구입비 포함)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

40)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157.

41)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149.

		선박 등 운반구 유지비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	---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5. 1.)

- 그런데 대법원은 연례적으로 대법원청사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해 왔으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검사·점검 수수료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최근 3개년 대법원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집행비목	집행액	용역 주요내용
2023	2023년도 대법원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일반수용비 (210-01)	21	· 성능점검계획 수립 · 성능점검 실시 ·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2024	2024년도 대법원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일반수용비 (210-01)	21	
2025	2025년도 대법원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일반수용비 (210-01)	25	

자료: 대법원

- 그러나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은 단순한 검사나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하여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라기보다, 청사 기계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유지관리 성격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사·점검 수수료보다는 건물 및 건축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대법원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해당 경비의 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예산의 집행 비목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경우 비목별 예산 규모와 집행 실적이 왜곡되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대법원은 앞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청사와 그 부속설비의 점검·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때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비목별 편성·집행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장비유지비 등 적정 비목으로 편성·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사법업무 전산화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업무 전산화(1331-300)는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판사무시스템 및 사법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727억 4,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액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714억 4,800만원이며, 이 중 539억 5,700만원이 집행되고, 147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7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72,740	937	△2,229	71,448	53,957	14,750	2,741

자료: 대법원

(나) 영상재판 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고 이월 발생

- 내역사업인 영상재판/화상회의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은 영상재판 및 화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를 개선·확충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10억 6,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액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2억 4,300만원이며, 이 중 2억 2,400만원이 집행되고, 10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영상재판/화상회의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영상재판/화상회의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1,066	177	—	1,243	224	1,016	2

자료: 대법원

- 2021년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판절차의 범위가 확대⁴²⁾된 이후, 영상재판 진행 건수는 2022년 5,621건에서 2023년 2만 4,099건, 2024년 7만 1,935건, 2025년 14만 7,24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연도별 영상재판/화상회의 구축 사업 예산 및 영상재판 진행 건수〉

(단위: 백만원, 건수)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1,760	1,604	749	558	1,066
영상재판 진행 건수	—	5,621	24,099	71,935	147,243

자료: 대법원

- 이에 대법원은 증가하는 영상재판 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장비와

42) 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사사건(가사·행정·특허·도산 사건 포함)은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조정기일 및 심문기일 등에서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사건은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이유 고지절차에 영상재판이 도입되었음.

소프트웨어를 확충하기 위해 동 사업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5억 5,800만원보다 5억 800만원 증액된 10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그러나 2025회계연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2억 4,300만원 중 집행액은 2억 2,400만원에 그쳤고, 이 중 1억 7,700만원은 전년도 이월예산의 집행액으로, 2025년도에 증액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액은 4,700만원 수준에 불과함. 또한 10억 1,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18.0%에 그쳤음.

〈2025년 영상재판/화상회의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세부 집행 내역〉

내역
-장비 구매 : 177백만원(전년도 이월액 집행) -화상증언실 음성변조기 구매 : 10백만원 -네트워크스위치(지빅) 구매 : 19백만원 -영상조정실 영상회의시스템 구매 : 18백만원

자료: 대법원

- 동 사업의 2025년도 계약 체결 건은 총 6건으로, 8월과 9월에 각각 1건, 11월에 4건이 체결되었음. 이와 같이 계약 체결이 모두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장비·소프트웨어의 납품·설치 및 검수에 필요한 기간을 연내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당해연도 예산의 대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⁴³⁾.

43) 대법원은 2025년 상반기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개통 및 안정화 지원으로 동 사업의 발주

〈2025년 영상재판/화상회의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명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계약업체	계약 금액	다음연도 이월액
1	25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확충 사업(가상화솔루션)	25.08.07	25.08.~25.03.	오케스트라 주식회사	180	180
2	25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확충 사업(통합구매)	25.09.23	25.09.~26.05.	주식회사 인사이드정보	584	584
3	25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확충 사업(영상재판관리클라우드)	25.11.17	25.11.~26.05.	주식회사 알앤씨미디어	252	252
4	25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확충 2차 사업(음성변조기)	25.11.03	25.11.~25.12.	주식회사 아이티에스컨 버전스	10	—
5	25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확충 2차 사업(네트워크스위치 부품)	25.11.05	25.11.~26.01.	(주)아이티 로그인	19	—
6	25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확충 2차 사업(영상회의시스템)	25.11.05	25.11.~25.12.	뉴브로드테크 놀러지(주)	18	—

자료: 대법원

- 영상재판 시스템은 재판관계인의 법원 출석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영상재판 수요 증가에 맞추어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적기에 확충·교체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대법원은 영상재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 예산의 대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한 사업을 2025회계연도 중

준비가 지연되었고, 가상화솔루션 및 영상재판 관리클라우드 구매에 필요한 BMT 관련 절차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의견 회신이 지연되었으며, 영상재판 관리클라우드 조달 공고 기간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차질 없이 추진하지 못하였음.

- 대법원은 앞으로 영상재판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추진 시 관련 행정절차와 계약 체결, 장비·소프트웨어의 납품·설치 및 검수에 필요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일정을 수립하고, 전년보다 확대 편성된 예산이 대규모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신규 보안장비 도입 사업 추진 지연 및 전액 불용 문제

- 대법원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북한 해킹조직의 법원 전산망 침입⁴⁴⁾으로 자료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2월 7일 대법원에 과징금 2억 7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 공표, 관계자 징계권고 및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하였음.
- 2025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법원 전산망의 정보보안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 보안장비·전산장비 교체, 신규 보안장비·전산장비 확충, 보안관제 운영 등 정보보안 관련 사업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44)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는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하여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21. 1. 7. 이전부터 23. 2. 9.까지의 기간 동안 법원 전산망에 침입하여 국내외 서버로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하였고, 유출 자료 중 0.5%인 4.7GB의 자료(5,171개)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두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2025년 사법부 보안역량 강화 관련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업무전산화	11,626	△695	10,931	9,570	143	1,218
노후 보안장비/전산장비 교체	6,346	△695	5,651	5,597	—	54
신규 보안장비/전산장비 확충	2,879	—	2,879	1,771	—	1,108
보안관제 운영	1,493	—	1,493	1,453	—	40
망분리 운영	419	—	419	408	—	11
정보보안 컨설팅	257	—	257	110	143	4
사법부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 ISP	232	—	232	231	—	1

자료: 대법원

- 그러나 2025회계연도의 정보보안 관련 사업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보보안 강화 조치의 시급성이 큰 상황임에도 신규 보안장비 도입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동 사업의 예산 10억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사법업무 신규 보안장비 도입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목	내 역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자산취득비 (430-01)	- 사업내역 : 인터넷망에서 접속이 가능한 대국민용 홈페이지의 보안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장비의 확충을 위한 물품 구매 - 구매대상 물품내역 : L7-Anti DDoS 장비(방화벽장치) 등	1,000	—	1,000

자료: 대법원

- 신규 보안장비 도입 사업은 인터넷망에서 접속할 수 있는 대국민용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L7 Anti-DDoS 장비 등 보안장비를 도입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자산취득비

10억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대법원은 2025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1월 5일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였으며, 12월에 입찰공고 및 낙찰 절차를 진행하였음. 이후 낙찰업체가 제안한 장비가 요구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도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동 예산 10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2025년 사법업무 신규 보안장비 도입 사업 추진 경과〉

일 자	내 용
25.10.17.	사업계획 수립
25.11.05.	조달청 사업자 선정 의뢰
25.11.18. ~ 25.11.22.	조달청 구매 업무 협의
25.12.01. ~ 25.12.12.	공고 및 낙찰
25.12.31.	사업 취소 및 예산 불용

자료: 대법원

- 보안장비 도입 사업은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 장비의 성능·보안성 및 운영 안정성뿐만 아니라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의 시장 공급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조사와 사전규격 검토 및 조달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대법원이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11월에 이르러서야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한 것은 연내 집행에 필요한 사업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낙찰업체가 제안한 장비의

규격 미달로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은 사업 착수 전에 장비 규격의 적정성과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 대법원은 앞으로 정보보안 강화 조치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규 보안장비 도입 사업의 시장조사와 장비 규격 검토 및 조달 협의 등을 조기에 추진하고,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 지연으로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일정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기준 명확화 필요

- 2025회계연도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전산센터 당직 근무자 탈의실 및 샤워실 환경개선 공사’에 4,963만원을 집행하였음. 또한 재판연구원 관련 시험 또는 평가 절차를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판연구원 CBT 솔루션 도입 사업’에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 사법업무 전산화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비목	집행액
전산센터 당직 근무자 탈의실 및 샤워실 환경개선 공사	사법업무 전산화 (1331-300)	공사비 (420-03)	50
재판연구원 CBT 솔루션 도입 사업	사법업무 전산화 (1331-300)	자산취득비 (430-01)	50
	본부기본경비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	22

자료: 대법원

- 그런데 전산센터 당직 근무자 탈의실 및 샤워실 환경개선 공사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기보다 전산센터 내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공사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동 공사와 유사한 성격의 전산센터 환경 개선 공사도 법원시설관리 등 관련 세부사업에서 집행해 왔음⁴⁵⁾.

재판연구원 CBT 솔루션 도입 사업의 경우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사법업무 전산화 세부사업(1331-300)에서 집행한 반면, 일반수용비 2,200만원은 본부기본경비 세부사업(7011-250)에서 집행하여 하나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분산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세부사업별 정책 목적, 사업 내용 및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⁴⁵⁾ ‘2025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는 법원시설관리 등 세부사업에서 집행한 바 있음.

편성되고, 국회는 이를 전제로 예산안을 심의·확정함. 따라서 집행 단계에서도 당초 편성된 세부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집행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세부사업 간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 취지가 약화되고, 사업별 집행 실적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산센터 당직 근무자 탈의실 및 샤워실 환경개선 공사는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이 아니라 법원시설관리 등 세부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연구원 CBT 솔루션 도입 사업은 지출 성격 및 사업 간 연계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하나의 적정한 세부사업에서 일관되게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었음.
- 대법원은 앞으로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을 집행할 때 개별 지출의 목적과 성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해당 세부사업의 집행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동일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여러 세부사업에 분산되거나 시설관리 등 성격이 다른 경비가 혼재되지 않도록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마)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관련 절차 이행 철저 필요

-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사법부 데이터센터에서 운영 중인 서버, 저장장치 등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87억 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액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0억 5,700만원이며, 이 중 78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8,708	—	△651	8,057	7,844	—	213

자료: 대법원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여야 함.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지침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하도록 하고, 국가 안보 및 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 하도록 함으로써 낙찰차액의 예외적 사용을 절차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정보화 관련 예산 낙찰 차액 사용 지침 〉

11-2. 기본지침

가. 이·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 정보화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 다만,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 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 안보 및 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 국무회의 등 정책 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당해 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거나,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5. 1.)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도록 한 것은 해당 예산이 당초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다른 사업에 임의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는 이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사용 용도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임.
-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공고시 발주액은 87억 800만원, 계약액은 84억 5,300만원으로 2억 5,5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신규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지연 등에 따라 6억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억 5,100만원을 다른 사업의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2025년도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발주액 (A)	계약액 (B)	집행액 (C)	낙찰 차액 (A-B)	집행 차액 (B-C)	이용액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8,708	8,708	8,453	7,844	255	609	△651

자료: 대법원

- 그런데 대법원이 다른 사업의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한 6억 5,100만원 중 4,200만원은 낙찰차액이었음. 이 중 3,200만원은 ‘2025년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사업’에 사용하고 그 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였으나, 나머지 1,000만원은 다른 세부사업의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⁴⁶⁾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을 거쳐 활용하면서도, 집행지침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낙찰차액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다른 사업의 인건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이와 별도로 집행지침에서 정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낙찰차액의 예외적 사용에 관한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46)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임.

- 대법원은 앞으로 정보화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사용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 이용 등의 절차와 병행하여,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통보 또는 사전협의 절차도 누락 없이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9)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1331-303)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한 93개 전자소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2023년 시작한 다년도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230억원, 전년도 이월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88억 4,800만원이며, 이 중 241억 5,100만원이 집행되고, 19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7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23,000	5,848	-	28,848	24,151	1,916	2,781

자료: 대법원

(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이월 후 불용 문제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자소송 이용 확대, 소송절차의 전자화 고도화 및 안정적인 사법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정보화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50조⁴⁷⁾에 따른

47)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하고 이를 총사업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⁴⁸⁾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⁴⁹⁾ 등에 따라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대법원은 2024회계연도 예산에 동 사업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소요액 20억 2,600만원을 편성한 바 있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따라 조달청에 세 차례에 걸쳐 사전검토를 요청하였음.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 49)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시공 단계)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다만, 시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k) 또는 품목조정률에 100분의 3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문 중 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공사 미계약분, 물가상승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아니한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다만, 다음 연도 완공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 6월말 이전에 해당 물가상승 예상분의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을 시행하고, 다음 연도에 조달청 검토를 거친 금액으로 공사비를 정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및 검토 경과〉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상대자 신청일	대법원 요청일	조정 요청액	조달청 회신일	주요 검토 결과
1차	2024. 7. 29.	2024. 8. 5.	1,094	2024. 8. 28.	일부 직무의 평균임금 상승은 직무분야 통합에 따른 것으로 물가변동으로 인정하기 곤란
2차	2024. 10. 2.	2024. 10. 4.	890	2024. 11. 25.	일부 직무에 종전 신청과 다른 등락률을 적용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곤란
3차	2024. 12. 2.	2024. 12. 2.	384	2024. 12. 16.	인상된 기능점수 단가는 2025년 이후 추진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에 적용 불가
4차	2025. 3. 20.	2025. 3. 21.	384	2025. 4. 1.	(반송) 증빙서류 누락 등을 사유로 요청서 반송

주: 계약상대자는 (주)LG CNS임.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 조달청은 2024년 세 차례의 사전검토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상승분의 물가변동 인정 여부, 직무별 등락률의 산정근거 및 인상된 기능점수 단가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계약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나, 대법원은 계약금액 조정 예산 20억 2,600만원 전액을 2025년도로 사고이월하였음.
- 이후 대법원은 2025년 3월 조정요청액 3억 8,388만원에 대하여 조달 청에 다시 사전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조달청은 증빙서류 누락 등을 이유로 같은 해 4월 해당 요청서를 반송하였음.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년도 이월액 20억 2,600만원은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되었음.

- 대법원은 동 예산의 이월 근거로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⁵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 따른 사고이월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임.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조정률의 산정근거와 적용 단가 등이 인정되어 실제 계약금액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2024회계연도 말까지 조달청의 세 차례에 걸친 사전검토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금액이 변경되지 않았고, 해당 조정액에 관한 지급의무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조정액에 관한 별도의 지출원인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해당 조정

50)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액은 기존 구축계약의 집행에 부수되는 별도의 경비가 아니라 계약 금액 변경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계약대금 자체이므로, 기존 지출원인행위의 부대경비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더욱이 계약상대자의 조정요청액은 조달청의 검토 과정에서 1차 10억 9,416만원, 2차 8억 9,038만원, 3차 3억 8,388만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24년 말 최종 조정요청액은 당초 편성액 20억 2,600만원의 18.9%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조달청의 사전검토에서 조정 근거를 인정받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대법원이 당초 편성액 전액을 사고이월한 것은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와 실제 계약금액 조정 예상액 및 다음 연도의 집행 가능성을 이월 규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실제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예산을 불분명한 사유로 필요 이상 이월하였다가 불용하는 것은 해당 재원이 다른 긴요한 사업에 적기에 활용될 기회를 제한하고, 예산의 연도별 규모와 집행실적을 왜곡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예산 편성의 취지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대법원은 앞으로 예산을 사고이월할 때 법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와 실제 집행소요 및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이월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함으로써 집행 가능성이 불분명한 예산을
무리하게 이월하였다가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0) 본부 기본경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본부 기본경비(7011-250) 사업은 사법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851억 6,700만원이며, 이 중 846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고, 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본부 기본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부 기본경비	84,964	92	110	85,167	84,639	23	505

(나) 「국가재정법」에 반하여 국제최고행정법원협회(IASAJ) 분담금 부족분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 국제최고행정법원협회(IASAJ;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upreme Administrative Jurisdictions)는 전 세계 각국의 최고행정법원 및 최고 재판기관 간의 상호 협력과 법적 교류를 위해 1983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국제기구임.

대법원은 2007년에 태국방콕에서 열린 제9차 IASAJ 총회에 참가하여 회원가입의사를 표시하여 2009년에 회원자격이 부여되었으며, UN

연간 총예산의 2.26%를 분담하는 국가로서 2010년부터 최상등급인 2,300유로를 매년 납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세부사업에서 매년 국제부담금(340-02) 세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46조⁵¹⁾는 예산의 전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중앙관서의 장이 서로 다른 목에 속한 예산으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용절차를 거쳐야 함.

또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제부담금(340-02)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세목이고,

일반수용비(210-01)는 인쇄비, 간행물구입비, 기념품 구매, 참석비 등을 위한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대법원은 유로화 환율 인상으로 2,300유로를 전액 납부할 수 없게 되자 부족분을 동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수용비

51)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동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10-01)로 전용 없이 납부하였는바, 「국가재정법」에 반하여 전용 절차 없이 동일한 내역을 집행한 것은 부적절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로화 환율 인상으로 부득이 초과분을 일반 수용비로 납부하게 되었는바 재정당국과 예산안 협의 시 환율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 대법원은 앞으로 IASAJ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국제부담금 세목으로 실 소요에 맞게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고,

예산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전국 수석부장 간담회 숙소를 임차료로 집행한 문제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 ‘임차료(210-07목)에서는 임차료를 청사임차, 차량임차, 교실·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재외공관 임차 등의 목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각종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열린 전국 수석부장 간담회를 4성급 호텔에서 진행한 것에 더하여, 참석한 인원
에 대한 숙박비를 국내여비 세목이 아닌 임차료 세목으로 집행하였
는바, 이는 편성지침에 반하는 예산집행임.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1박 2일간의 수석부장 간담회를 위해 임차료
1,973만원(차량 297만원 + 행사장·숙소 1,676만원) 및 관서업무
추진비 801만원 등 총 2,889만원을 집행하였음⁵²⁾).

〈2025 전국 수석부장 간담회(1박 2일) 집행내역〉

(단위: 원)

세목명	가맹점	건명	지급액
임차료	○○○ 호텔	전국 수석부장 간담회 행사장·숙소 임차료	16,758,000
	△△	전국 수석부장 간담회 버스 임차료	2,970,000
관서업무추진비	○○○ 호텔	전국 수석부장 간담회 관련 비용	8,007,750
일반수용비	□□□	전국 수석부장 간담회 관련 물품구매 등	276,000
	☆☆☆		396,000
	권00		485,500
합계			28,893,250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의장·교육장·부대시설 등이 결합된 형태의
시설을 일괄 임차하는 과정에서 숙박비도 포함되었으며, 임차료
세목으로 숙박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지적한 취지를

52) 관계 법령에 따라 참석 인원에 대한 여비도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임.

고려할 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향후에는 예산과목 적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보다 명확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임.

- 국회는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워크숍 숙박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임차료를 연례적으로 집행하는 대법원의 예산 집행을 지적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워크숍 숙박료는 임차료가 아니라 국내여비의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목 목적에 부합하게 워크숍 숙박료를 집행할 것을 시정조치요구(주의)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2024년 7월 이후부터는 숙박료를 임차료에서 지급한 사례는 없으며, 2025회계연도 또한 숙박료를 임차료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이라는 공식 입장을 조치결과로서 국회에 보고함.

- 그럼에도 대법원은 결산 조치결과에 반하여 2025회계연도에 또다시 숙박료를 국내여비가 아닌 임차료로 집행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임차료를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교육원 기본경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교육원 기본경비(7011-291) 사업은 법원공무원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17억 9,800만원이며, 이 중 17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교육원 기본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교육원 기본경비	1,655	—	143	1,798	1,797	—	1

(나) 세목 구분 없이 문화탐방 사업을 전액 일반수용비로 집행 및 직접수행 사업을 민간업체에 용역계약 없이 대행 부적정

- 동 세부사업의 2025년도 일반수용비(210-01) 예산현액은 4억 1,3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5년도 교육원 기본경비 사업 일반수용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목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교육원 기본경비	1,655	—	143	1,798	1,797	—	1
일반수용비	427	—	△15	413	413	—	—

- 법원공무원교육원은 2025년 3차례의 역사문화탐방 및 한 차례의 한일등기관 상호연수 문화탐방을 위해 일반수용비(210-01) 세목으로 3,822만원을 집행함.

〈2025회계연도 교육원 기본경비 사업 문화탐방 집행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건명	지급액
7.4.	제26회 한일등기관 상호연수 문화탐방	2,735,200
9.3.	역사문화탐방[제14기 신규임용자과정(가사조사관)]	1,530,000
9.26.	역사문화탐방(제53기 9급신규임용후보자과정)	29,378,600
10.14.	역사문화탐방(제43기 5급신규임용후보자과정)	4,578,000
계		38,221,800

자료 : 법원행정처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일반수용비(210-01목)’에 따르면,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간행물구입비, 기념품구매, 참석비 등을 위한 세목으로, 자산취득비, 공사비 등 다른

세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

그러나 법원공무원교육원이 2025회계연도에 수행한 네 차례의 문화 탐방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버스 임차료 및 식비 등 임차료(210-07) 세목이나 관서업무추진비(240-02) 등의 세목으로 편성되어 집행해야 하는 내역을 전액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한 바, 이는 예산의 투명성을 제약하는 집행임.

- 일례로, ‘제26회 한일등기관 등 상호연수 문화탐방 계획(안)’을 살펴 보면, 아침 식사 16만원, 점심 정식 48만원, 저녁 식사 등 식비 및 버스 임차료 등의 비용 모두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함.

〈제26회 한일등기관 등 상호연수 문화탐방 계획(안) 일정표〉

시간	일정	비고(금액 : 원)
08:40- 08:50	차량 탑승 및 인원점검	· 간식 준비 - 10,000 *16 =160,000
08:50- 10:00	경복궁 이동 (하차 : 경복궁주차장)	· 약 1시간 소요
10:00- 11:20	경복궁 관람	· 만남 : 경복궁 안내실 앞 흥례문 안쪽 · 일본어 해설(10:00 해설 시작) 해설 시작 · 약 1시간 30분 소요 · 3,000 *16 =48,000
11:20- 11:40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동	· 도보 10분
11:40- 13:00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 7,000 *16 =112,000
13:00- 13:05	점심장소 이동	· 이동시간 5분 소요

시간	일정	비고(금액 : 원)
13:05- 14:15	점심식사	· 30,000 *16 =480,000
14:15- 14:20	식당에서 북촌한옥마을로 이동	· 도보 5분
14:20- 15:40	북촌한옥마을 관광 및 카페 탐방	· 7,000 *16 =112,000
15:40- 16:00	인사동으로 이동	· 약 15분 소요
16:00- 17:30	인사동 관광 및 자유 시간	· 만남 : 조계사
17:30- 19:00	교육원으로 복귀	· 저녁식사(금액 미기재)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역사문화탐방(제53기 9급신규임용후보자과정) 계획안을 살펴봐도 식사 1,000만원, 대형버스 임차 1,280만원 등 예산의 대부분이 업무 추진비 또는 임차료 세목 등 별도의 세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할 내역인 것으로 보임.

<역사문화탐방(제53기 9급신규임용후보자과정) 계획안 중 소요예산(안)>

항목		단가(원)	수량	금액(원)	비고
식대	식사(오찬)	20,000	500명	10,000,000	교육생, 지도교수, 인솔자, 운전원 등
행사 관련 기타 비용	대형버스 임차	800,000	16대	12,800,000	1일 4대
	입장료 등(문화탐방)	3,600	500명	1,800,000	강화평화전망대, 광성보
	일회용 우의	700	500개	350,000	우천 시 대비
	주차비	8,000	16대	128,000	전등사
소계		25,078,000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동 문화탐방 사업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에 따라 각 세목에 맞은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함에도,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연례적으로 문화탐방 사업 전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대행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탁 수행한 것으로 드러남.

이로 인해 2025회계연도의 경우 상기한 3,822만원의 집행액 중 약 10%인 3,785,800원을 대행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을 ‘직접수행’이 아닌 ‘위탁수행’ 방식으로 수행한 것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임.

- 이에 대해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당초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당 세목으로 집행하였으나, 향후에는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과 집행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함.
- 대법원은 앞으로 사업의 성격 및 예산관련 지침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수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민간 업체에 대행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12) 본부 운영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본부 운영지원(7031-303) 사업은 대법원 및 각급법원, 신·증축청사의 공공요금, 시설관리 용역비 등 청사관리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1,130억 6,100만원이며, 이 중 1,126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본부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부 운영지원	116,548	1	△3,487	113,061	112,687	8	367

(나) 연례적인 이·전용 등 예산 변경 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동 세부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3년 연속 약 30억원 내외의 금액을 타 세부사업으로 이·전용 등 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3	106,116	106,116	22	△2,643	103,496	102,229	96.3	98.8	2	1,264
2024	109,178	109,178	2	△2,540	106,640	105,343	96.5	98.8	1	1,297
2025	116,548	116,548	1	△3,487	113,061	112,687	96.7	99.7	8	367
2026	123,321	123,321	8	—	123,329	53,713	45.6	45.6	—	—

주 : 2026년도 내역은 6월 말 기준

- 특히 2025회계연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0억원을 추가로 타 사업으로 이·전용 등 하였는바, 동 세부사업의 예산을 매년 증액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타 사업에 이·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 세부사업에서 타 사업으로 이·전용 등을 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이 32억 4,200만원으로 전출 합계의 약 60%를 차지하고,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 등이 13억 9,500만원(26%)으로 뒤를 이었으며, 격려금 추가지급 등을 위한 기타 운영비로의 전용이 4억 3,100만원(8%)으로 그 뒤를 차지하는 등 총 53억 5,100만원이 여유재원으로 타 세부사업으로 전출됨.

다만, 법원행정처 본부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연말에 대규모로 이·전용을 받음(18억 6,300만원)에 따라 최종적으로 동 사업에서 34억 8,800만원이 타 사업으로 순 전출됨.

〈타 사업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8.14.)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210	교육원운영지원 (7031-309)	210-02	청사 관리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내역변경 (2025.10.13.)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12	1	교육원운영지원 (7031-309)	210-12	청사 관리 등의 복리후생비 부족
내역변경 (2025.10.14.)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57	연수원운영지원 (7031-308)	210-02	청사운영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내역변경 (2025.11.27.)	본부운영지원 (7031-303)	110-03	33	교육원운영지원 (7031-309)	110-03	청사 관리 등의 상용임금 부족
내역변경 (2025.11.28.)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130	연수원운영지원 (7031-308)	210-02	청사운영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내역변경 (2025.12.28.)	본부운영지원 (7031-303)	110-03	66	연수원운영지원 (7031-308)	110-03	청사시설 근로자 상용임금 등의 상용임금 부족
내역변경 (2025.12.28.)	본부운영지원 (7031-303)	110-03	82	교육원운영지원 (7031-309)	110-03	청사 관리 등의 상용임금 부족
내역변경 (2025.12.28.)	본부운영지원 (7031-303)	320-09	81	교육원운영지원 (7031-309)	320-09	청사 관리 등의 고용부담금 부족
승인전용 (2025.12.12.)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529	일반 인건비 (7001-151)	110-01	일반 인건비의 보수 부족
승인전용 (2025.12.12.)	본부운영지원 (7031-303)	320-09	68	일반 인건비 (7001-151)	110-01	일반 인건비의 보수 부족
승인전용 (2025.12.12.)	본부운영지원 (7031-303)	430-01	545	일반 인건비 (7001-151)	110-01	일반 인건비의 보수 부족
자체이용 (2025.11.28.)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8	275	재판절차비용지원 (1143-403)	210-02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2025.11.28.)	본부운영지원 (7031-303)	420-03	551	재판절차비용지원 (1143-403)	210-02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2025.11.28.)	본부운영지원 (7031-303)	430-01	164	재판절차비용지원 (1143-403)	210-02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전용 (2025.11.20.)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1	31	본부 기본경비 (7011-250)	210-16	본부 기본경비의 기타운영비 부족
자체전용 (2025.11.20.)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4	200	본부 기본경비 (7011-250)	210-16	본부 기본경비의 기타운영비 부족
자체전용 (2025.11.20.)	본부운영지원 (7031-303)	220-01	220	본부 기본경비 (7011-250)	210-16	본부 기본경비의 기타운영비 부족
자체전용 (2025.12.18.)	본부운영지원 (7031-303)	110-03	1,400	일반 인건비 (7001-151)	110-01	일반 인건비의 보수 부족
자체전용 (2025.12.18.)	본부운영지원 (7031-303)	110-04	20	일반 인건비 (7001-151)	110-01	일반 인건비의 보수 부족
자체전용 (2025.12.29.)	본부운영지원 (7031-303)	220-01	8	본부 기본경비 (7011-250)	220-01	본부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부족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30)	본부운영지원 (7031-303)	110-03	680	일반 인건비 (7001-151)	110-01	일반 인건비의 보수 부족
전출합(A)			5,351			
내역변경 (2025.12.28)	연수원운영지원 (7031-308)	210-02	14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연료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내역변경 (2025.12.28)	교육원운영지원 (7031-309)	210-02	9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연료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2025.11.28)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210-07	401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연료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2025.11.28)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210-08	11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연료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2025.11.28)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420-02	5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연료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2025.11.28)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420-03	405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연료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2025.11.28)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420-04	395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연료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2025.11.28)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430-01	484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연료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2025.12.29)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210-07	120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연료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2025.12.29)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420-03	7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연료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2025.12.29)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420-04	3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연료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2025.12.29)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420-05	2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연료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전용 (2025.12.17)	교육원 기본경비 (7011-291)	210-08	7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8	공공요금 및 연료비의 유류비 부족
전입합(B)			1,863			
순전출 (A-B)			3,488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타 사업으로
전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대비 67억

7,300만원(5.8%) 증액된 1,233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6월 말 기준 집행률이 45.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연말 기준 타 사업으로 이·전용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동 세부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상기한 집행실적을 감안한 예산편성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제628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 일반수용비로 집행 부적정

- 법원행정처는 2025년 5월 12일 (주)○○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제628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 전시 등 운영’ 행사를 위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1,160만원을 전액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집행함.

제628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개최한 행사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⁵³⁾를 살펴보면 2억 원의 예산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대행 용역을 수행하는 행사임.

- 법원행정처는 당초 동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으나, 2025년 4월 23일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한 후 5월 12일 (주)○○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부스를 설치·운영하였음.

동 행사는 당초 2025년도 예산 각목명세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53) 2025. 2. 3. 입찰공고번호 R25BK00610441 - 000

행사로,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일반수용비(210-01) 세목으로는 공관 관리, 각급법원 비품구입 및 이전비,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을, 일반 용역비(210-14) 세목으로는 사법부 설립 기념일 등 행사용역비 (PCO 비용), 사법부 공보 활동 지원(법원전시관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됨.

〈2025년도 본부 운영지원 사업의 일반수용비 및 일반용역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내역	산출근거	원화
[210]운영비		37,794,960
[210-01]일반수용비		4,767,777
1.공관관리		21,777
가.각종 소모품 등 구입비	21,777,000원=	21,777
2.각급법원 비품구입 및 이전비 등		4,175,000
가.신증축법원 이전비	134,000,000원=	134,000
나.각급법원 소모품 구입비	3,738,000,000원=	3,738,000
다.법원기록관리센터 등 기록물 이관	45,000,000원=	45,000
라.기록물 유지보수를 위한 소독 탈산처리 등	164,000,000원=	164,000
마.(영구)보존상자 구입 등	94,000,000원=	94,000
3.사회복무요원 운영(공상치료비)	13,000,000원=	13,000
4.사법공보홍보활동 지원		497,000
가.사법부 통합 홍보		492,000
1)포털사이트(PC 등) 홍보 등	285,000,000원=	285,000
2)일간신문, 온라인 등 광고 비용	207,000,000원=	207,000
나.법원전시관 운영		5,000
1)전시 관리 및 운영	5,000,000원=	5,000
5.윤리감사관실 운영		61,000
가.용지대 및 전산소모품 등	28,000,000원=	28,000
나.전국법원 감사담당자 연수 및 실무연구회 등	18,000,000원=	18,000
다.감사연보 및 감사담당자연수 자료집 등 발간	15,000,000원=	15,000
[210-14]일반용역비		160,000
1.사법부 설립 기념일 등 지원		50,000
가.행사장 조성 등 행사용역비(PCO 비용)	50,000,000원=	50,000
2.사법부 공보 활동 지원		110,000
가.법원전시관 운영		110,000
1)기획전시	80,000,000원=	80,000
2)상설전시 부분 개편	30,000,000원=	30,000

자료 : 2025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⁵⁴⁾을 근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동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임.

구체적으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일반수용비(210-01)는 인쇄비, 간행물구입비, 기념품 구매, 참석비 등을 위한 세목으로, 자산취득비, 공사비 등 다른 세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용역비(210-14)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기 위한 세목임.

-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예산 세목의 적정성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표준계약서의 형식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지출의 목적, 과업의 주된 내용, 산출내역상 비용 구성 등 지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일부 진행요원, 기획·디자인, 설치·운반 등 지원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독립된 전문용역 성과물을 도출하거나 행사 전체를 외부에 포괄적으로 대행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홍보물·전시물 제작 및 배포, 현장 설치 등 주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보조적 성격의 경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제628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의 과업지시서⁵⁵⁾와 산출내역서를 살펴보면 동 행사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대행업체를 활용하고 행사장을 조성시키는 등 전형적인 행사용역비(PCO) 비용으로,

2025년 예산 각목명세서상 행사용역비(PCO) 비용은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행정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55) <과업 개요>(과업지시서 中)

- 대법원의 ‘세종대왕 나신 날’ 전시 및 부스 운영에 대한 기획, 재판관으로서 세종대왕의 면모 및 사법부 홍보
- 전시를 위한 패널(3개) 및 리플릿(500부) 제작·배포,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 배포 등 홍보 진행 및 부스 운영
- 행사 당일 설치, 철거, 운반, 재설치 등 운영 지원도 과업 범위에 포함

〈기념행사 전시 산출내역서〉

(단위: 일, 개, 원)

구분	항목	일수	수량	단가	금액
기획 및 디자인	기획료	1	1	2,000,000	2,000,000
	디자인	1	1	1,000,000	1,000,000
	소계				3,000,000
인력	영어진행요원	1	1	200,000	200,000
	영블로거	1	3	100,000	300,000
	소계				500,000
운영물자	50인치TV	1	1	400,000	400,000
	옷걸이 등	1	1	100,000	100,000
	리플렛	1	1	2,500,000	2,500,000
	X배너	1	2	100,000	200,000
	안내판	1	3	200,000	600,000
	폼보드 앞면	1	3	120,000	360,000
	폼보드 뒷면	1	3	60,000	180,000
	굿즈_스티커	2	200	1,000	480,000
	굿즈_배지	1	300	2,727	818,182
	진행비	1	1	260,000	260,000
	소계				5,898,182
합계(A)	각 소계의 합				9,398,182
일반관리비(B)	2%				187,964
대행비(C = A+B)	10%				958,615
총계(A+B+C)					10,544,000
부가세(D)	10%				1,054,400
총계(A+B+C+D)					11,598,400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대법원은 앞으로 행사용역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때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 세목으로 편성·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3) 연수원 운영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연수원 운영지원(7031-308) 사업은 사법연수원 청사 유지·관리 및 연수원 운영지원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64억 1,800만원이며, 이 중 63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연수원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연수원 운영지원	6,179	—	239	6,418	6,348	—	70

(나) 국제사법연수기구(IOJT) 회비 공공요금및제세 집행 부적정

- 국제사법연수기구(IOJ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Judicial Training)는 법치주의 증진, 법관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공통 과제 논의,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 및 발전, 국제적인 정보교류 촉진을 완수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임.

사법연수원은 2023년 10월 IOJT와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한 후, 2024년 11월 한국에서 해외 52개국 법관 및 사법연수관계자 230여 명과 국내 법관 및 법조인 260여 명이

참석한 제11회 IOJT 총회를 개최함.

사법연수원은 2023년 체결된 합의각서에 따라 매년 1,000달러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그런데, 사법연수원은 2025년 국제기구인 IOJT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국제부담금(340-02)이 아닌 공공요금및제세(210-02) 세목에서 1,532,29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공요금및제세(210-02)는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자동차세 및 협회비 등 제세를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세목이고,

국제부담금(340-02)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세목임.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은 공공요금및제세의 ‘협회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해당 세목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국제부담금의 성격 또한 띄고 있으므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제부담금 세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IOJT는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 북중미, 남미 등 여러

국가의 사법연수기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단순한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성격의 공공요금및제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동 세부사업의 2025년도 예산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공공요금 및제세 세목으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만 편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목명세서에 부합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대법원은 앞으로 IOJT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국제부담금 세목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이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 교육원 운영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교육원 운영지원(7031-309) 사업은 법원공무원교육원 청사 유지·관리 및 교육원 운영지원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38억 400만원이며, 이 중 38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교육원 운영지원	3,441	—	363	3,804	3,802	—	3

(나) 관리용역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유지관리용역 집행 부적정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210-14)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을 위하여,

관리용역비(210-15)는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을 위하여 편성된 세목임.

○ 동 세부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이러닝 시스템 및 교육콘텐츠 운영’ 6,500만원 및 ‘법원교육시스템 운영’ 9,900만원 등 1억 6,400만원을 일반용역비 세목으로 편성함.

〈2025년도 각목명세서상 일반용역비 편성내역〉

내역	산출근거	금액(원)
[210-14]일반용역비		164,000
1.이러닝 시스템 및 교육콘텐츠 운영	2,708,333원*12월+2,708,333원*12월=	65,000
2.법원교육시스템 운영		99,000
가.통합교육관리시스템 운영	99,000,000원=	99,000

○ 그런데, 동 세부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법원 공무원교육원은 ‘2025년 이러닝시스템 유지관리용역’ 5,430만원 및 ‘2025년 법원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9,900만원 등 총 1억 5,330만원을 일반용역비 세목으로 집행하였음.

해당 집행내역은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을 위한 관리용역 성격으로 보이므로 관리용역비 세목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법원공무원교육원)는 편성 단계에서 세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관리용역비 세목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함.
- 대법원(법원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 용역비 세목의 목적에 부합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등기특별회계

《총 괄》

- 등기특별회계는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993년 「등기특별회계법」 제정⁵⁶⁾에 따라 설치된 대법원 소관의 기타특별회계⁵⁷⁾에 해당함.
- 등기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등기소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등기업무 관련 수입금(면허 및 수수료)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⁵⁸⁾ 이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등기소 신증축(등기소 신축, 기존 등기소 리모델링, 장애인 등 편의시설 보완 등), 정보화(등기업무 전산화,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및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등임.⁵⁹⁾

56) 등기특별회계법은 1993년 6월 11일 제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부칙상 적용기간은 2027회계연도까지이다.

57) 국가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된다. 기업특별회계는 정부가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의 수입·비용과 경영성과를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를 의미하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로서 개별 법률에 따라 특정 세입을 특정 목적의 지출에 사용하는 회계를 의미한다.

58)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59) 제3조(세입과 세출)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 3의2. 다른 회계·기금에의 전입·예탁·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최근 5년간 등기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2021년도 3,534억 4,600만원에서 2025년도 2,330억 7,400만원⁶⁰⁾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세출은 2021년도 2,797억 6,100만원에서 2025년도 2,384억 5,400만원으로 그보다 적게 감소하고 있어 잉여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도에 결손으로 전환됨.

〈최근 5년간 등기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세입(A)	세출(B)	재정수지(A-B)
2021	353,446	279,761	73,685
2022	317,306	249,256	68,050
2023	301,102	264,203	36,899
2024	265,046	250,033	15,013
2025	233,074	238,454	△5,380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잉여액 감소와 결손 전환은 주로 세입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된 세입원인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의 감소와 실제 수납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관행적 세입예산 편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2025회계연도 세입의 경우 2,785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징수 결정액은 2,498억 7,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30억 7,400만원임. 실제 수납액은 예산 편성액에 비해 약 455억원 적고, 징수결정

6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포함한 총세입은 2,630억 7,400만원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한 세입은 2,330억 7,400만원이다.

액과 비교하였을 때 약 168억원 적은데, 이러한 차이에는 등기특별회계의 면허료 및 수수료의 수납 감소, 건물매각대 등 일부 세입비목의 미수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임.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2026 예산액	수납액-예산액 (C-A)
토지대여료	100	35	35	100	△65
건물대여료	224	223	223	244	△1
기타재산이자수입	659	511	1	681	△658
기타경상이전수입	20	101	101	20	81
면허료 및 수수료	243,976	217,696	217,696	264,077	△26,280
기타잡수입	7	16,299	4	2,472	△3
건물매각대	1,389	—	—	1,389	△1,389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7	—	—	17	△17
토지매각대	11,330	—	—	4,504	△11,330
전년도세계잉여금	20,852	15,013	15,013	15,013	△5,839
합계	278,574	249,878	233,074	288,517	△45,501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등기특별회계의 면허료 및 수수료는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업무관련수입금으로서⁶¹⁾ 등기부 등·초본 교부 수수료, 등기부 및 부속서류 열람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 인감증명

61)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교부 수수료,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등기전산 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 등이 있음.

최근 4년간 결산내역에 따르면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은 2022년 약 2,307억원에서 2025년 약 2,177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내역(2022~2025)〉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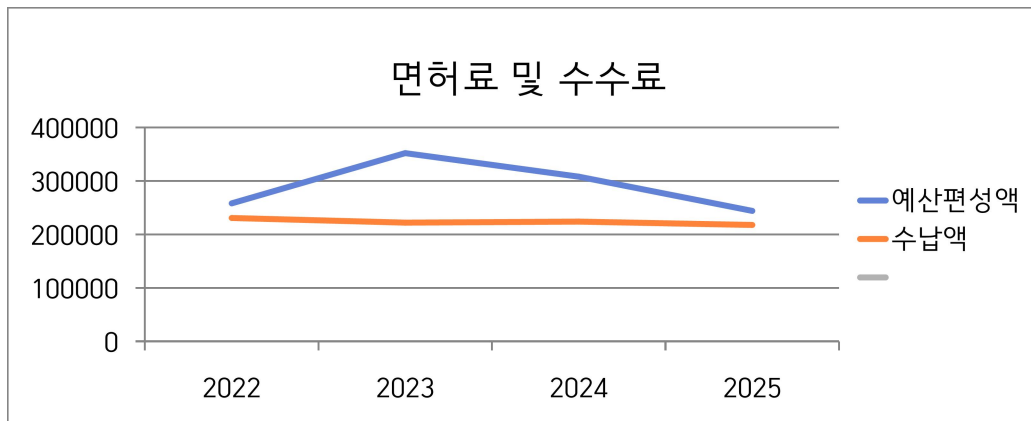
연도	예산 현액	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2	258,087	230,725	230,725	100.0	—	—
2023	352,003	222,011	222,011	100.0	—	—
2024	307,988	223,913	223,913	100.0	—	—
2025	243,976	217,696	217,696	100.0	—	—

-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을 살펴보면, 수납액이 가장 많은 2022년도의 경우에는 약 2,307억원이고, 수납액이 가장 적은 2025년도의 경우 약 2,177억원임. 그러나 예산 편성액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이 가장 많은 2023년의 경우는 약 3,520억원이고, 예산 편성액이 가장 적은 2025년도의 경우 약 2,440억 원임.
- 대법원은 2024회계연도 및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이 연례적으로 과다계상되어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⁶²⁾에 따라 과거 2년간 결산을 가중평균한 것을 근거로

62)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예산 검토보고, p119

제시하고 있으나, 2025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액과 실제 수납액 간의 괴리가 있음.

〈최근 4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 추이〉



2025년도의 경우 편성액과 실제 수납액 간의 괴리가 줄어들긴 했으나, 2026년도 예산 편성액은 2025년도 편성액보다 201억 100만원 많은 2,640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다시 실제 수납액과 괴리가 커질 수 있음.

- 건물매각대는 2024년도 9억 3,700만원, 2025년도에는 1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없음. 최근 4년간 건물매각대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매우 낮거나 수납되지 않고 있음.

〈최근 4년간 건물매각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2	1,389	64	64	4.6	100.0	—	—
2023	1,389	79	79	5.7	100.0	—	—
2024	937	—	—	—	—	—	—
2025	1,389	—	—	—	—	—	—

- 이처럼 건물매각대의 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 편성 근거가 전년도 예산 편성 수준을 기준으로 부정확한 추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합리적 추계 근거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⁶³⁾

〈최근 5년간 건물매각대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건물매각대 (711)	예산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1	1,323	■ 20년도 수준 반영
2022	1,389	■ 21년도 예산 × 1.05
2023	1,389	■ 22년도 수준 반영
2024	937	■ 수납률 저조 고려
2025	1,389	■ (요구)937 → (조정) 1,389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63)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검토보고, p89

(1) 토지매각대 세입과목 편성 오류

- 2025회계연도 토지매각대는 11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모두 0원임. 토지매각대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수납률이 높지만, 2024년도는 수납률이 저조하고 2025년도는 수납액이 없음을 알 수 있음.

〈최근 4년간 토지매각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2	10,261	12,352	12,352	120.4	100.0	—	—
2023	10,553	9,797	9,797	92.8	100.0	—	—
2024	10,702	518	518	4.8	100.0	—	—
2025	11,330	—	—	—	—	—	—

- 2024년도 수납액이 저조한 이유는 구 은평등기소 토지매각대금의 징수결정 처리 과정 때문임. 대법원은 2021년 6월 28일 매각한 구 은평등기소의 토지매각대금을 10년 분납하여 계약하였으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 국유재산 대장의 인계처리를 위하여 2024년도 징수액부터 기타잡수입으로 징수결정하였음.⁶⁴⁾
- 한편, 대법원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했어야 하는 구 은평등기소의 토지매각대금을 토지매각대로

64) 대법원은 구 은평등기소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징수결정이 2023년 12월 29일 이루어졌고, 2024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은 그보다 이른 시기에 확정되어 편성과목과 징수결정 과목이 달라졌다고 함.

편성하였고, 이로 인해 토지매각대는 징수결정하지 못하고 기타잡수입으로 토지매각대금을 수납하였으며, 예산 편성 항목과 실제 징수결정 항목이 불일치 하게 되었음.

대법원은 행정착오로 인하여 구 은평등기소의 토지 매각대를 기타잡수입이 아닌 토지매각대로 잘못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발생 원인과 성격을 구분하여 국회가 비목별 징수실적과 추계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임. 세입총액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예산과 실제 징수결정의 과목이 불일치하면, 어떤 비목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미수납된 것처럼 나타나는 반면 다른 비목은 예산액을 크게 초과하여 징수결정된 것으로 나타나 세입 비목별 수납실적과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대법원은 앞으로 예산 편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입과목의 구분,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회계처리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징수결정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세입 여건과 실제 집행수요를 반영한 세출예산 편성 필요

- 2025회계연도 세출의 경우 2,785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현액은 2,809억 9,800만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2,384억 5,500만원임. 실제 집행액은 예산 편성액에 비해 약 401억원 적고, 예산 현액과 비교하였을 때 약 425억원 적은데, 이는 일반회계 전출금의 전액 불용과 등특 인건비 불용액에 기인한 것임.⁶⁵⁾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A)	예산 현액(B)	집행액 (C)	2026 예산액	예산액-집행액 (A-C)
등기소 신증축	8,518	10,530	9,669	4,818	△1,151
등기업무 전산화	33,388	33,388	31,158	30,951	2,230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1,286	1,286	1,209	—	77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1,042	21,042	20,426	28,125	616
등특 인건비	133,234	133,234	126,093	139,050	7,141
등특 기본경비	4,273	4,271	4,067	4,273	206
등기업무 운영지원	24,086	24,500	23,977	25,350	109
법원행정처 건강보험부담금	4,160	4,160	3,965	4,610	195
예비비	100	100	—	100	100
일반회계 전출	30,596	30,596	—	23,496	30,596
공무원연금기금부담금	17,891	17,891	17,891	23,885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	—	—	3,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	—	859	—

65) 자세한 내용은 이하 각 해당 부분에서 후술

합계	278,574	280,998	238,454	288,517	40,119
----	---------	---------	---------	---------	--------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일반회계 전출금은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이 필수 세출을 충당하고도 남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할 수 있는 경비임. 다만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되므로, 편성 당시에는 당해연도의 실제 세입과 결산상 잉여금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일반회계 전출금은 2022년과 2024년에 전액 불용되었고, 2023년에는 집행률이 6.6%에 그쳤으며, 2025년에도 305억 9,600만원이 전액 불용되는 등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에서도 예산 편성 시점의 불확실성은 인정하면서도, 면허료 및 수수료 징수 추이와 세출 규모를 면밀히 추산하여 전출 가능액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⁶⁶⁾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전출금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불용사유
2021	95,701	95,701	29,181	66,520	30.5	등기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	49,493	50,305	—	50,305	—	등기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3	170,211	170,211	11,176	159,035	6.6	등기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4	123,965	123,965	—	123,965	—	세계잉여금 과소로 인하여
2025	30,596	30,596	—	30,596	—	세계잉여금 과소로 인하여

66)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검토보고, p119

- 2025회계연도 등특 인건비는 예산현액 1,332억 3,400만원 중 1,260억 9,300만원이 집행되어 71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 대법원은 초과 근무수당 집행 조정, 명예퇴직시기 조정 및 등기소 인력의 일반회계 업무 전환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불용액을 원인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등기소 신증축 사업에서는 임차료와 자산취득비의 상당 부분이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등에 사용되었음. 이는 일부 비목은 실제 소요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반면, 공공요금 등 다른 비목은 실제 수요보다 적게 편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 대법원은 앞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포함하여 등특 인건비 등 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 전년도 세계잉여금과 같은 세입을 고려하고, 이와 함께 세출 비목별 관서별 수요와 최근 집행실적 등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규모 산정 및 상환계획 관리 강화 필요

- 대법원은 2025회계연도의 세입 부족 예상에 따른 등기특별회계의

필수 경비 지출을 위한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18일 300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⁶⁷⁾를 신청하게 되었고,

〈대법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신청서 송부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수신청서

1. 예수신청금액

- 2025년도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운용계획상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한도액 : 30,000백만원
- 2025년 既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액 : 0원
- 2025년 금회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신청 금액 : 30,000백만원

금회 예수신청금 : 금삼백억원정(₩30,000,000,000원)

2. 예수요구내용 및 조건

- 사 용 목 적 :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운영자금
- 예 수 신 청 금 : 30,000백만원
- 요 구 사 유 : 등기특별회계 수입금 감소에 따른 운영 어려움
- 예 수 시 기 : 2025. 11. 27.
- 예 수 기 간 : 10년

상기와 같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대법원 등기특별회계로 예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8일

신청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귀하

2025년 11월 27일부터 2035년 9월 9일까지를 예수기간으로, 약 2.7%의 예수금리⁶⁸⁾를 조건으로 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수하게

67)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8)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용자조건 결정기준」(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호)

제7조(예탁금리 등) ① 예탁금리는 예탁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되었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탁(기획재정부)>


기 획 재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11월 자금 예탁(2차)

1. 관련 :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 - 23352(2025.11.19)호.

2. '25.11월 회계 및 기금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의 2차 예탁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백만원)

예탁대상	예탁금액	예탁금리	예탁기간	예탁원금상환일
• 등기특별회계	30,000	2.713%	2025.11.27.~2035.9.9.	2035.9.9.

○ 예탁금 이자 회수일 : 이자계산기간은 예탁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9일 및 9월9일에 이자 회수(단, 최초이자는 일할계산하며, 공휴일 등의 경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사무취급절차 제8조에 따라 이자회수일이 변경)

○ 예탁방법 : 계좌간 이체. 끝.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한국은행총재, 대법원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주무관 이지환 ★사무관 특별평가 국고과장 진경 2025. 11. 25.
협조자
시행 국고과-2104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어진동)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44-215-5123 팩스번호 044-215-8110 / ssaone@korea.kr / 비공개(5)

이에 대법원은 예수기간 10년 동안 예수금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자 납부액은 매년 약 4억 5,000만원으로 예상됨.⁶⁹⁾

20일(해당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전일)까지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 운용 경비를 추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계·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금별로 예탁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채의 할인·할증발행,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 조절을 위한 비용, 기타 기금 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 0.10%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경비를 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회계·기금의 관리자 또는 총괄계정이 인수한 유가증권의 발행자의 요청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탁기간 만료전에 자금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그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예탁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한전 상환계획을 상환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상환으로 인하여 자금운용에 소요되는 추가비용만을 부과할 수 있다.

1. 예탁 잔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중도상환금액 × 0.5%

2. 예탁 잔존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중도상환액 × 0.3%

3. 예탁 잔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중도상환액 × 0.1%

69) 10년간 매년 30억씩 원금을 분할 상환하고, 단리로 계산한다는 전제 하에 계산함

〈2025회계연도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관련〉

(단위 : 백만원)

예탁대상	예탁금액	예탁금리	예탁기간	예탁원금상환일
등기특별회계	30,000	2.713%	2025.11.27.~2035.9.9.	2035.9.9.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대법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의 감소로 인하여 등기신청 건수가 감소하면서 등기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인 면허료 및 수수료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의 자체 세입만으로는 필수 세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의 집행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수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대법원이 제시한 기금예수금 300억원 신청 및 편성의 근거는 2025 회계연도의 결손액 234억 7,000만원으로, 2025년 10월 10일 기준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을 2,193억 8,300만원, 세출 결산을 2,428억 5,300만원으로 예상하였다고 함.

〈2025회계연도 등기특별회계 세입 산정자료〉

(단위 : 백만원)

세입항목	24년 편성액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24년 7월	24년 8월	24년 9월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24년 총수납액
면허료 및 수수료	307,988	16,639	16,533	19,156	23,395	17,622	17,806	21,965	16,373	18,943	16,319	17,121	22,041	223,913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등	12,130	23	68	84	37	500	3,443	7	2	49	2	17	2	4,234
전년도 세계잉여금	63,022	0	0	0	0	0	0	0	0	0	0	0	36,899	36,899
수납액	383,140	16,662	16,601	19,240	23,432	18,122	21,249	21,972	16,375	18,992	16,321	17,138	58,942	265,046

세입항목	25년 편성액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25년 7월	25년 8월	25년 9월 (예상)	25년 10월 (예상)	25년 11월 (예상)	25년 12월 (예상)	25년 총수납액 (예상)
면허료 및 수수료	243,976	12,706	14,786	22,431	19,039	16,451	19,953	17,486	16,005	16,264	16,264	16,264	16,264	203,913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등	13,746	34	53	40	27	2	41	106	2	38	38	38	38	457
전년도 세계잉여금	20,852	0	0	0	0	0	0	0	0	0	0	0	15,013	15,013
수납액	278,574	12,740	14,839	22,471	19,066	16,453	19,994	17,592	16,007	17,395	17,395	17,395	32,408	219,383

* 25년 9월~12 월 징수액 (예상)	①면허료 및 수수료: 25년1월~8월 징수액 평균액에서 6.3% 차감한 금액 ⁷⁰⁾ * ㉠연도별 1월~8월 징수액 평균값 대비 ㉢연도별 9월~12월 징수액 평균값 ⁷¹⁾ ㉢비율차(-6.3%) ②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등: 25년1월~8월 징수액 평균액 *은평등기소 분할 매각대금 25년분 2,720백만원 ⇒ 미수납 예상 ⇒ 은평구청 금년도 재원없어 내년도에 2년분 납입예정 고지 ③전년도 세계잉여금: 전년도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
------------------------------------	--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70)연도별 월별 수납액 → 부동산경기에 따라 40% 이상의 차이를 보여 월별 평균값 활용 불가 ⇒ 참고2

〈2025회계연도 등기특별회계 세출 산정자료〉

(단위 : 백만원)

세출항목	2024년		2025년		
	편성	결산	편성	결산(예상)	비고
인건비	128,022	126,388	133,234	129,234	4,000백만 원 불용 예상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27,265	20,868	22,051	22,051	現 집행 추계를 보았을 때 불용 없음
등기정보화	64,819	62,876	55,716	53,216	2,500백만원 불용 예상
등기소신증 축	10,035	9,609	8,518	10,393	전년도 이월액 2,375백만원, 불용액 500백만원 고려
운영비 등	29,034	30,292	28,459	27,959	500백만원 불용 예상
일반회계 전출금	123,965	—	30,596	—	일반회계 전출 없음 ⇒ 전액 불용 예상
총계	383,140	250,033	278,574	242,853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 그러나 실제 결산 결과, 세입은 2,330억 7,400만원, 세출은 2,384억 5,400만원으로 결손액은 약 53억 8,000만원으로, 예상 결손액인 234억 7,000만원의 약 23%에 불과함.

〈2025회계연도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월별 수납액」

71) 1월~8월 징수액 평균값 : 9월~12월 징수액 평균값 → `20년(23,709백만원 : 22,133백만원), `21년(23,327백만원 : 22,233백만원), `22년(21,030백만원 : 18,845백만원), `23년(19,873백만원 : 18,517백만원), `24년(19,207백만원 : 18,623백만원)

2025년	세입(A)	세출(B)	결손액(A-B)
결산 추계값(a)	219,383	242,853	△23,470
실제 결산값(b)	233,074*	238,454	△5,380
실제 결산값과 추계값의 차 (c=b-a)	13,691	△4,399	△18,090

* 기금예수금 30,000백만원 제외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이처럼 결산 추계값과 실제 결산값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 근거가 부정확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세입의 경우 실제 결산 금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위한 세입 추계 금액보다 약 137억원 정도 많고, 2025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금액에 비해서는 약 450억원 적은 금액임. 실제 수납액이 예산 편성 금액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은 위 세입에 따르면, ‘면허료 및 수수료’와 ‘토지매각대’이고, 각각 약 263억원, 113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이와 같이 부정확한 추계에 근거하여 예수금을 산정할 경우, 2025년도와 같이 필요 규모 이상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수하게 됨에 따라 10년 동안 약 81억의 불필요한 이자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음.
-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을 등기업무 운영을 위한 특정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이므로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어 세입과 세출의 예산 편성 및 이를 위한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2025회계연도와 같이 세입이 세출보다 적고, 세입과 세출, 결손액에 대한 예상 추계액이 실제 결산 금액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등 자금 확보로 인한 이자 및 상환 부담과 같은 채무 부담이 생길 수 있음. 대법원은 앞으로 세입 및 세출의 각 항목별 예산 편성을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세 입》

(4) 세입 기반 확충 필요

(가) 세입 결산 개요

- 2025회계연도 등기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785억 7,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630억 7,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8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4.4%임.

〈2025회계연도 등기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세입	278,574	—	278,574	279,878	263,074	16,804	—

(나)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 기반 확충 필요

- 등기특별회계는 「등기특별회계법」에 따라 등기업무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등기업무 관련 세입으로 등기업무 관련 세출을 충당하는 구조임.
-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량, 법인등기 신청건수, 등기신청수수료 수준 등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구조임.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토지 대여 료	건물 대여 료	기타 재산 이자 수입	기타 경상 이전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기타 잡수 입	건물 매각대	기타 고정 자산 매각 대	토지 매각대	전년도 세계잉 여금	합계
금액	100	224	659	20	243,976	7	1,389	17	11,330	20,852	278,574
비중	0.04	0.08	0.24	0.01	87.6	0.003	0.5	0.01	4.07	7.5	100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등기신청 건수 감소, 전년도 세계잉여금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있음. 특히 2025회계연도에는 세입 규모가 당초 예산에 미달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세출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00억 원을 활용하였음.

〈2021~2025년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120.8	94.6	98.9	102.9	106.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사용

〈2021~2025년 부동산등기 신청 건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부동산등기 신청 건수	16,925,273	14,864,587	14,141,848	13,999,693	12,434,218

자료: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등기 신청 현황 사용

2025회계연도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인상⁷²⁾, 구 은평등기소 매각

대금⁷³⁾ 분할납부 수납,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등으로 세입 결손을 일부 보완하였으나, 자체 세입만으로 세출 소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등기신청수수료 개정 전후 비교표〉

종류	방법	개정 전	개정 후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등 (규칙 제5조의2제1항 ⁷⁴⁾)	수기신청	15,000원	18,000원
	e-form신청	13,000원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	동결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 (규칙 제5조의2제2항 ⁷⁵⁾)	수기신청	15,000원	20,000원
	e-form신청	13,000원	17,000원
	전자신청	X	X
신탁등기 (규칙 제5조의2제3항 ⁷⁶⁾)	수기신청	면제	8,000원
	e-form신청	면제	6,000원
	전자신청	면제	4,000원
기타등기 (규칙 제5조의2제4항 본문 ⁷⁷⁾)	수기신청	3,000원	4,000원
	e-form신청	2,000원	3,000원
	전자신청	1,000원	동결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72) 개정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은 2025년 8월 1일 시행

73) 해당 국유재산 매매 계약은 2021년 6월 28일에 이루어졌고, 건축물 매각대금은 1회차(2021년 6월 30일 납부)에 모두 납부되었으며, 토지 매각대금은 10회로 분할하여 납부받고 있음.

74)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이는 등기특별회계가 단순히 일시적 세입 부족을 겪은 것이 아니라, 면허료 및 수수료 중심의 세입 구조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전년도 세계잉여금에 의존하여 재정운용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025, 2026회계연도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편성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2025	243,976	12,704	14,786	22,431	19,039	16,451	19,953	105,364
2026	264,077	14,591	18,457	21,347	19,932	17,789	20,838	112,954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럼에도 2026회계연도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한 2025회계연도 결산 대비 554억 4,300만원 증액된 2,885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면허료 및 수수료는 2025회계연도 예산 대비 201억 100만원 증액된 2,640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반면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2025년도 208억 5,200만원에서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 7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 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 76)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③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
- 77)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 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한다.

2026년도 150억 1,3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향후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2025회계연도 세입 예·결산액 및 2026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세입 총계	278,574	263,074	288,517
면허료 및 수수료	243,976	217,696	264,077
전년도 세계잉여금	20,852	15,013	15,013
그 외	13,746	30,365	9,427

- 따라서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2027회계연도 이후 등기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2028회계연도 이후에도⁷⁸⁾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⁷⁹⁾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78) 「등기특별회계법」 부칙 <법률 제4549호, 1993. 6. 1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법은 1994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79) 「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의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첫째,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등기신청 건수, 부동산 거래량, 법인 설립·변경 등기 추이, 전자신청 비중, 수수료 인상 효과 등을 반영한 중기 세입추계 모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과 같이 전년도 또는 최근 수납액에 단순 증감률을 적용하는 방식만으로는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 감소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움.
- 둘째, 등기신청수수료 인상 효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필요함. 2025년 하반기 수수료 인상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세입 증가 효과를 가져왔는지,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신청건수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지 등을 분석하여 향후 수수료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유희 등기소 부지, 구 등기소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수입 등 수수료 외 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⁸⁰⁾ 등기특별회계 세입 구조가 면허료 및 수수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유희재산 처분 및 사용료·이자수입의 정확한 예산 반영을 통해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여 세입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80) 대법원에 따르면, 토지대여료·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건물매각대 등이 모두 전년도 예산액 혹은 전년도 결산액 등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편성되고 있음. 특히 건물매각대의 경우에도 2022년 예산안 편성 당시 이러한 추계 근거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받은 바 있음.

〈유희등기소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등기소	건축연도	면적		대장가액		유희결정시점	향후계획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구)울산중부 등기소	1995	1,648.1	634.40	1,620	286	2014. 11. 17. 신청사 이전	활용계획 협의 중 2030년 이후 매각 추진
구)전주등기소	1999	1,264.4	1,287.96	2,176	864	2019. 12. 2. 신청사 이전	2027년 이후 매각 추진 예정
구)대덕등기소	1983	1,625.1	483.0	2,234	113	2022. 10. 4.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개원	2027년 이후 매각 추진 예정
구)동수원 등기소	2000	2,646	2,644.1	14,923	2,840	2024. 4. 1.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원	2026년 이후 매각 또는 교환 추진 예정
구)장안등기소	2002	1,996.5	817.65	3,739	724	2024. 4. 1.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원	2026년 이후 매각 또는 교환 추진 예정
구)여수등기소	1975	1,219	490.8	1,154	273	2025. 11. 3 여수등기소 신축 이전	장래활용성 대비 보유 (2028년 이후 매각 또는 교환 추진 예정)
구)여천등기소	1988	1,515	905.5	4,781	305	2025. 11. 3 여수등기소 통합	장래활용성 대비 보유 (2029년 이후 매각 또는 교환 추진 예정)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 넷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는 일시적 유동성 보완 수단에 그쳐야 하며, 반복적으로 재정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고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대법원은 앞으로 예수금 상환 및 이자 부담 현황과 계획, 세입 확충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의 세입 결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허료 및 수수료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유희재산 처분 등 보완적 세입원을 적극 관리하며, 수수료 조정 효과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 출》

(5) 등기소 신증축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등기소 신증축(1252-411) 사업은 일반등기소의 신축 및 리모델링, 통합등기소의 신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85억 1,8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05억 3,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6억 6,900만원이 집행되었고 8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등기소 신증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등기소 신증축	8,518	2,375	△363	10,530	9,669	—	861

(나) 임차료 및 자산취득비 이·전용 등 개선 필요

- 등기소 신증축 사업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협소한 일반등기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고, 대도시 지역의 등기소를 통·폐합하여 통합등기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 중 ‘등기소 관리 등’ 사업은 등기소 신축·리모델링과 직접 관련되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등기소 이전·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는 내역사업임.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14억 8,900만원이었으나, 이·전용 등으로 3억 6,3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11억 2,600만원이 되었고, 그중 9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등기소 관리 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등기소 관리 등	1,489	—	△363	1,126	954	—	172

- 해당 사업에서는 총 4억 1,000만원이 조정되었고, 이 중 4,700만원이 사업 내에서 세목변경 되었음. 조정된 4억 1,000만원은 각각 임차료 7,300만원과 자산취득비 3억 3,700만원임. 임차료는 장소·건물 등의 임차료, 시설·장비의 리스료, 물건 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으로 집행되는 운영비 성격의 비목이고, 자산취득비는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와 전산장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 되는 경비임.⁸¹⁾
-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등기소 관리 등’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임차료와 자산취득비는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등기소 이전, 민원실·사무공간 운영, 비품·장비 확보 등 등기소 설치·관리와 직접 관련된

81)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비목별 지침. 임차료(210-07)는 장소·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물건 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을 포함하고, 자산취득비(430-01)는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와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등을 포함함.

용도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2025년도 ‘등기소 관리 등’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임차료와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을 보면, 당초 편성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편성된 비목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다른 비목 또는 다른 사업의 용도로 집행되었음.
- 임차료의 경우 당초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전용 등으로 7,3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2,7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최종적으로 2,700만원만 집행되었음. 최근 3년간 임차료는 매년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평균 7,600만원 정도가 이·전용되고 평균 2,300만원이 집행되어 왔음.

〈2023~2025회계연도 임차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3	100	—	△69	31	31	—	—
2024	100	—	△86	14	12	—	2
2025	100	—	△73	27	27	—	—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2025년도의 경우, 12월 11일 임차료 2,600만원이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보전을 위해 자체이용되었고, 12월 12일에는 등기소 신증축 사업 내부에서 임차료 4,700만원이 일반

수용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자체세목 변경되었음.

〈등기소 신증축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세목변경 (2025.1.23.)	등기소 신증축 (1252-411)	420-04	74	등기소 신증축 (1252-411)	420-03	여수등기소 신축 및 일반등기소 리모델링의 공사비 부족
자체세목변경 (2025.10.31.)	등기소 신증축 (1252-411)	420-04	25	등기소 신증축 (1252-411)	420-03	여수등기소 신축 및 일반등기소 리모델링의 공사비 부족
자체세목변경 (2025.12.12.)	등기소 신증축 (1252-411)	210-07	47	등기소 신증축 (1252-411)	210-01	등기소 관리 등의 일반수용비 부족
자체이용 (2025.11.28.)	등기소 신증축 (1252-411)	430-01	337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210-02	등기업무 기본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체이용 (2025.12.11.)	등기소 신증축 (1252-411)	210-07	26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210-02	등기업무 기본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 자산취득비는 2025년도 당초 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전용 등으로 3억 3,7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1억 6,3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최종적으로 1억 6,300만원만 집행되었음. 자산취득비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평균 3억 5,400만원이 이·전용되고 평균 1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2025회계연도 자산취득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3	500	—	△442	58	58	—	—
2024	500	—	△285	215	214	—	1
2025	500	—	△337	163	163	—	—

2025년도 자산취득비 중 이·전용된 3억 3,700만원은 2025년 11월 28일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체이용되었음.

- 이에 따라 ‘등기소 관리 등’ 사업의 임차료와 자산취득비 예산 총 6억원 중 3억 6,300만원이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동하였고, 같은 사업 내부의 일반수용비로 이동한 4,700만원까지 포함하면 당초 편성된 임차료와 자산취득비 예산 6억원 중 4억 1,000만원이 원래 비목이 아닌 용도로 조정된 것임.
- 원칙적으로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만,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이용은 기관 간 또는 장·관·항 간 이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⁸²⁾, 예산집행지침 또한

82)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는 예산의 전용을, 제47조는 예산의 이용을 각각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체 전용 및 자체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⁸³⁾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편성된 사업·비목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조정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님.

- 문제는 등기소 신증축 사업(1252-411)의 시설·이전·비품 등의 구매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는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7032-311)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을 보전하는 재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전신·전화요금, 회선사용료,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등으로 집행되는 경상적 운영비 성격의 비목임.⁸⁴⁾ 반면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임차료와 자산취득비는 리모델링·이전·등기소 운영 개시에 필요한 공간 임차 및 비품·장비 취득을 위한 경비이므로, 두 비목은 집행 목적과 산정 근거가 다름.

특히 공공요금 부족분을 시설·장비 관련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국회가 등기소 신증축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동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3)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 233-238

84)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비목별 지침.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는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회선사용료,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및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등을 포함함.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등기소 이전 지원, 민원실 환경개선, 비품·장비 확충 등의 사업 효과가 축소될 수 있음.

또한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경상경비 부족분 보전에 시설·자산 관련 예산이 활용되면, 결산상으로는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이 일정 수준 유지되더라도 실제로는 사업별·비목별 예산 산정의 정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임차료와 자산취득비가 등기업무 운영 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보전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임차료와 자산취득비가 실제 소요보다 과다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임차료는 당초 1억원 중 2,700만원만 원래 비목으로 집행되었고, 자산취득비도 당초 5억원 중 1억 6,300만원만 원래 비목으로 집행되었음. 특히 임차료의 경우 2023년에는 7,000만원, 2024년에는 8,600만원이 등특 인건비 보수로 이용된 바 있어, 2025년까지 포함하면 임차료 예산의 과다 편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⁸⁵⁾

- 동시에 이는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실제 수요보다 과소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2025년에는

8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동 보고서는 등기소 신증축 임차료가 2023년 70백만원, 2024년 86백만원씩 등특 인건비 보수로 이용된 점을 들어 임차료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수요와 실제 소요비용을 근거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자산취득비 3억 3,700만원과 임차료 2,600만원뿐만 아니라,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 내부의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도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보전에 활용되었음.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기·가스료, 회선사용료, 보험료 등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과소 편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세이용 (2025129)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210-08	47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210-02	등기업무 기본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세이용 (20251128)	등기소 신증축 (1252-411)	430-01	337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210-02	등기업무 기본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세이용 (20251211)	등기소 신증축 (1252-411)	210-07	26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210-02	등기업무 기본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세전용 (20251211)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420-03	70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210-02	등기업무 기본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세전용 (20251211)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430-01	263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210-02	등기업무 기본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자세전용 (20251219)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420-03	35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210-02	등기업무 기본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 대법원은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리모델링 대상 노후등기소 현황, 구 등기소의 이전 필요성, 임시청사 또는 창고 임차 필요 여부, 관서별 민원실 가구·사무용 집기·안전장비 등 자산취득 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임차료와 자산취득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관서별

집행액, 전기·가스요금 단가, 전산센터 전력 사용량, 회선 사용료, 보험료 등 산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공공요금 부족분을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임차료·자산취득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등기업무 전산화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등기업무 전산화(1334-305) 사업은 등기업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여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33억 8,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311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3,5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등기업무 전산화	33,388	—	—	33,388	31,158	35	2,195

(나) 보안컨설팅 통합발주의 회계별 과업·비용·성과 구분 명확화 필요

-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부동산등기시스템, 법인등기시스템, 인터넷 등기소 등 등기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신청·열람·발급·전자납부 등 대국민 등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임. 등기업무시스템은 대민서비스와 내부업무, 외부기관 연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보안 취약점 진단 및 개선 필요성이 큼.⁸⁶⁾

- 이 중 정보화진단, 보안컨설팅 사업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7,2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정보보안 컨설팅은 전산시스템과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 자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자문 성격의 용역임.⁸⁷⁾
- 한편, 일반회계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에도 “2025년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사업” 예산 2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대법원은 보안컨설팅 사업을 통합 발주함에 따라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 사업이 함께 추진된 것으로 보임.
- 대법원에 따르면, 2025년도 사법부 보안컨설팅 계약이 2025년 10월 21일 체결되어 선금 50%를 제외한 잔금 3,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미래등기시스템 개통과 보안 위협 증가에 따른 점검범위 및 예산 확정 지연으로 인해 예산이 이월되었다고 함.

86)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7)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의 적용범위는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기타 연구용역이고, 전산용역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정보보안 컨설팅 대가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의 합으로 산정한다.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2025회계연도 사법부 보안컨설팅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액	결산상 특이사항
일반회계	사법업무 전산화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253	계약 절차 지연 및 납품 기한 연장
등기특별회계	등기업무 전산화	정보화진단, 보안컨설팅	72	잔금 35 사고이월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 사법부 정보시스템은 데이터센터, 정보통신망, 보안관계 체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므로 보안컨설팅을 통합 발주하는 것은 중복 점검을 줄이고 사업관리를 효율화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등기특별회계는 등기업무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이고, 그 세출은 등기업무 관련 경비 등에 한정되므로, 등기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되는 보안컨설팅 과업은 등기정보시스템과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함.
- 그러나 통합발주 방식에서는 등기특별회계가 부담한 7,200만원이 실제로 어떤 등기정보시스템 보안진단에 사용되었는지, 일반회계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보안컨설팅 과업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회계별 산출물과 검수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회계별 과업과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등기특별회계 재원이 일반 사법정보시스템의 보안점검 비용까지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국회는 등기특별회계 세출이 법률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짐. 이는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특별회계의 별도 운영 취지⁸⁸⁾를 약화시킬 수 있음.

- 대법원은 보안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내부 전산망, 서버, 시스템 자료 등에 관한 보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안전보장 및 재판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함. 보안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안상 취약한 부분이 공개될 수 있어 자료 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앞으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및 결과보고서에서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의 점검대상·과업·비용·산출물 및 검수 기준을 보다 철저히 구분하고, 등기특별회계 부담액의 산정근거와 집행성과를 결산자료에 별도로 제시하는 등 통합발주 체계 내에서 회계별 관리·결산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회계별 보안컨설팅 과업·비용·성과 구분이 실질적으로 어렵거나, 등기특별회계 부담분의 적정성을 결산자료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기업무 전산화 보안컨설팅을 일반회계 사법업무 전산화 보안컨설팅과 분리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분리발주를 통해 등기정보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기정보센터, 등기 연계시스템 등

88) 국회의정연수원, 예결산검토 표준교재(특별회계), 2024.8., p.3

등기업무 특화 영역의 보안위험을 별도로 진단하고, 등기특별회계 예산이 등기업무 관련 경비로 집행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7) 일반회계 전출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회계 전출(8010-800) 사업은 등기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등기특별회계 세제잉여금을 해소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계간거래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각각 305억 9,600만원이나 집행액은 없고 전액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전출	30,596	—	—	30,596	—	—	30,596

(나) 세입 부족 구조 하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일반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이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으로 분류되는 세출 비목임.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등기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음.⁸⁹⁾

89) 「등기특별회계법」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 따라서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은 결산상 잉여금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업임. 즉, 당해연도 세입이 등기소 운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건비 등 필수 세출 소요를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 그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등기특별회계는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 감소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실제로 등기특별회계의 총세입은 2021년도 3,534억 4,600만원에서 2025년도 2,330억 7,400만원⁹⁰⁾으로 감소한 반면, 세출은 2025년도 2,384억 5,400만원으로 세입을 초과하여 결손액이 발생하였음.

〈2023~2025회계연도 등기특별회계 세입 결산 및 2026년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예산
등기특별회계 세입	301,102	265,046	233,074	288,517

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등기신청 감소로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세계잉여금도 대부분 소진되어 2025년에는 일반회계 전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함.

- 그 결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305억 9,600만원은 전액 불용 되었음. 또한 최근 4년간 일반회계 전출 사업의 집행 현황을 보면,

9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포함한 총세입은 2,630억 7,400만원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한 세입은 2,330억 7,400만원이다.

2022년과 2024년에는 전액 불용되었고, 2023년에는 집행률이 6.6%에 그쳤으며, 2025년에도 전액 불용되어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⁹¹⁾

〈최근 4년간 일반회계 전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2	50,305	—	50,305	0.0
2023	170,211	11,176	159,035	6.6
2024	123,965	—	123,965	0.0
2025	30,596	—	30,596	0.0

- 일반회계 전출금은 잉여금을 전제로 하므로 세입 부족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실제 전출이 가능한 금액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상당 규모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계속 편성하면 결산상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고, 등기특별회계의 실제 재정 여건과 예산상 재정 여건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2025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은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전망과 필수 세출 편성 이후의 예상 잉여금을 기초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 감소와 전년도 세계잉여금 축소로 전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였음. 이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독립적인 지출 수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 전망의 잔여 재원에

91)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반회계 전출금의 연례적 집행 부진과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pp118-121]

따라 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줌.

- 대법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 시 전년도 세계잉여금, 당해연도 면허료 및 수수료 징수 추이, 필수 세출 소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총괄》

(1) 사업 목적 명확화 및 분리편성 필요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2015년 12월 15일 「공탁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었음.
- 동 기금은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을 바탕으로 하는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고⁹²⁾, 기금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재판활동지원(소송구조지원, 조정제도지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소년보호 등 지원 등), 사법정보화운영(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임.⁹³⁾

92) 「공탁법」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93) 「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 내용
소송구조지원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
조정제도지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법원의 사건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정위원 수당, 조정센터 운영 지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에 민간경상보조
소년보호 등 지원	소년보호재판 및 아동보호절차 지원,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에서의 전문가 진단 및 전문가 의견조회 비용 지원,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소송자료 검색, 첨부서류 제출 등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공탁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정보화 사업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소년보호 등 지원’, ‘민원서비스 개선’,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은 「공탁법」 제31조제6호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⁹⁴⁾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 사업임.

그런데 동 사업들의 경우 사업목적이 다소 포괄적이고, 사업 추진내용 및 지원대상 등이 사업명만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및 결산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유사 사업과의 비교·분석이나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9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데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

특히,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도 예산 규모가 322억 3,700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내역사업이 2개에 불과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의 사용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2025년도 소년보호 등 지원, 민원서비스 개선,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예산 편성내역〉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소년보호 등 지원 : 9,207백만원	· 소년보호재판지원: 4,131백만원 · 아동보호절차 등 지원: 1,056백만원 · 소년 등 집행감동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 진단 등 비용지원: 859백만원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3,161백만원
민원서비스 개선 : 32,237백만원	· 사법민원 서비스 운영: 29,336백만원 ·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 2,901백만원
사법서비스 향상 : 13,894백만원	·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 4,216백만원 · 사법교육 및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지원 : 572백만원 ·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 : 463백만원 ·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 : 1,530백만원 · 인신보호제도 운영 등 : 429백만원 ·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 1,558백만원 · 절차보장을 통한 난민재판 지원 : 389백만원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 : 4,625백만원 · 치료명령대상자 전문가 진단비용 : 112백만원

- 또한 ‘소년보호 등 지원’,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은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사업별 집행 주체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25년 기금준치평가보고서에서도 ‘사법서비스 향상’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목적에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내역사업인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 사업의 목적은 사법서비스 향상과 직접적 연관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
- 따라서 대법원은 앞으로 각 세부사업을 사업의 내용, 집행주체 등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내역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및 결산 과정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수 입》

(2) 세입예산과목 적용의 적정성 확보 필요

- 징계부과금(56-564)은 「법원공무원 규칙」 제108조의2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에 따른 수입을 말하고, 2025년에는 당초 편성한 계획액은 없었으나 4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4백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위약금(57-572)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수납하는 항목으로, 2025년에는 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1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가산금(58-581)은 국가의 채권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지연이자를 수납하는 항목으로, 2025년에는 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1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년도 징계부과금, 위약금 및 가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5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징계부과금	—	4	4	—	—
위약금	—	1	—	1	—
가산금	—	1	—	1	—

-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원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환수금을 ‘기타경상이전수입’ 과목으로 부과·징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과금’ 예산과목으로 분류하여 수입 처리하였음.
- 또한 국고대납 소송비용 미수납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은 그 법적 성격과 발생 원인에 따라 ‘변상금’ 과목으로 징수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징수결의 하였음.

〈세입과목 구분95〉

구 분	내 역
기타경상이전수입	연체료 및 반환금 등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납금, 전화가입비 반납금 등)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 특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잘못 징수한 건들은 다년간 계속해서 잘못된 세입과목을 적용하여 징수결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됨.

95)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48~249

〈최근 4년간 위약금 및 가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연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위약금	2022	—	—	—	—	—
	2023	—	1	—	1	—
	2024	—	1	—	1	—
	2025	—	1	—	1	—
가산금	2022	—	—	—	—	—
	2023	—	—	—	—	—
	2024	—	1	—	1	—
	2025	—	1	—	1	—

자료: 대법원 제출

- 예산과목은 국가재정의 수입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정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세입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격에 따라 적절한 예산과목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이 필수적임.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할 경우 세입 실적의 정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앞으로 세입 징수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수입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과목을 적용하도록 하고, 세입예산과목 적용 기준에 대한 내부 점검과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필요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한 국고예금이자 등을 수납하는 항목으로, 2025년에는 당초 편성한 계획액은 없었으나, 2,400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2,4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5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기타재산이자수입	—	24	24	—	—

- 대법원은 기타재산이자수입목으로 국고예금이자와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는 국고보조금 수익금 및 이자를 매년 수납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2,4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1년~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1	—	3	3	—	—
2022	—	3	3	—	—
2023	—	2	2	—	—
2024	—	8	8	—	—
2025	—	24	24	—	—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는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과 ‘사법서비스 향상’의 내역사업인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 사업 총 2개의 보조사업이 있어 국고보조금 이자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⁹⁶⁾에 따라 국고예금이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기타재산이자수입목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7조의 예산총계주의⁹⁷⁾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같은 법 제53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96)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영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계산기준일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 및 10월 31일로 하고, 수입금으로의 납부기한은 각각 매 회계연도 5월 15일 및 11월 15일로 한다.

97)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 출》

(4) 소년보호 등 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1161-304)은 「소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가정(지방)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액은 92억 700만원이며 이 중 63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4,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7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소년보호 등 지원	9,207	423	—	9,630	6,385	449	2,796
소년보호재판지원	4,131	—	—	4,134	4,120	—	2
아동보호절차 등 지원	1,056	—	—	1,056	1,027	—	29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859	—	—	856	609	—	247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3,161	423	—	3,584	617	449	2,518

(나)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 지연에 따른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소년·아동보호사건 및 가사사건 등의 특성에 맞는 법원의 후견·복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 대상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2025년 예산 31억 6,100만원 중 6억 1,7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4,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3,161	423	—	3,584	617	449	2,518
건설보상비(410-00)	2,518	—	—	2,518	—	—	2,518
기본설계비(420-01)	309	418	—	727	610	118	—
실시설계비(420-02)	319	—	—	319	—	319	—
시설부대비(420-05)	15	5	—	20	7	13	—

- 동 사업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부지의 용도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6,063제곱미터로 해당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부지 용도를 ‘공공청사’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본설계 용역이 약 6개월 간 중지되었음. 그 결과 현재 기본설계 중 중간설계가 2026년 4월에 완료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⁹⁸⁾가 진행 중으로, 기본설계 용역 완료 시점이 대법원이 당초 계획한 2025년 8월보다 약 1년이 지연됨. 이에 따라 건설보상비 25억 1,8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으며, 실시설계비 3억 1,9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음.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진행경과>

일 자	추진내용
2024. 07. 02.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기본계획 설립
2024. 07. 30.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 공고
2024. 11. 26.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 계약 체결
2025. 07. 08.	기본설계(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회신
2025. 07. 18.	여주시·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에 따른 설계 중지
2025. 12. 18.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2026. 01. 09.	설계 재개
26. 05. ~	기본설계(중간설계) 적정성 진행 중(총사업비 조정 시까지 설계 중지)

자료: 대법원

98)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4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결과의 공사비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그 검토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 결과의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 결과의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한편, 대법원이 제출한 변경 일정에 따르면 2027년 5월에 착공 및 공사에 들어가 2029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나, 2026년 8월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친⁹⁹⁾ 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함.

그런데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와 실시설계 용역 완료까지는 통상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7년 5월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즉, 대법원이 제출한 변경 일정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일정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향후 추진계획〉

추진내용	대법원 제출 자료		예 상	당초 계획 대비 지연
	당초 계획	실제 추진 및 변경 계획		
기본계획	2024.03.	24.07.		+3개월
기본설계 (기본설계, 중간설계)	2024.06.~25.03.	기본설계 2024.12.~2025.07. 중간설계 2026.01.~2026.04.		+11개월
실시설계	2025.04.~2026.01.	중 지	2026.09.~2027.08. (기획예산처 협의 포함)	+19개월
공사 발주	2026.02.~2026.05.	2026.12.~2027.02.	2027.09.~2027.11.	+18개월
착공 및 공사	2026.06.~2028.09.	2027.05.~2029.10.	2028.02.~2030.07.	+22개월
준 공	2028.09.	2029.10.	2030.07.	+22개월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 재구성

99)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8조(기본설계 완료)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또한, 2026년 예산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33억원 중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자문수당 400만원에 불과하여, 올해 예산 역시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설보상비 25억 1,800만원, 이월된 기본설계비 1억 1,700만원과 실시설계비 일부를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026년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26. 7월 말 기준)

사업명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2,851	449	—	3,300	4
건설보상비(410-00)	2,518	—	—	2,518	—
기본설계비(420-01)	—	117	—	117	4
실시설계비(420-02)	318	319	—	637	—
시설부대비(420-05)	15	13	—	28	—

자료: 대법원

- 따라서 대법원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및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사업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점검하는 등 사업관리 전반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민원서비스 개선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1161-305)은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물적·인적 환경을 구축하고, 전자소송 관련 재판기록의 전자화를 위한 스캔 업무의 운영 지원, 민원안내업무 및 민원상담위원제도 운영 등 전국 법원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액은 322억 3,700만원이며 이 중 294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고 28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민원서비스 개선	32,237	87	—	32,324	29,441	—	2,883
사법민원 서비스 운영	29,336	47	△57	29,326	26,516	—	2,763
국민의사법접근성향상	2,901	40	58	2,999	2,877	—	122

(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형사소송기록 전자사본화 사업 물량 산정 및 예산 편성 필요

- ‘사법민원 서비스 운영’의 ‘형사소송기록 스캔 및 비실명처리’ 사업은

형사소송 종이기록을 스캔하여 전자화하고, 비실명처리를 한 후 전자적으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관계인의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재판기록 열람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임.

- 대법원은 2025년에 전년도 보다 47억 5,600만원 증액된 6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46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형사소송기록 스캔 및 비실명 처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형사소송기록 스캔 및 비실명 처리	6,970	—	6,970	4,652	—	2,318	

- 형사소송기록 전자사본화 사업은 2020년부터 일부 법원 및 재판부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2025년에는 전국 법원으로 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 전국 모든 형사재판부에서 전자사본화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 물량을 산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형사소송기록 스캔 및 비실명 처리 사업 대상 법원 및 재판부 수〉

		2020~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법원 수		2	13	24	66	67
구분 (재판부 수)	고법	서울고법 (제한적 활용)	서울고법 등 3개 고법(15)	전국 고법 전체	전국 고법 전체	전국 법원 모든 재판부 대상
	제1심합의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체(14)	서울중앙지법 등 3개 지법(19)	전국 지법(본원) 전체	전국 지법 및 지원 전체	
	항소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전체(7)	서울중앙지법 등 10개 지법(19)	서울중앙지법 등 16개 지법(54)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지법(62)	
	제1심단독	—	—	서울중앙지법 등 10개 지법(60)	서울중앙지법 등 13개 지법(74) 및 22개 지원(49)	

자료: 대법원

-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대법원이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스캔 및 비실명화 처리 물량과 실제 처리 물량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실제 법원별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 물량을 과다하게 예측했기 때문으로 보임.

〈2021~2025년도 형사소송기록 스캔 및 비실명 처리 사업 내역〉

(단위: 건,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계 획	실 제	비 고	계 획	실 제	비 고
스캔 물량	4,577,216	4,924,958	+347,742	16,396,490	16,654,063	+257,573
비실명화 물량	188,103	263,721	+75,618	607,365	437,357	△170,008
예 산	575,300	615,300	+40,000	1,548,800	1,504,800	△44,000
구 분	2024년			2025년		
	계 획	실 제	비 고	계 획	실 제	비 고
스캔 물량	25,188,713	30,875,840	+5,687,127	84,393,353	55,300,000	△29,093,353
비실명화 물량	381,684	477,894	+96,210	381,684	421,000	+39,316
예 산	2,214,000	2,661,000	+447,000	6,970,000	4,652,000	△2,318,000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별 사건의 전자사본화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각급 법원의 운용과 재판부 결정에 달려있고, 성범죄 사건 등 특정 유형은 재판부가 전자사본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가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4년간의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 부족과 예산 불용이 교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임.

특히 대법원은 2025년도에 사업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사전에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전자사본화 수요와 실제 수행 가능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조사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 결과 실제 사업 물량이 예산 편성 당시의 추정치에 크게 미달하여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대법원은 앞으로 예산 편성 이전에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전자사본화 추진계획, 실제 수요 및 처리 가능 물량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집행실적, 법원별 운영 특성 및 사건 유형별 전자사본화 제외 비율 등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업 물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사법서비스 향상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1161-306)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알권리 강화, 대국민 소통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액은 138억 9,400만원이며 이 중 128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고 3,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서비스 향상	13,894	197	△565	13,527	12,879	37	611
법원의후견적기능강화	4,216	88	44	4,348	4,280	—	68
사법교육 및 대국민소통 프로그램 지원	572	—	△17	555	515	37	3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	463	—	—	463	463	—	—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지원 강화	1,530	—	—	1,530	1,530	—	—
인신보호제도 운영 등	429	84	△7	506	431	—	75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1,558	25	△19	1,564	1,285	—	278
절차보장을 통한 난민 재판지원	389	—	—	389	370	—	19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	4,625	—	△523	4,102	3,935	—	167
치료명령대상자 전문가 진단 비용	112	—	△42	70	70	—	—

(나) 전용상담실, 협의이혼실, 아이사랑방 설치 및 개선 관련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내역사업 중 ‘치유적 사법제도(힐링코트) 지원’ 사업은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자녀 대상 교육·상담 프로그램과 전용상담실을 운영하고, 가사·소년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교육·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임.
- 대법원은 동 사업의 일환으로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이혼 후 자녀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법원 내 전용상담실, 협의이혼실, 면접교섭센터 및 면접교섭실의 내부 환경 개선과 설치 사업 확대 등을 위해 2025년도에 신규로 실시설계비 (420-02)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음.

<2022~2025년도 전용상담실, 협의이혼실, 아이사랑 설치 및 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비 목	예산	결산	이월	불용
2022년	공사비(420-03)	198	194	—	4
	자산취득비(430-01)	60	59	—	1
2023년	공사비(420-03)	198	192	—	6
	자산취득비(430-01)	60	59	—	1
2024년	공사비(420-03)	198	113	77	9
	자산취득비(430-01)	60	47	12	1
2025년	실시설계비(420-02)	31	—	—	31
	공사비(420-03)	198	275	—	—
	자산취득비(430-01)	29	40	—	1

자료: 대법원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용상담실, 협의이혼실, 아이사랑방의 공사는 대부분이 소규모 공사로 추진되어 실시설계비에 대한 실제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소규모로 이루어져 실시설계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사업 특성은 예산 편성 이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신규로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여 전액 불용한 것은 사업 수요와 실시설계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임. 또한 2026년도에 편성된 실시설계비 3,100만원 역시 7월 말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전용상담실, 협의이혼실, 아이사랑 설치 및 개선 사업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설 치	2	2	3	2	4
개 선	7	14	6	7	7
계	9	16	9	9	11

자료: 대법원

- 따라서 대법원은 앞으로 사업별 공사 규모와 실시설계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실시설계비는 감액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다) 일반회계를 통한 법원의 날 사업 실시 및 적정 예산과목 집행 필요

- 2025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본부 운영지원(7031-303) 사업 중 사법부 설립 기념일 지원 사업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부가 설립된 것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본부 운영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액 5,000만원 중 5,0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도 본부 운영지원(7031-303) 중 법원의 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부 설립 기념일 지원	50	—	50	50	—	—	50

- 대법원은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 행사와 관련하여 기획 및 운영 용역, 오찬,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8,500여만원을 지출했는데, 행사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기념영상 제작 비용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집행하였음.

〈법원의 날 행사 관련 지출 내역〉

(단위: 원)

구 분	사업명	비 목	건 명	금 액
일반 회계	본부운영지원 (7031-303)	일반수용비 (210-01)	기념식 표창패 구매	978,000
		일반용역비 (210-14)	기념식 기획 및 준비, 운영 대행 용역비	48,259,750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	기념식 관련 비용	300,000
		업무추진비	기념식 관련 오찬 간담회	11,674,000

구 분	사업명	비 목	건 명	금 액
		(240-02)		
		포상금 (310-03)	기념식 표창 격려금	2,400,000
	소 계			63,611,750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	사법서비스 향상 (1161-306)	일반수용비 (210-01)	법원의 날 기념영상 제작	21,950,000
	소 계			21,950,000
합 계				85,561,750

자료: 대법원

○ 위와 같이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동일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별도로 운용하려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¹⁰⁰⁾ 이러한 지적은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9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적된 사항¹⁰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법원은 법원의 날 기념영상은 법원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제작 되기는 하였으나, 연중 상시로 게시되고 유튜브, SNS 등을 포함한 각종 사법부 홍보 및 국민 소통 활동에 활용되어 기금 지출이 법원의 날 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해당 영상은 연례적으로 특정한 행사와 연동되어 비슷한 시기에 집행 되고, 기념행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연중 상시적으로 집행되는 일반 홍보성 예산과 동일하게 보기는

100)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101) 2017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p. 87-88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p. 102-104

2020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p. 147-149

어려움.

〈최근 5년간 법원의 날 행사 대행 및 기념영상 제작 내역〉

(단위: 원)

연 도	행사 대행		기념영상 제작	
	계약기간	예산 집행일	계약기간	예산 집행일
2021년	2021.07.30.~09.10.	2021.09.17.	2021.06.14.~08.31.	2021.09.01.
2022년	2022.07.20.~09.23.	2022.09.21.	2022.09.05.~09.16.	2022.09.27.
2023년	2023.06.27.~09.23.	2023.09.26.	2023.06.30.~09.14.	2023.09.25.
2024년	2024.07.08.~09.23.	2024.10.02.	2024.07.24.~10.10.	2024.10.10.
2025년	2025.06.30.~09.30.	2025.10.01.	2025.08.06.~09.12.	2025.09.13.

자료: 대법원

○ 또한, 법원의 날은 사법부 설립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의 고유한 행사이므로, 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일반회계 본부 운영지원 사업에 편성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집행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최근 5년간 법원의 날 기념영상 제작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2022년 및 2025년에는 일반수용비(210-01)로, 2023년 및 2024년에는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는 등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과목을 혼재해서 집행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¹⁰²⁾에 따르면 기념영상 제작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영상 제작은 일반용역비

102)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386
일반용역비(210-14)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210-14)로 집행했어야 함에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음.

〈최근 5년간 법원의 날 기념영상 제작 내역〉

(단위: 원)

연 도	계약기간	계약금액	업체명	예산과목
2021년	2021.06.14.~08.31.	16,830,000	(주)핑크라벨 비주얼	7031-303-210-01
2022년	2022.09.05.~09.16.	19,250,000	(주)더존크리에이티브	1161-306-210-01
2023년	2023.06.30.~09.14.	21,780,000	(주)팀씨에스알	1161-306-210-14
2024년	2024.07.24.~10.10.	21,998,900	(주)포아이	1161-306-210-14
2025년	2025.08.06.~09.12.	21,950,000	(주)스튜디오블랙빈	1161-306-210-01
2025년 (리뉴얼 영상)	2025.09.19.~10.10.	4,000,000	(주)사각의빛	1161-306-210-14

자료: 대법원

- 따라서 대법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 및 취지¹⁰³⁾를 고려하여 관련 사업의 편성·집행 체계를 개선하고, 과거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정한 적정한

103)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공탁법」 제28조를 근거로 설치된 기금으로, 공탁제도의 개선, 소송구조제도, 조정제도의 운용,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대(對)국민 사법서비스향상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공탁법」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번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 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예산과목을 적용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음.

(라) 정책연구용역의 적기 추진 및 사업관리 개선 필요

-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은 국민참여재판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 홍보비, 배심원 여비 및 조사연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정책연구비(260-02목)는 각국의 국민참여형 재판제도 운영 제도 등을 연구하여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계획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이고, 이 중 2,500만원이 집행됐으며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의 정책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목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정책연구비 (260-02)	25	25	25	50	25	—	25

- 대법원의 최근 5년간 정책연구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용역 계약을 주로 하반기에 체결하여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연구용역 미추진 등으로 불용시키고 있음.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였고, 특히 2023년에는 12월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4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으나, 2024년 연구용역 수행 중 계약이 해지되어 전액 불용되었음. 또한 2025년에는 연구용역 추진 수요가 없어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등 정책연구비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정책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변경	계획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년	30	—	—	30	—	29	1	—
2022년	25	29	—	54	30	24	—	55.6
2023년	25	24	—	49	24	24	1	49.0
2024년	25	24	—	49	—	25	24	—
2025년	25	25	—	50	25	—	25	50.0

자료: 대법원

〈최근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 정책연구비로 수행한 과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계획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연구용역 공고기간	계약기간	과제명	수행기관
2021	30	29	—	29	(1차) 21.11.1.~ 21.11.11. (2차) 21.11.25. ~21.12.6.	21.12. ~22.9.	평결 및 양형이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이 불일치한 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방안 모색	한국형사 정책학회
2022	25	24	—	24	(1차) 22.5.2.~ 22.5.17. (2차) 22.5.30~ 22.6.14.	22.8. ~23.2.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및 이를 채택한 1심 판단의 존중 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형사 법학회
2023	25	24	—	24	(1차) 23.10.18. ~23.11.7. (2차) 23.11.23~ 23.12.5.	23.12. ~24.6.	국민참여재판 연일 개정 활성화 방안의 연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25	25	—	25	(1차) 24.11.11. ~24.12.2. (2차) 24.12.3.~ 24.12.16.	24.12. ~25.9.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형사 법학회

연도	계획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연구용역 공고기간	계약기간	과제명	수행기관
----	-----	-----	-----	-----	--------------	------	-----	------

주) 2023년 계약한 정책연구용역은 2024년 수행 중 계약이 해지되어 이월된 2,4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음
자료: 대법원

- 「국가재정법」 제72조¹⁰⁴⁾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 지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연구용역비(260목)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대법원은 연구용역 계약을 주로 하반기에 체결함에 따라 예산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계약 해지 또는 연구용역 추진 수요 미발생으로 예산이 불용되고 있음. 2026년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7월 말 현재까지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 참고로, 정책연구비의 이월과 관련하여 2023,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연도 말 체결을 지양하고, 미리 수요 계획과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104)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리를 통하여 정책연구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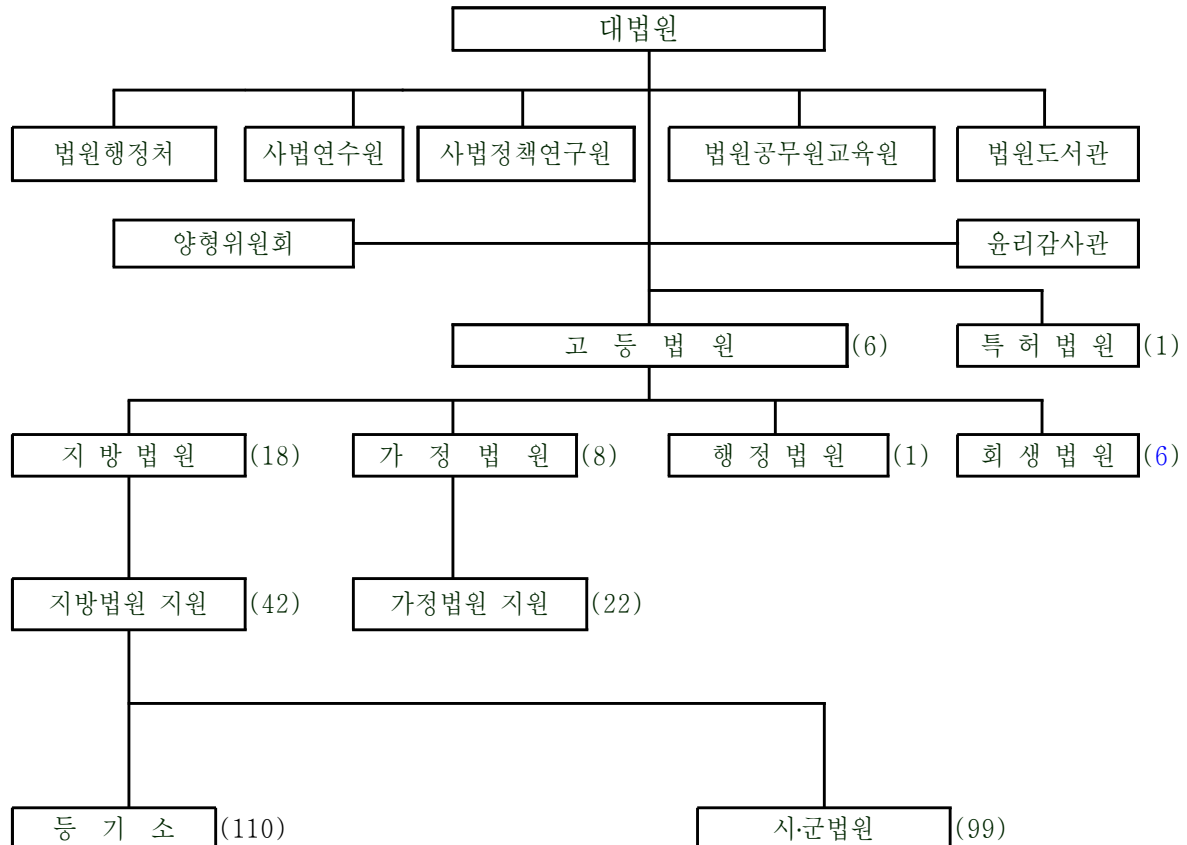
- 정책연구용역은 연구 주제만 달라질 뿐 매년 유사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연구과제 선정 및 계약 체결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면서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고, 일부 연도에는 연구용역 계약 해지 또는 수요 미발생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특히 국회의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예산의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자 료

1. 법원 조직도

(2026. 6. 30. 기준)



※ 각급 법원 현황

1. 총 법원 수 : 105 [대법원, 고등법원 6, 특허법원 1, 지방법원 18, 가정법원 8, 행정법원1, 회생법원 6, 지법지원 42, 가정지원 22]
2. 기관 : 7 [법원행정처1, 사법연수원1, 사법정책연구원1, 법원공무원교육원1, 법원도서관1, 양형위원회1, 윤리감사관1]
3. 시·군법원수 : 99
4. 등기소 : 110 [등기국 11개(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각급 법원 등 기관(계) 46개 포함 시 총 167개]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가. 법 관

(2026. 6. 30. 기준)

구 분 직 위		정 원	현 원	정원대비 현원	정 원 외 법 관
대 법 원	대법원장	1	1	—	
	대 법 관	13	12	-1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	2	2	—	
	재판연구관	100	99	-1	
고 등 법 원	원 장	7	7	—	사법연수원장 : 1
	부장판사	386	46	-16	
	판 사		324*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1 사법연수원 교수 : 15
지 방 법 원	원 장	33	33	—	법원행정처 차장 : 1
	지 원 장	42	42	—	
	부장판사	2,814	1,388	-162	사법연수원 교수 : 13
	판 사		1,264		
미보임 신임법관		—	4	4	
합 계		3,398	3,222	-176	정원 외 법관(31) 포함 법관 총 수 : 3,253

* 이 중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의한 고법판사는 237명임

나. 법원공무원

(2026. 6. 30.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정원대비 현원
경력 직	일반직		—	—	—
특 수 경력 직	정무직		1105)	1	—
	별정 직	연수생	—	—	—
		비서관 등	—	—	—
		법원보안 관리대원	—	—	—
일반직 또는 별정직			—	—	—
임기제	일반임기제	사법행정담당직위	—	6	6
		비법관재판연구관	15	14	—1
	전문임기제	사법행정담당직위	—	1	1
		비법관재판연구관	17	16	—1
		재판연구원	574	555	—19
합 계			607	593	—14

105) 윤리감사관

3. 전국 법원 사건 통계

(2024년 1월 ~ 2026년 6월, 단위: 건)

구 분	연도	2026년 6월			2025년			2024년		
	심급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민 사 (본안)	접수	447,730	29,773	5,493 (5,493)	809,838	61,942	12,714 (12,714)	805,366	59,475	14,958 (13,026)
	처리	399,953	28,341	6,768 (6,761)	784,338	61,578	15,175 (12,374)	786,085	59,819	26,325 (13,191)
	미제	453,170	54,290	3,171 (3,171)	405,393	52,858	4,446 (4,439)	379,893	52,494	6,907 (4,099)
	상소	27,701	5,400	-	57,004	11,858	-	52,942	11,436	-
형 사 인원수 (공판)	접수	94,936	35,426	16,216	222,833	85,031	34,272	239,981	82,162	24,889
	처리	100,775	39,538	14,101	232,775	85,692	29,006	228,492	80,755	24,044
	미제	116,200	44,540	12,893	122,039	48,652	10,778	131,981	49,313	5,512
	상소	45,101	12,373	-	105,628	26,262	-	104,187	24,617	-
가 사 (본안)	접수	20,880	2,009	356	38,915	4,528	686	40,160	4,493	724
	처리	17,786	1,990	376	39,296	4,315	673	39,440	4,345	745
	미제	28,413	3,032	155	25,319	3,013	175	25,700	2,800	162
	상소	1,529	278	-	3,289	580	-	3,258	562	-
행 정 (본안)	접수	10,997	3,280	1,628	20,270	7,051	3,784	20,878	7,303	4,011
	처리	9,939	3,002	1,923	20,828	7,507	3,934	21,907	7,280	3,634
	미제	17,179	5,342	1,233	16,121	5,064	1,528	16,679	5,520	1,678
	상소	3,277	1,412		6,863	3,471		6,974	3,759	

주 : ()내의 수는 동일인에 의한 파다 소송 제기 사건을 제외한 수치임

4. 성과지표 현황

가.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개	2개	2개	-	-	1개	1개	1개 (50.0%)
		100%	-	-	50.0%	50.0%	

(2) 세부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 정성	성격	
전략목표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							
프로그램목표Ⅰ-1.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재판활동지원	①전체 사건처리율	1.0	일반 재정	95.7(%)	정량	산출	
전략목표Ⅱ. 사법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운영							
프로그램목표Ⅱ-1. 사법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사법정보화운영	①사법정보화 운영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수)	1.0	정보화	82.4(%)	정성	결과	

5.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결과

가.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요 구 수 준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변 상	징 계	
1	10	14	—	—	25

* 합계는 중복 적용된 건수를 포함
* () 안에 동일한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수준을 중복 적용한 경우 이의 건수를 기재

나.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조 치 결 과			합 계
시정완료	시정 중	시정 미이행	
20	5	—	25

다.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1) 시정완료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최근 3개년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예산 변경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 179억 1,000만원, 2023년 344억 700만원, 2024년 438억 7,3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최근 3개년 이·전용 등 예산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연도</th><th>예산 이·전용 등 (A)</th><th>예산 세목조정 (B)</th><th>기금운용 계획 변경(C)</th><th>계 (A+B+C)</th></tr><tr><td>2022</td><td>11,946</td><td>5,083</td><td>881</td><td>17,910</td></tr><tr><td>2023</td><td>27,604</td><td>6,219</td><td>584</td><td>34,407</td></tr><tr><td>2024</td><td>32,505</td><td>9,913</td><td>1,455</td><td>43,873</td></tr></table>		연도	예산 이·전용 등 (A)	예산 세목조정 (B)	기금운용 계획 변경(C)	계 (A+B+C)	2022	11,946	5,083	881	17,910	2023	27,604	6,219	584	34,407	2024	32,505	9,913	1,455	43,873	주의	○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실시방안을 시행('25. 8. 21.)하여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각 사업의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반영하도록 조치 ○ 세목조정 개선방안 시행('25. 8. 26.) → 향후 부적정한 세목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table><tr><th>개선 전</th></tr><tr><td>각급 법원에서 세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후 자체 세목조정</td></tr></table> ⇒ <table><tr><th>개선 후</th></tr><tr><td>① 법원행정처 일괄 예산 증감배정 ② 각급 법원의 세목조정 권한 폐지</td></tr></table> ○ 조치완료일 : 25년 12월 31일	개선 전	각급 법원에서 세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후 자체 세목조정	개선 후	① 법원행정처 일괄 예산 증감배정 ② 각급 법원의 세목조정 권한 폐지
연도	예산 이·전용 등 (A)	예산 세목조정 (B)	기금운용 계획 변경(C)	계 (A+B+C)																							
2022	11,946	5,083	881	17,910																							
2023	27,604	6,219	584	34,407																							
2024	32,505	9,913	1,455	43,873																							
개선 전																											
각급 법원에서 세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후 자체 세목조정																											
개선 후																											
① 법원행정처 일괄 예산 증감배정 ② 각급 법원의 세목조정 권한 폐지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경상경비적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는 면밀한 예산 추계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할 것																			
○ [지적사항]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크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처리 되는 사례가 있는 등 징계부가금의 징수·채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2024년도 징계부가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5">2024년</th></tr><tr><th>예산액</th><th>징수 결정액</th><th>수납액</th><th>미수납 액</th><th>불납 결손액</th></tr><tr><td>징계부가 금</td><td>-</td><td>1,062</td><td>11</td><td>1,045</td><td>7</td></tr></table>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징계부가금의 체계적인 징수 및 채납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징계부가 금	-	1,062	11	1,045	7	제도개선	○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각급 법원에 징계부가금 채권 관리 안내 공문을 실시하여, 징계부가금 징수절차 및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안내하였음 ○ 향후 수납률 제고를 위하여 미수납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관할 세무서에 징수요청을 의뢰하는 등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6년 1월 5일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징계부가 금	-	1,062	11	1,045	7														
○ [지적사항] 2024년도 변상금의 징수 결정액이 전년 대비 49억 9,800만원 증가하였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처리 되는 사례가 있으며 미수납 금액도 상당한 규모임 ※ 2024년도 변상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5">2024년</th></tr><tr><th>예산액</th><th>징수 결정액</th><th>수납액</th><th>미수납 액</th><th>불납 결손액</th></tr><tr><td>변상금</td><td>-</td><td>5,475</td><td>546</td><td>4,924</td><td>4</td></tr></table>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변상금의 시효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중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변상금	-	5,475	546	4,924	4	주의	○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각급 법원에 변상금 채권 관리 안내 공문을 실시하여, 변상금 징수절차 및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안내하였음 ○ 납입 불이행 시에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강제이행청구 또는 법 제24조에 의한 관리정지 절차를 진행하는 등 향후 철저한 채권관리로 변상금 수납률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6년 1월 5일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변상금	-	5,475	546	4,924	4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 [지적사항] 대법원은 2024년 사건 수 추계를 112,545건으로 과소 예측하여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 30억 2,600만원을 송달료로 자체이용 하였으나, 이용을 통해 증액된 예산 중 7,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였고 2억 6,200만원은 불용하였음 ○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전용한 예산을 또 다시 다른 비목으로 세목조정하고 불용하는 예산집행 구조는 송달료를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함께 혼합 집행하여 정확한 집행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임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송달료와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집행계정을 마련하고, 송달료 수요를 사건 수, 송달 건수, 건당 평균 송달비용 등 구체적 근거에 기반하여 예측하는 등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집행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2025. 10. 01.자 「집행실적 관리 등을 위한 건명 통일화 방안 송부」를 전국 법원에 시행하였음 - 주요 내용은 디브레인 건명 입력시 대분류로 송달료와 공공요금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상세분류로 세분화하는 것임(공공요금은 전기료, 열요금, 수도료 등) ○ 송달료 수요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하여 '26년 편성에서는 송달료를 사용하는 형사사건을 11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마다 사건 수, 송달 건수, 사건당사자별 평균 송달 횟수를 산출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음 - 예시 : 구속영장실질심사 : 24,719건(사건 수)×5회×(송달 건 수)×4,980원 * 5회 : 1회(검사)+3회(피의자)+1회(피고인) ○ 향후에는 더욱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정확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적사항]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비상근 진술조력인 선정 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예산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주의	○ 2026. 1. 1.부터 각급 법원의 원인행위담당자가 법원행정처 진술조력인 수당 지급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예산재배정을 요청하면, 사업담당자가 내역을 확인한 후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재배정을 요청하는 형태로 절차를 개선하였음 ○ 2026. 1. 1. 부터는 ①각급 법원의 진술조력인 선정 건수와 ②비상근진술조력인에게 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조치완료일 : 26년 1월 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최근 4년간 진술조력인 제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집행률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사건수	소송 관계인 수	기준 금액 (1인당)		
2021	50	2	18	19	30만원		
2022	50	5	23	24	30만원		
2023	30	7.8	64	71	30만원		
2024	30	9	73	78	30만원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진술조력인 제도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체계를 정비하고, 수요에 기반한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지적사항]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양형기준에 따른 재판 과정을 국민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외부 업체를 통한 온라인 기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일반수용비(210-01목)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2024년 일반용역비(210-14목)로 1억 5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했고 2025년 예산에도 일반수용비만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집행 방식과 예산 비목간 불일치가 발생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외주제작 기반 콘텐츠 사업에 대해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세목조정 없이 계획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항목 구조와 편성 방식을 개선할 것						주의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예산요구시 일반용역비(210-14목) 세목 편성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요구, 2026년 확정된 각목명세서상 일반용역비(210-14) 편성 완료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일
○ [지적사항] 대법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사업의 시스템 오픈 지연으로 사업기간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기획재정부와 사업기간 및 관리용역비 등 연차별 관련 예산 변경을 협의						주의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이하 ‘차세대시스템’)은 4년에 걸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① 코로나 등으로 인한 개발생산성 감소, ② 개발자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개발 인력 수급 문제, ③ 법원 시스템 개발사업 자체의 높은 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의하지 않고, 시스템 오픈 후 집행해야 할 동 사업의 관리용역비 47억 9,200만원을 내역변경을 통하여 타 정보화 사업에서 집행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내역변경을 통해 관리용역비를 타 사업에 집행하는 등의 예산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도 등 사업 내·외부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계약 체결 당시 예정하고 있던 사업 진척에 지연이 발생하였음 ○ 또한 근래 발생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CE),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등 대규모 공공 시스템 개통 장애로 인한 업무 중단과 사회적 혼란 사례를 계기로, 이보다 더 대규모 시스템인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보다 면밀한 점검과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시스템 개통이 지연되었음 ○ 차세대시스템 개통을 전제로 편성받은 관리용역비(4개월분)는 개통 일정이 미뤄지면 해당 예산은 시스템 구축 후 5년간의 운영 및 유지 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불용해야 함(총사업비관리지침 제2조) ○ 하지만 사법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 관리를 위해 여러 사업을 통합발주하고 있는데 차세대시스템 예산 또한 통합발주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2024년 차세대시스템 예산 중 관리용역비가 2024년도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통합발주사업의 계약불이행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내역변경을 통한 예산집행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내역변경 사실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 공문을 통해 통지하였음[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체 전용(내역변경) 통지 - 대법원 공문 예산담당관-21577, 2024. 10. 23. 자] -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차세대시스템 개통 이전에 2025. 1. 23.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완료하였음 ○ 차세대시스템은 2025. 1. 31. 개통 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있으므로 내역변경 등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고 더 이상 발생할 여지도 없음. 향후 차세대시스템 개발과 같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이 있을 경우 예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관리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음 ○ 조치완료일 : 25년 1월 31일
○ [지적사항] 2024년 동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의 집행률은 72%, ‘임차료(210-07목)’의 집행률은 79%로 낮은 편이고, 최근 5년간 해당 비목들의 결산 내역을 보더라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함 -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 예산액 4억 9,500만원 중 3억 6,000만원 집행(집행률 72%) - 임차료는 당초 예산액 27억 9,700만원 중 22억 1,000만원 집행(집행률 79%) ○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집행하는 정보통신망 사용비는 가격변동이 크지 않고, 임차료는 가족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계약분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의 확정금액을 5년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비목들의 비용 예측이 가능함에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함 ○ 특히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인건비로의 이·전용이 잦은데 이·전용을 미리 고려하여 예산을 실수요보다 과다하게 확보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 비목의 정확한 비용 추계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면밀한 비용 추계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 -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감액 편성으로 집행률 제고('24년 72% ⇨ '25년 96.3%) - 임차료의 경우 리스계약의 원리금상환표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집행률 제고('24년 79% ⇨ '25년 95.8%) ○ 조치완료일 : 2024년 5월 31일
○ [지적사항] 온라인 법고율 고도화 사업의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지고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는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향후 정보화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행할 시 시스템 구현	주의	○ 향후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행할 시 사전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6월 16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이 가능한 범위로 과업을 설정하는 등 사전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사업 일정을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지적사항] 대법원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야간대학원과 정, 디지털포렌식 과정 등의 국내 위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일정 기간 법원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명예퇴직자 2명의 교육비 4,700만원이 환수되지 않은 상황임 - 환수 미조치 내역 : KAIST 석사과정 900만원, 디지털포렌식과정 3,800만원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국내 위탁교육 훈련비를 지급받았으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절차와 연계한 훈련비 환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2025년 2월말 퇴직으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던 퇴직자 2명에 대한 교육비 환수를 완료하였음 ○ 국내위탁교육 수료 후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교육비 환수는 대법원내규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내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비 환수 의무는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점, 교육비 미환수를 이유로 명예퇴직 승인을 보류하거나 명예퇴직 수당에서 미환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퇴직절차와 연계하여 교육비를 환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사직원과 위탁교육을 이수한 이력이 있는지에 관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받아 환수대상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상자가 퇴직하기 전에 납입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환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음 - 퇴직으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퇴직자 (2026년 2월말: 1명, 2026년 6월말: 3명)에 대해 각 교육비 환수를 완료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6년 6월 30일
○ [지적사항]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공탁금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 시중은행이 법원보관금을 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운용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운용수익금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2024년말 기준 잔액 2조 3,409억원)	제도개선	○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기금의 설치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정부입법을 위하여 법무부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 2025. 9. 2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의안번호 제2213212호, 박군택의원 대표발의]되어 2026. 1. 5.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됨 ○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이에 대해 2022. 8.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대법원의 개선조치까지 2년 이상 소요되어 상당한 지연을 보이는 등 대법원의 개선조치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대법원은 2024. 11.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법률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법원보관금 출연금 확대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공탁법」 개정 관련 법무부와 협의, 출연금 산정 모형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을 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귀속 및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조치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원보관금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받을 경우 적절한 출연금 산정 모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법원보관금의 출연금 산정 모형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26. 2. 최종결과보고서 제출됨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 3. 17. 공포·시행됨으로서 개정 공탁법 제19조에 법원보관금 출연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개정 공탁법에서는 2025년 발생한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6년 4월 30일
○ [지적사항]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사업은 전년대비 4억 3,000만원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지급 건수 및 파산·면책 사건 송달료 단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결과 4억 300만원을 불용하여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집행률 77.0%)되었음 - 회생사건 지급 건수는 과거 구조대상 기준별 지급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업 계획 시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파산·면책사건 송달료 단가도 과거 집행 실적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과다계상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향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사업 계획 시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할 것	제도개선	○ 2026년도 예산 요구 시에는 과다계상없이 최근 5년간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에서 소송구조 변호사비용 지급건수, 송달료 지급건수 등을 분석하여 2026년도 예상 지급건수를 산출하고, 송달료 단가를 2024년도 송달료 평균지급단가를 반영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하였음 ○ 2025. 10. 31. 현재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예산의 집행액은 1,606백만원(집행률 91.8%)으로 2024년과 같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일
○ [지적사항]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총 사건 수 대비 전문가 진단 등 실시 건수 비율이 2024년 3.4%에 불과하여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제도개선	○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의 보호소년, 행위자, 피해자 등 관계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높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부 결정에 따라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매년 집행이 일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소년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 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tr><th>연도</th><th>예산액(A)</th><th>집행액(B)</th><th>예산집행률 (B/A)</th></tr><tr><td>2022</td><td>1,184</td><td>547</td><td>46.2</td></tr><tr><td>2023</td><td>1,184</td><td>538</td><td>45.4</td></tr><tr><td>2024</td><td>867</td><td>601</td><td>69.3</td></tr></table> ※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 실시 건수 (단위: 건, %) <table><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총 사건 수(A)</td><td>29,979</td><td>29,644</td><td>32,020</td><td>36,858</td><td>35,034</td></tr><tr><td>전문가진단 등 실시건수(B)</td><td>1,036</td><td>1,772</td><td>1,349</td><td>1,663</td><td>1,184</td></tr><tr><td>총 사건 수 대비 실시건수(B/A)</td><td>3.5</td><td>6.0</td><td>4.2</td><td>4.5</td><td>3.4</td></tr></table>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 실시 비율을 높여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예산집행률 (B/A)	2022	1,184	547	46.2	2023	1,184	538	45.4	2024	867	601	69.3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사건 수(A)	29,979	29,644	32,020	36,858	35,034	전문가진단 등 실시건수(B)	1,036	1,772	1,349	1,663	1,184	총 사건 수 대비 실시건수(B/A)	3.5	6.0	4.2	4.5	3.4		하지 않음 - 이에 제도를 활성화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예산에서 112백만원을 자체 감액하였고, 사업명칭을 기존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전문가진단비용, 아동·가정보호사건 전문가의견조회비용에서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전문가진단 등 비용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절차 초기부터 집행감독까지의 전반에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2026년 각급 법원 예산배정을 위한 공문 및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실무연구회·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사업명칭 변경 사실과 전문가진단제도 적극 활용의 중요성, 필요성을 안내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6년 2월 25일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예산집행률 (B/A)																																							
2022	1,184	547	46.2																																							
2023	1,184	538	45.4																																							
2024	867	601	69.3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사건 수(A)	29,979	29,644	32,020	36,858	35,034																																					
전문가진단 등 실시건수(B)	1,036	1,772	1,349	1,663	1,184																																					
총 사건 수 대비 실시건수(B/A)	3.5	6.0	4.2	4.5	3.4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인신보호제도 운영 등’ 사업에서 대법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긴급하지 않은 전산소모품 구입을 위해 2024년 12월 긴급입찰공고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수용비(210-01목) 8,400만원을 이월하였음 ○ 내역사업인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에서 대법원은 연례적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하반기에 체결하고 정책연구비(260-02목)을 전액 이월하였는데, 이는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가재정법」, 정책연구비의 연내 집행을 강조한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의 취지에 반하는 집행행위임 ※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 정책연구비 수행 과제 현황	제도개선	○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연구]를 정책연구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2025. 9. 제출되어 2025. 12. 5. 25백만원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음 - 해당 정책연구용역연구는 해외주요국가들의 판결문을 수집·조사·분석해 국민참여형재판의 판결서 작성례를 유형별 분석하고 설문조사 및 형사사법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도출하는 정책연구용역으로 연구내용 특징상 연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음 (연구기간 2024. 12. 30. ~ 2025. 9. 30.) - 정책연구용역 연도말 계약 체결 및 예산이월을 지양하기 위하여 연초, 연중 정책연구용역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연구자와 연구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고 최종보고서 제출기간 준수를 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단위: 백만원)							격히 관리하도록 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5일
연도	계획 액	계약 액	집행 액	이월 액	연구용역 계약기간		
2021	30	29	-	29	2021.12.~2022.9.		
2022	25	24	-	24	2022.8.~2023.2.		
2023	25	24	-	24	2023.12.~2024.6.		
2024	25	25	-	25	2024.12.~2025.6.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연도 말 계약 체결 및 예산 이월을 지양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적사항] 인건비 예산의 과다한 이·전용으로 국회예산안 심의·의결권을 형해화 함 ○ 인건비 외 특정사업 예산의 과다한 승인 이용을 지양해야 함 ※ 2024년도 일반 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제도개선	○ 인건비 예산의 과다한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력 운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추계로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 주요 부족분 사유인 인건비는 '25년 15,268 → '26년 16,569억원 (증 1,301억원, 8.5%) 증액으로 인건비 예산의 이·전용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불용액		
일반 인건비	1,288,541	4,308	1,292,849	1,292,610	239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인력 운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향후 정확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 할 것							
○ [지적사항] 대법원은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정 지연으로 2024년 예산액 69억 9,100만원 중 20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29.5%) 48억 3,0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음						주의	○ 2025. 8. 18. 1차 오픈(형사 재판서·조서 등의 전자문서 작성기능 지원 서비스 오픈), 2025.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중점법원을 중심으로 법무부 KICS 연계 등을 포함한 2차 오픈 후 2025. 12. 15. 전국 확대 하여 운영 중에 있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2023년 시스템 구축 계약 지연에 따른 개발 일정 조정으로 2023년 시스템 구축 일정이 1차 조정되었고, 2024년에도 법무부 KICS 연계기관과의 연계 등 추가 개발기간 확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사업 일정을 2개월을 연장하는 2차 조정이 이루어졌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여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025. 12. 18. 2024년 이월된 예산(69억 9,700만원) 전액 집행완료 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5일				
○ [지적사항] 대법원은 2024년 4월부터 11월 까지 총 84개 기관을 감사하여 335건의 위반 건수를 적발하였고, 이 중 시정 82건, 권고 4건, 통보 249건을 시행함 ○ 대법원은 회계감사 등을 포함하여 자체 감사에 관한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으나, 민감정보 내지 개인정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외에는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 및 신뢰 회복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할 것임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 각급 법원 감사과 등 감사 주무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사법부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자료 요청 목적 및 근거에 맞추어 사법부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조치 ○ 공개 범위 및 방법 <table><thead><tr><th>공개 범위</th><th>공개 방법</th></tr></thead><tbody><tr><td>감사명, 감사기간, 목적, 대상, 결과</td><td>자료 요청 시 서면 제출</td></tr></tbody></table> ※ 단, 공개 범위 중 민감정보 내지 개인정보나 재판에 관한 사항 등은 비공개 처리 ○ 조치완료일 : 2026년 4월 22일	공개 범위	공개 방법	감사명, 감사기간, 목적, 대상, 결과	자료 요청 시 서면 제출
공개 범위	공개 방법					
감사명, 감사기간, 목적, 대상, 결과	자료 요청 시 서면 제출					
○ [지적사항] 2024년도 일반회계 복리후생비(210-12목)는 재판일반경비지원 등 12개 사업에 편성되어 예산현액 186억 6,800만원 중 184억 7,600만원 집행되고, 1억 9,300만원 불용되었음 ○ 대법원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 용도에 위반하여 직원 워크숍, 세미나, 체육행사 등 4개 사업에서 83건, 총 1억 4,98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복리후생비를 체육행사, 세미나 등에 집행한 사례	시정	○ '26년 편성에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양형정책 연구지원 등에서 454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복리후생비 집행 관련 사용금지 내역 안내(2025. 9. 1.자)공문을 시행하였음 ○ 복리후생비 집행 지침 및 사용 금지 내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일선 법원에 집행 관리 강화를 요구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사업명	주요 내용	지출금액(원)		
사법운영 기본경비	체육행사, 사법정책연구원 워크숍, 무국장세미나, 법관 워크숍 등	39,917,690		
사법운영 지원	신임법관 및 교수단 워크숍 등	14,065,200		
사실심층 실화	상사·노동법실무연구회 세미나 등	34,628,960		
재판청구 권 실현	법원행정처 워크숍,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 법원도서관 춘계문화체육행사, 통일사법연구 워크숍 등	61,189,130		
합 계		149,800,980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2023년도 결산 심사에서‘주의’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지침을 다시 위반하였으므로 예산을 집행한 담당자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 ○ 대법원은 복리후생비를 본래 비목상의 적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국회의 예비심사 결과 지적 후에도 동일한 예산집행을 반복한 담당자를 시정조치 할 것 ○ 대법원은 복리후생비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 [지적사항] ‘재판일반경비지원’사업은 재판운영에 소요되는 간접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비 부족 등으로 과도한 세목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에 세목조정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 - 일반수용비의 부족사유로 코로나19 상황 종료, 전세사기 등 특수사건 접수 건수 및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처리 사건수 증가로 인한 방문 민원인의 폭증으로 각급 법원의 위생용품 등 필수적인 용품 구입으로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또한,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세목변경 세부			주의	○ 세목조정 개선방안 시행('25. 8. 26.) → 향후 부적정한 세목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개선 전 각급 법원에서 세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후 자체 세목조정 ⇒ 개선 후 ① 법원행정처 일괄 예산증감배정 ② 각급 법원의 세목조정 권한 폐지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 적시하지 않고 있어 국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목변경의 사유와 타당성을 심사하기 어려움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과도한 세목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세목변경 세부내용을 작성하도록 할 것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제도’는 외국인과 청각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언어의 통역 및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다양한 언어 통역수요에 대응하여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담인력 채용방식 외에 수시로 필요한 통역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효율적인 법정 통역서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통번역 지원 언어에 대한 수요 파악을 면밀하게 하여 법정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의 통번역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법정통역센터를 개소하면서 법정 통번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수어 통역인 5명을 1년 계약으로 고용하였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영어, 베트남어, 수어 등 3개 언어에 대한 수요는 저조하였고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통번역 수요가 증가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법정 통역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통번역 지원 언어에 대한 수요 파악을 면밀히 하고, 사업수행방식 개선을 통해 각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의 통번역 서비스를 적시에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 ‘상근 법정통번역 지원제도’인 법정통역센터는 2024. 7. 개소 당시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 수어포함 5개 언어에서 25. 12. 현재 방글라데시아어, 파키스탄어, 이란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러시아어, 중국어, 수어포함 8개 언어로 확대하여 언어를 지원하고 있음 - 2025. 7. 지원언어를 8개로 늘리는 과정에서 형사, 행정, 가사, 민사사건에서 각 언어별 통역인 지정건수를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정통역 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수도권에서 통역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어와 베트남어 통역인을 통역인 지정건수가 많으면서도 지방에서 통역인을 섭외하기 어려운 언어의 통역인으로 교체하였음 - 법정통역센터를 이용한 재판부에서 피드백을 받은 결과 각급법원에서 통역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주요 언어군보다 양질의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수 언어군에 대해 영상통역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여 지원언어를 확대, 조정함 - '25. 7. 법정통역센터 통역인 지정 매뉴얼 및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전국 법원 재판부 구성원에게 법정통역센터의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인지도제고와 이용을 활성화 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7월 1일

2) 시정중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사업’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증인 등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전국 법원에 방음 등을 갖춘 별도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9억 2,600만원 중 19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예산현액 19억 2,600만원 중 실제 증인지원실 설치에 사용된 예산은 제주지방법원(4,360만원), 평택지원(3,592만원) 등 2개소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 총 7,952만원에 불과하고, 4억 1,000만원이 타 사업의 인건비 및 사업추진비 등으로 이·전용되어 사업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되었음 ※ 이·전용 금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 (일자)</th><th colspan="3">~ 에서</th><th colspan="3">~ 으로</th></tr><tr><th>세부 사업</th><th>비목</th><th>금액</th><th>세부 사업</th><th>비목</th><th>금액</th></tr><tr><td>승인전용 (2024.8.8.)</td><td>재판 절차 비용 지원</td><td>공사비 420-03</td><td>△310</td><td>재판 일반 경비 지원</td><td>사업추진 비 240-01</td><td>310</td></tr><tr><td>승인전용 (2024.11.13.)</td><td>재판 절차 비용 지원</td><td>공사비 420-03</td><td>△100</td><td>재판 일반 경비 지원</td><td>구호및교 정비 320-06</td><td>100</td></tr></table>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증인지원실의 신규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사비는 감축하고, 운영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할 것	구분 (일자)	~ 에서			~ 으로			세부 사업	비목	금액	세부 사업	비목	금액	승인전용 (2024.8.8.)	재판 절차 비용 지원	공사비 420-03	△310	재판 일반 경비 지원	사업추진 비 240-01	310	승인전용 (2024.11.13.)	재판 절차 비용 지원	공사비 420-03	△100	재판 일반 경비 지원	구호및교 정비 320-06	100	주의	○ 증인지원실 설치 예산과 광역면접교섭센터 설치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증인지원실 설치 예산의 집행 내역이 실제 증인지원실 설치를 위한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 발생한 측면이 있음 ○ 2027년 예산부터 면접교섭센터 설치 비용을 분리 편성함으로써 예산 항목과 실제 예산이 사용되는 항목이 정확히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한정된 청사 및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전국 법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지원실 설치 여부에 대한 계획을 확인·점검하고 있음 ○ 증인지원실의 신규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실제 소요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예정임 ○ 모든 법원에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편차 없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하므로 대법원은 지속적인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확대를 통해 범죄의 피해자 증인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들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음 ○ 조치예정일 : 26년 12월 31일
구분 (일자)		~ 에서			~ 으로																								
	세부 사업	비목	금액	세부 사업	비목	금액																							
승인전용 (2024.8.8.)	재판 절차 비용 지원	공사비 420-03	△310	재판 일반 경비 지원	사업추진 비 240-01	310																							
승인전용 (2024.11.13.)	재판 절차 비용 지원	공사비 420-03	△100	재판 일반 경비 지원	구호및교 정비 320-06	100																							
○ [지적사항] 광역면접교섭센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재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나 증인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실’과는 목	주의	○ 면접교섭센터 설치 비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국회의 시정요구(면접교섭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주말에 센터에 상주하는 조사관 인력을 확보할 것)를 반영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적·대상·법적 근거 등에서 구별되고, 면접교섭센터의 설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사법서비스 향상(1161-403) 세부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광역면접교섭센터 설치 예산을 일반회계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내역사업 예산으로 편성·집행한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혼합해 운영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2024년 (구) 구리등기소에 설치된 광역면접교섭센터에 공사비 총 4억 1,806만원 집행(리모델링 공사비 3억 2,063만원, 관급자재 구매비 9,743만원)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증인지원실과 면접교섭센터와 같이 법적 근거가 다른 시설에 대해 예산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을 구분 없이 병행 집행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시정 조치를 강구할 것		여 2021년부터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고, 당시에 ‘재판절차비용지원’ 사업 중 공사비 등이 유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내역사업인 ‘증인지원실 등 설치 및 운영’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는 ‘면접교섭센터 설치’,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는 ‘면접교섭센터 관련 절차 비용 지원’으로 구분하여 편성 및 추진해 왔으나, 면접교섭센터 사업의 성격 상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향후 2027년 예산부터는 면접교섭센터 설치 비용을 기금에서 절차비용과 함께 편성하여 추진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 [지적사항] 법원정책연구비는 연례적으로 과제 기획 및 계약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일정으로 운영되어 다수의 과제가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수행기간이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 최근 3년간 정책연구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tr><th>연도</th><th>세목</th><th>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현액</th><th>집행액 (현액 대비 집행률)</th><th>차년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tr><td>2022</td><td rowspan="3">정책연구비 (260-02)</td><td>1,026</td><td>324</td><td>-</td><td>1,320</td><td>853(64.6)</td><td>464</td><td>3</td></tr><tr><td>2023</td><td>1,026</td><td>464</td><td>-</td><td>1,490</td><td>952(63.9)</td><td>501</td><td>37</td></tr><tr><td>2024</td><td>885</td><td>501</td><td>-</td><td>1,386</td><td>1,018(73.4)</td><td>358</td><td>10</td></tr></table> ○ 반복·유사 과제임에도 관행적으로 외부기관에 원가산정을 위탁하고, 특정 기관	연도	세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현액 대비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2	정책연구비 (260-02)	1,026	324	-	1,320	853(64.6)	464	3	2023	1,026	464	-	1,490	952(63.9)	501	37	2024	885	501	-	1,386	1,018(73.4)	358	10	제도개선	○ 당해연도 연구과제를 가급적 전년도에 기획·선정하고 연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당해연도 내에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6년 예산 중 64.5%에 해당하는 과제선정을 2025년 하반기에 완료하였고, 2026. 4. 30.까지 85.2%, 2026. 7. 31.까지 93.5%에 해당하는 과제선정을 완료하였음 ○ 유사한 주제의 연구용역의 경우 자체적으로 원가산정을 하도록 하고, 특수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전례가 없는 연구용역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기관에 원가산정을 의뢰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연도	세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현액 대비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2	정책연구비 (260-02)	1,026	324	-	1,320	853(64.6)	464	3																												
2023		1,026	464	-	1,490	952(63.9)	501	37																												
2024		885	501	-	1,386	1,018(73.4)	358	10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에 위탁이 편중되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과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정책연구과제 운영과 관련하여 과제 기획·계약 시점을 조기화해 다음연도 이월을 최소화하고, 반복 과제 및 정형적 단가 구조를 갖는 과제는 내부 기준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는 등 위탁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지침 또는 내규를 정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적사항] 각급 법원 예산 배정 시점과 실제 집행 수요 시기가 불일치하고, 「국선번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국선번호인 보수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수를 입금해야 하고 미입금시 법원행정처장에 지연사유를 보고해야 함에도 법원행정처의 각급 법원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2024년 국선번호료지원 사업에서 총 206억 원 규모의 지급지연이 발생했음 ※ 2024년도 국선번호료 분기별 지급 지연액 현황 (단위: 원) <table><tr><th>분기</th><th>지급 지연액</th></tr><tr><td>1분기</td><td>443,715,840</td></tr><tr><td>2분기</td><td>3,149,643,240</td></tr><tr><td>3분기</td><td>8,918,980,552</td></tr><tr><td>4분기</td><td>8,078,336,632</td></tr><tr><td>합 계</td><td>20,590,676,264</td></tr></table>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국선번호료 수요 집중 시기를 반영해 예산 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지급요청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집계해 실시간으로 집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입금 지연시 관련 정보가 자동 보고되고 일정 기준 초과시 경고하도록 하는 등의 국선번호료 지급 지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분기	지급 지연액	1분기	443,715,840	2분기	3,149,643,240	3분기	8,918,980,552	4분기	8,078,336,632	합 계	20,590,676,264	제도개선	○ (체계적, 탄력적 예산 배정) 법원행정처는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및 형사사건 통계를 예산배정에 반영하여 적정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하고, 수요 집중시기를 반영하여 연 5회에 걸쳐 각급 법원에 예산배정을 하고 있으며, 배정 시마다 각급 법원의 배정액, 집행액 및 미집행액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예산 배정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선번호료 지급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시스템 개선 관련) 법원행정처는 국선번호인 보수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수를 입금해야 하고 미입금시 법원행정처장에 지연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선번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2025년 ‘국선번호료 지급 지연보고 협조요청(형사지원심의관-1444, 2025. 4. 3.)’공문을 각 시행하여 국선번호료 지급 지연보고를 할 것을 독려하였고, 분기별 각급 법원으로부터 지급지연내역을 보고받고 있음 - 국선번호료 지급지연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재판사무시스템 및 체계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다만, 2025년 하반기 형사전자소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를 위하여 필수적 시스템 개선만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의 시스템 개선은 어려울 수 있으나 형사전자소송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입금 지연시 관련 정보가 자동 보고되고 일정 기준 초과시 경고하도록 하는 등 지급 관리 시스템 및 체
분기	지급 지연액													
1분기	443,715,840													
2분기	3,149,643,240													
3분기	8,918,980,552													
4분기	8,078,336,632													
합 계	20,590,676,264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수준	조치결과
		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조치예정일 : 26년 12월 31일
○ [지적사항] 결혼이민자는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행정 장벽을 겪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외국인 가족정보 데이터 작업인 색인화 지연을 앞당길 것	제도개선	○ 관련 시스템상 두 가지 개선 진행 예정 - 새로운 신고사건으로 접수되는 외국인 정보에 대하여는 이미 예산을 받아 코드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관련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반영하여, 2026년 12월경부터 위 외국인 인터넷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예정 - 이미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정보에 대하여는 자료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위 외국인도 인터넷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향후 예산 편성 후 비로소 관련 절차 진행이 가능함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